I. 전시체제와 민족말살정책

- 1. 병참기지화정책
- 2. 국가총동원체제와 민족말살정책
- 3. 전시수탈정책

I. 전시체제와 민족말살정책

1. 병참기지화정책

1) '조선공업화' 정책에서 '병참기지화' 정책으로의 전환

이른바 식민지공업화는 1930년대 전반기의 '조선공업화', 1930년대 후반기이래의 '병참기지화'¹⁾ 정책 시행기 등 두 단계로 나뉘어진다. 두 단계 모두일제의 전쟁 도발, 즉 1931년과 1937년의 만주 및 중국대륙 침략과 밀접한연관을 가지면서도 그 과정이나 내용·성격 면에서 큰 차별성이 있다.

대공황을 전후하여 조선농가가 파탄에 빠지고 민중운동이 급성장한 조선 사회를 배경으로 1931년 우가키 가즈시케(宇垣一成)가 총독으로 부임하면서 조선총독부는 지주계급 위주로 이루어졌던 이전까지의 농정과 식민통치 방 식의 전환을 모색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제기된 '조선공업화' 정책은 일본 자본주의의 독점이 심화되고 중화학공업화로 이전되는 외적 조건과 어우러 져 비교적 순조롭게 착수되었는데 그 전개 방식과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무렵 제국주의 국가들은 대공황을 타개하고 시장 확보를 위해 폐쇄적인 블록경제를 구축하는 정책을 세웠고 일본도 만주 침략을 계기로 '엔블럭권'의 자급자족전략을 세웠다. '조선공업화' 정책은 조선을 일본—精공업지대, 만주—농업지대를 잇는 양 지역의 교량지대로서 값싸고 풍부한 석탄·전력·노동력 등을 이용한 粗공업지대로 설정하면서 추진되었다.

둘째, 일본에서 공황극복책으로서 모색된 중요산업별 생산 · 판매 독점체인

^{1) &#}x27;병참기지'는 '대륙전진병참기지'를 줄인 표현이다. '병참기지화' 정책은 일제가 도발한 전쟁수행을 위한 물자동원책 또는 생산증진책으로서 광공업정책과 군수식량 확보를 위한 식량증산정책·인력동원책 등 여러 범주를 총칭한다.

카르텔 체제를 규정한 〈중요산업통제법〉(1931. 4)이 시행되면서 이에 적응하지 못한 주변부자본의 새로운 출구처가 절실하게 필요했다. 이러한 주변부자본군은 전쟁호황기인 1916년에 장시간 노동과 아동노동의 규제, 노동자생활보장책 등을 규정한 〈공장법〉실시를 전후하여 형성되기 시작했는데 특히 〈중요산업통제법〉시행 이후 적극적으로 활로를 찾는 과정에서 인접지역인 조선이 최적의 투자처로 떠올랐다.

셋째, 새로운 출구처가 절실했던 일본자본을 위해 조선총독부는 〈중요산업통제법〉의 적용 시기를 늦추면서 〈공장법〉을 시행하지 않는 등 적극적인 유인책을 제공했다. 아울러 장진강과 부전강의 전력개발 등을 통한 값싼 전력공급, 공업용지의 저렴한 확보를 위한 지가등귀 억제조치, 보조금·장려비·조사연구비 등의 재정자금을 제공했다. 이렇게 조성된 투자환경은 일본의 주변부자본과 독점자본에게만 매력적이었을 뿐 아니라 조선에서 이미 활동하던 자본에게는 더욱 유리한 조건으로, 조선 내 유산층들에게는 농업 위주의투자를 분산시키는 조건으로 작용했다.

이처럼 '조선공업화' 정책은 식민통치의 차원에서 조선 내의 필요에 일정하게 부응하는 측면이 있었다. 이와 달리 미나미 지로(南次郎)가 총독으로 부임하면서 착수된 '병참기지화' 정책은 전쟁수행을 위해 '일본제국'전체의 관점에서 조선 경제가 담당할 역할과 방향이 하향적으로 설정되면서 이루어졌다. '대륙전진병 참기지'라는 용어는 경성에서 열린 로터리대회 및 日滿실업협회 총회(1938. 5)에 서 행한 총독의 연설에서 처음 언급된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이러한 성격의 새로운 공업화정책의 윤곽은 일제의 중국침략 이전부터 제기되고 있었다.

즉 미나미 총독 부임 직후에 개최된 '朝鮮産業經濟調査會'(1936. 10)는 '국책상' 그리고 '국방상' 필요한 부문에 대한 공업의 특별한 '진흥책'을 강조했는데 이는 군수(관련) 부문으로 조선이 보유한 자원의 집중적 개발과 동원을의미한다. 이를 통해 철을 비롯한 지하자원의 개발 및 가공공업과 대체연료로서의 인조석유공업 등이 중요 업종으로 부각되었고 일본자본 유인책으로서 조선에서 시행을 유보했던〈중요산업통제법〉이 중국 침략을 목전에 둔1937년 3월부터 시행되었다. 모든 가용 자원을 군수산업에 집중하기 위해 경금속·석유 및 소다·황산암모늄·폭약·공작기계·자동차·철도차량·선박·항

공기 · 피혁 등 중요산업으로 지정된 업종에 초점을 둔 통제경제체제가 시작된 것이다. 2) 이렇게 시작된 군수산업과 관련된 공업화의 첫걸음은 결국 조선사회가 갖고 있던 각종 자원과 생산력을 고갈시키면서 전개되어 해방 후에도 경제건설을 어렵게 만드는 씨앗이 되었다. 3)

일제 말기 공업화의 방향과 성격은 로터리대회 직후에 열린 제1회 산업부 장회의(1938. 8)에서 총독이 조선경제를 '平戰兩時'에 '일본의 대륙에 대한 물자공급 거점'인 '병참기지'로 개편하겠다고 밝힌 것에서 규정되었다고 할 수있다. 즉 중국침략 과정에서 식량·잡화 등 상당량의 군수물자를 보급하고있던 조선이 향후 일본으로의 "해상수송로를 차단당할 경우에도 조선의 능력만으로 이를 보충할 수 있을 정도로 산업분야를 다각화하고 특히 군수공업 육성에 역점"4)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결국 '병참기지화' 정책은 일본이 생산력이 훨씬 우월한 미국·영국 등 연합군과의 전쟁을 도발하기 이전부터 몇 년 후에 현실화되고 만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둔 옥쇄작전과 같은 동원책으로 제기된 것이었다.

비슷한 무렵에 열린 '朝鮮總督府時局對策調查會'(1938. 9)에서는 조선경제를 군수공업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한 생산력확충안으로서 〈지하자원 개발에 관한 건〉등 '시국대책' 전반에 걸친 18개 항목에 대해 답신을 정리했다. 이 가운데 군수공업 확충안으로서 1941년까지 기업의 신설이나 증설에 의해 알루미늄・마그네슘・석유・폭약・공작기계・자동차・철도차량・선박・항공기・피혁 등에 대한 구체적인 확충계획 목표를 세웠다. 확충방법으로서 관계법규정비, 기업부지의 알선, 기술자・숙련공 양성기관의 확충, 자금융통의 원활화, 보조금의 교부, 운수시설의 정비, 동력요금・운임의 경감, 원재료의 공급알선, 하청공업의 확충 등 노동력 확보에서 중소기업의 하청화 방안까지 제시했다. 이는 일정한 기준을 설정하는 수준이었던 1936년의 '조선산업경제조사회'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치밀한 것이었다.

²⁾ 河合和男・尹明憲、《植民地期の朝鮮工業》(未來社, 1991), 27~29쪽,

³⁾ 강만길 엮음. 《한국자본주의의 역사》(역사비평사, 2000), 191쪽.

⁴⁾ 全國經濟調查機關聯合會朝鮮支部 編,《朝鮮經濟年報》(1939), 399·403쪽. 제1 회 산업부장회의는 '병참기지'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각도에 산업부가 설치된 직후 소집되었다.

2) '병참기지화' 정책의 특징

(1) 군수산업으로의 자원 집중

일제 말기의 조선총독부 재무국장이 후일 "일본은 한발한발 임전태세로 끌려 들어가 점차 전쟁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모든 것을 주입해야 했다. 그 후 나타난 시정상의 흠이 이 사이에 일본이 범한 오류였음을 솔직히 인정" 할5) 정도로 극심한 수탈과 강제력을 띤 자금·물자·노동력의 집중과 동원 정책은 다음과 같이 전개되었다.

첫째, 자금통제를 위해 1937년 10월부터 조선에 적용된〈임시자금조정법〉 (1937. 10)은 각종 산업을 생산력 확충, 국제수지, 생산능력 등의 기준에 따라 3종(갑・을・병)으로 나누어 자금공급의 우선 순위를 정하고 군수공업 이외의부문에 대해서는 자금조달을 규제했다. 또 각 금융기관은 기업에 자금을 대부하거나 유가증권의 응모・인수 또는 모집을 할 때 총독의 허가를 받도록규정했다.〈은행등자금운용령〉(1940. 12)은 사업설비 자금만 통제대상으로 설정한〈임시자금조정법〉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운전자금까지 통제대상으로 설정하여 철강・석탄・경금속・비철금속・석유 및 그 대용품 등 군수 및 관련 산업에 대한 자금집중을 더욱 높였다.6)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조세증장·강제저축·조선은행권 증발 등 재정금융기구를 이용한 민간자금 흡수책이 동원되었다. 거듭된 조세증장을 통해 거둔자금은 직접적인 전비에서부터 전쟁관련 사업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명목으로 지출되었다. 특히 1936~1945년간에 일본의〈임시군사비특별회계〉로 전출된 금액은 16억여 엔(1945년분 예정액 포함)이나 되었고 여기에 징병제실시준비비 등 관련지출을 합한 17억여 엔은 조세의 62%나 차지했다. 일제가 태평양전쟁을 도발하는 1941년을 경계로 급증한 전비유출액은 1941~1945년간에 총유출액의 93%가 집중되어 조세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73%나 되었고 말

⁵⁾ 水田直昌 監修,《總督府時代の財政》(友邦協會, 1974), 8~9쪽.

⁶⁾ 裹永穆,《植民地 朝鮮의 通貨金融에 관한 研究》(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0), 293~301쪽.

기에 이르면 조세의 대부분을 군사비로 전용하고도 모자랄 정도였다.7)

1936년부터 시행된 강제저축은 직접적 박탈감을 반감시킨다는 점에서 조세보다 효율적인 수탈방식으로서 일제도 '무리'라고 인정할 만큼 '폭력을 띤수탈'이었다.8) 저축목표액은 1938년 2억 엔에서 1944년에 23억 엔으로 급증했는데 실적액은 이보다 훨씬 높았고 "1944년 10월까지 극히 순조로운 추세"로⁹⁾ 전개되어 추정치에 따른다면 같은 기간 조세액의 3배 이상이나 되는 천문학적 규모였다. 이렇게 동원한 자금은 일본경제 또는 전쟁수행을 위해 일본국공채의 매입, 전쟁관련 업종의 대출자금으로 유용되었다. 특히 각 금융기관과 민간의 구매액이 100억 엔 이상이나 되었던 일본국공채10)는 해방 후경제건설을 위해 일본으로부터 상환받아야 할 중요한 자산이었지만 결국 휴지조각으로 전략했다.

일제 말기의 조선은행권 증발은 통제가격체제하에서 물가상승이 억제된가운데 일본국채를 발권 준비로 이용하여 체제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조세나강제저축 등 직접적인 자금수탈보다 훨씬 대규모적이면서도 인플레이션을이용하여 교묘하게 운용된 수탈방식이었다. 조선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 매입된 국채를 보증준비로 한 조선은행권 발행은 1941년부터 일본대장대신이 고시하는 최고발행제로 바뀌었고 특히 1944년 이후 패전 때까지는 국채보증이 발행준비의 거의 모두를 차지할 정도로 남발되었다. 실제로조선은행권은 1936년 말(2억 1,000만여 엔) 기준으로 9년도 안 지난 1945년 8월 14일(48억 3,900만여 엔)까지 무려 23배나 증발되었다.11) 일본국채는 일본은행권으로 매입했기 때문에 국채매입량만큼 일본은행권 통화량을 줄여 일본에서의 인플레이션을 억제한 반면 조선의 인플레이션은 그 이상으로 심각할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인위적인 물가억제조치에도 불구하고 생필품의 실

⁷⁾ 정태헌, 〈식민지재정기구를 통한 세출의 용도와 성격〉(《일본의 본질을 다시 문는다》, 한길사, 1996), 101~105쪽.

⁸⁾ 水田直昌・土屋喬雄 編述, 〈朝鮮産業の資金形成(第6話)〉(《財政金融政策から見た朝鮮統治とその終局》, 朝鮮史料編纂會, 1962), 104・111 等.

⁹⁾ 近藤釖一,《太平洋戰下の朝鮮》5(朝鮮史料編纂會, 1964), 101쪽.

^{10)〈}對日通貨補償要求의 貫徹〉(朝鮮銀行調査部,《朝鮮經濟年報》 I, 1948), 335\.

¹¹⁾ 朝鮮銀行史研究會 編、《朝鮮銀行史》(東洋經濟新報社, 1987), 736·847\.

거래가격은 수십 배나 뛰었고 암시장 거래가격과 통제가격의 차이도 일본의 2~3배보다 훨씬 높은 6~10배나 되었다.¹²⁾

둘째, 물자통제를 위해 생산·유통·소비를 통제하는 배급체제가 작동되었다. 생필품을 비롯한 물자난으로 내핍이 강요되면서 물자수급의 초점을 군수조달에 둔 통제경제체제가 가동된 것이다. 군수품 생산에 소요되는 원자재의해외의존도가 높았던 일본은 국제수지 악화에 대한 대책으로 1937년 10월부터 〈수출입품등임시조치법〉(1937. 9)을 조선에도 적용하여 전 산업부문에 걸쳐 거의 모든 물품에 대해 군수생산과 관련이 없는 물자는 물론, 필수원료의수입까지 제한했다. 그리고 물자부족에서 당연히 발생하게 마련인 물가상승을 인위적으로 막기 위한 조치가 수반되었다. 먼저〈조선물품 판매가격 취체규칙〉(1938. 10)에 따라 시장가격 체제를 부정하고 물가위원회 지정가격에 의한 상품거래를 강요했다. 또〈가격 등 통제령〉(1939. 10)을 제정하여 주요 산업물자의 거래를 시행기준일을 따라 '9·18 정지가격'이라고 불리운 '공정가격'에 맞추고 경제경찰에게 암거래의 단속과 처벌권을 부여하면서 통제체제강화를 꾀했다. 그러나 이러한 통제법령은 오히려 암거래 가격의 상승을 부채질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서민생활을 더욱 힘들게 만들었다.

전쟁의 확대로 군수물자 생산 장려와 생활필수품의 생산과 소비를 억제할 필요성이 더욱 높아짐에 따라 〈생활필수물자통제령〉(1941. 4)과 〈물자통제령〉(1941. 12)이 공포되었다.〈물자통제령〉은 철강재·전력·식량·목재·생사·금·은을 비롯한 광산물·신탄·의약품과 위생자재·축산물·채소와 과일등 전쟁물자에서부터 생활필수품에 이르는 물자 전반에 걸쳐 적용되었다. 또물자의 생산과 가공·수리 등의 제한·금지, 판매 및 양도를 총독이 명령할수 있도록 규정하여 생활필수품을 포함한 배급제도를 전면적으로 확대 실시하게 되었다.13) 그리고 쌀을 비롯한 각종 식량에서부터 축산물·임산물·수산물·섬유품·금속품·철기품 등 거의 모든 물자는 공출대상으로 규정되었다.14) 일단 공출량이 할당되면 생산 여부에 상관없이 암시장에서 높은 가격

¹²⁾ 정태헌, 《일제의 경제정책과 조선사회》(역사비평사, 1996), 422~425쪽.

¹³⁾ 허영란, 〈전시체제기(1937~1945) 생활필수품 통제 연구〉(《國史館論叢》 88, 2000), 292~293쪽.

으로라도 구입해서 충당해야 했기 때문에 그 부담은 생존을 위협할 정도였다. 또 산업통제와 물자배급을 일원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군수공업 하청기관으로서 원료배급기구인 공업조합중앙회 통제 아래 분산된 중소공업을 묶어통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것이 〈조선공업조합령〉(1938. 9)이었다.15) 전황이 나빠지는 1942년에는 〈기업정비령〉(1942. 6)을 제정하여 군수관련 기업도 '비능률적'인 경우 정리대상에 포함시켜 정선된 군수산업에만 설비와 자금을 집중 투여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전시물자 통제는 일정한 마무리가 이루어진 셈이었다.

셋째, 군수공업에 필요한 노동력 동원은 1938년부터 〈국가총동원법〉(1938. 5)을 조선에 적용하면서 본격적으로 강해되었다. 숙련공과 기술자를 군수공 업에 집중시키기 위해 제정된〈학교졸업자사용제한령〉(1938. 9)은 경성고등공 업학교 등 3개교의 기계·전기·채광·야금·요업·조선·항공 등 12개학과 의 수료자를 고용할 경우 허가를 받도록 규정했다. 또 〈공장사업소기능자양 성령〉(1939. 6)은 노동자 200명 이상을 고용하는 공장은 노동자 수의 6%를 숙련공으로 양성해야 한다는 강제규정까지 설정했다. 나아가 조선총독부는 노동력의 '적정배치'를 직접 관장하기 위해 직업소개·노동력공급·노동자모 집 등의 사업을 허가제로 규정한 〈조선직업소개소령〉(1940. 1)을 공포했고 이 를 위해 경성·부산·평양 등지에 있는 각 府營 직업소개소를 국영으로 이 관하고 1941년까지 대전・광주・청진 등지에 추가로 국영직업소개소를 설치 하여 노동력 공급에 주력했다. 1941년에는 〈노무조정령〉을 공포하여 비군사 부문의 노동자 고용을 제한하고 군사부문에 고용된 노동자 이동을 일체 금 지시켰다. 1943년에는 각 공장・광산마다 군대조직과 유사한 '仕奉隊'를 조직 하여 군대식으로 노동자를 통제했고 1944년 2월에는 〈국민징용령〉을 실시함 으로써 징용을 '황국신민'의 의무로 규정하고 여성을 포함한 전 조선인에 대

¹⁴⁾ 조선총독부가 전쟁수행을 위해 동원하여 수탈한 물자의 규모는 정확하게 집 계되어 있지 않다. 정부 수립 후 1949년 9월 1일까지의 조사에 근거하여 외무부 정무국이 간행한《對日賠償請求調書》에 따르면 1937년 이후 물적 피해와 강제 공출에 의한 손해액을 131억여 엔으로 계산했다. 그러나 빠진 품목이 많아 실제 피해액은 이보다 훨씬 큰 규모였다고 추정된다.

¹⁵⁾ 裵城浚, 《日帝下 京城지역 工業硏究》(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8), 151쪽.

20 I. 전시체제와 민족말살정책

한 강제동원정책이 시행되었다.16) 1944년 9월에는 모집·알선을 통한 동원방식을 없애고 총독부 강권에 의한 정용으로 통일시켜 강제동원 방식으로 일원화되었다. 이렇게 해서 동원된 규모는 정확한 실상은 현재 밝혀져 있지 않지만 대략 조선 내 동원 42만 명, 일본·사할린·남양군도 등으로의 동원 150만여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중에는 강제동원의 가장 극악한 형태인 '종군위안부', 즉 '성노예'로 동원된 수만 명의 젊은 여성도 포함되어 있다.

(2) 생산성 감퇴를 수반한 '산업고도화'의 실상

일제가 도발한 전쟁을 뒷받침하기 위한 군수물자 보급지로 규정된 조선경제는 군수부문의 급성장으로 경공업(식료품공업·방직공업), 중화학공업(화학공업·금속공업·기계기구공업)으로 나눈 공장생산의 업종별 구성의 추이에서이전과 달리 '고도화'현상을 보였다. 즉〈표 1〉에서 각년별로 양자의 비중을보면 1931년(65.8%: 18.3%), 1937년(53.4%: 33.4%), 1939년(44.2%: 43.6%), 1942년(38.7%: 46.9%)에 이르는 동안 1930년대 전반기까지의 경공업 절대 우위에서 1939년을 경계로 중화학공업 우위로 반전되었다. 1930년대 이후 공장(5인이상 고용)의 생산액(이하 공산액)은 '조선공업화'정책 시행기간인 1931~1936년간(2.62배)은 물론 '병참기지화'정책 시행기간인 1936~1942년간(2.59배)에도급증 추이를 보였다. [공산액] 비율도 1931년(39.1%) 이후 계속 급증하여 1936년(59.6%)에는 절반을 넘었고 1940년(80.1%)과 1941년(89.7%)에는 근접한 수준으로 좁혀졌다.

물론 이 시기의 공업화는 몇 가지 점에서 뚜렷한 한계가 수반된 것이었다. 첫째 1939년에도 가내공업(4인 이하 고용) 생산액이 공산액의 22%를 차지하여¹⁷⁾ 시장장악력이 제한적이었다. 둘째 공산액은 급증했지만 적어도 1941년까지 농산액에 미치지 못했고 공산품 원료로 쓰인 농산액까지 공산액에 포함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비중은 더 떨어진다. 또 이 시기 경제에서

¹⁶⁾ 郭健弘,《日帝下 朝鮮의 戰時 勞動政策 研究》(고려대 박사학위논문, 1999), 111~116・130~132・144쪽.

^{17) 《}朝鮮經濟統計要覽》(1949), 71쪽. 이 비율은 1935년(35%)에 비해 크게 축소된 것이었다.

간과할 수 없는 물가를 감안하면 공산액의 실제증가율은 명목증가율 보다 크게 떨어진 것이었다. 예를 들어 통제경제 초기인 1936~1939년간의 공산액 증가율(2.03배)은 실제보다 낮게 잡힌 물가상승율(1.64배)에 따르더라도 실질 증가율(1.24배)과 큰 차이를 보였다. 셋째 공산액은 1943년 이후 전황이 일본에게 불리해지고 연합국의 봉쇄정책이 강화되자 수송이 두절되어 원활한 원자재 공급에 제동이 걸리면서 절대액 자체가 감소 추이로 반전되었다. 생산성,즉 노동생산성과 공장의 평균생산액도 1940년대 들어 격감 추이를 보였다.

〈표 1〉 1930년대 이후 공장(5인 이상 고용) 및 생산액 추이

						-31/-	1 .01.	J 7 .	A A 1 7	7 vi			_	1 . 1 .	-3
연도	공장수	고용	노동자	수	공장생신		ᆣ엔)-]중(9		로엽종	를 띨	평균생수	난액(엔)	전 증] 년 ! 가율(9	
민도	(F)	총인원 (N)	기술자 (S)	S/N (%)	총 액 (P)	방직	금속	기계 기구	화학	식료 품	공장 (P/F)	노동자 (P/N)	Р	P/F	P/N
1931	4,613	106,781	3,262	3.1	27,515.1	8.9	5.9	0.8	11.6	56.9	59,647	2,577			
1932	4,643	110,650	3,340	3.0	32,327.1	9.5	6.7	0.7	10.9	59.4	69,625	2,922	17.5	16.7	13.4
1933	4,838	120,320	3,568	3.0	38,482.2	10.1	7.6	0.8	13.5	52.3	79,542	3,198	19.0	14.2	9.5
1934	5,126	138,809	4,171	3.0	48,652.2	10.2	8.5	1.0	14.0	53.3	94,913	3,505	26.4	19.3	9.6
1935	5,635	168,771	4,871	2.9	64,398.7	11.1	3.3	1.0	18.3	50.6	114,283	3,816	32.4	20.4	8.9
1936	5,927	188,250	5,051	2.7	72,031.9	12.5	3.9	1.0	22.6	44.5	121,532	3,826	11.9	6.3	0.3
1937	6,298	207,002	5,592	2.7	96,736.5	12.7	4.7	1.1	27.6	40.7	153,599	4,673	34.3	26.4	22.1
1938	6,624	230,996	7,152	3.1	116,711.5	13.4	7.4	1.8	27.2	38.4	176,195	5,053	20.6	14.7	8.1
1939	6,953		8,250	3.1	145,983.2			3.2	31.4	31.0	209,957	5,398	25.1	19.2	6.8
1940	7,142	294,971	10,406	3.5	164,504.7	14.0	8.8	4.2	39.4	18.5	230,334	5,577	12.7	9.7	3.3
1941	10,889	301,752			172,222.5						158,162		4.7	-31.3	2.3
1942	12,669	331,181			186,391.2	16.8	11.1	5.7	30.1	21.9	147,124		8.2		-1.4
1943	13,293	362,953			205,000.0				29.3	19.5	154,217	5,648			
1944	,	,	6,129		200,000.0						,				
					기간	별 증	5가율	- (배)	ı						
1931 ~36	1.29	1.76	1.55		2.62	3.70	1.76	3.21	5.09	2.05	2.04	1.49			
1936 ~42	2.14	1.76			2.59	3.47	7.32	14.32	3.46	1.27	1.21	1.47			
1942 ~43	1.05	1.10													

^{*《}朝鮮經濟年報》 I (1948), 100쪽; 《朝鮮總督府統計年報》(1940), 112~119쪽. 1941년 이후는 《朝鮮經濟統計要覽》(1949), 69~70쪽.

비고 : 1943년, 1944년 생산액은 예정치임. 1944년의 기술자 수는 토목건축 부문(2,347명)을 뺀 인원임.

〈표 1〉에서 공산액 추이를 보면 예정치인 1944년부터 감소경향을 드러냈 다. 그러나 1943년의 추정치를 15억여 엔으로 집계한 다른 자료18)가 전후 에 발표되어 훨씬 사실에 가깝다고 본다면, 공산액은 1943년부터 심각한 상태에 빠져 1942~1943년간에 극심한 감소율(-19.5%)을 보였다. 즉 공장 생산은 1939년까지 비교적 순조롭게 증가했지만, 이미 1940년부터 자재난 에 봉착하여 조업이 연기되거나 예정된 사업 착수가 중지되는 경우가 많 아19) 일제가 독려하는 의도대로 이루어질 수 없었다. 이 때문에 1940년대 에는 모든 가용자원을 군수생산에 집중하고 통제 강도를 높였지만 공산액 증가율이 둔화되었고 1943년 경부터 절대액 자체가 감소했다. 1938년에 〈국가 총동원법〉과 더불어 시행된 물자동원계획이 1940년부터 중점주의 생산방침 으로, 생산력확충계획이 설비확장보다 기존설비를 최대한 활용한 단기적 생산량 극대화방침으로 바뀐 것도 이러한 배경 때문이었다. 바로 이런 와 중에서 일제는 1941년 말 미국과의 전쟁까지 도발한 것이다. 전쟁 도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1942년 미드웨이해전의 대패 이후 선박 상실이 급증함에 따라 수송력이 두절됨으로써 물자난과 생산력 감소는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었다.

각년별 공산액 증가율도 1940년 경부터 격감했는데 1936~1937년간(34.3%)부터 1938~1939년간(25.1%)까지는 대단히 높았지만, 1939~1940년간(12.7%)에 격감한 이후 1940~1941년간(4.7%), 1941~1942년간(8.2%)에는 현격하게 떨어졌다. 1940~1942년간에도 물가상승을 고려하면 사실상 마이너스 성장률에 가까웠고 이후에는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섰다. 공산액은 대체로 1940년 경부터 실질적으로 또는 절대액 면에서 마이너스 성장의 늪에 빠져들었다. 다만 1931~1936년간의 증가율(2.62배)에 비해 기간이 짧은 3년간인 1936~1939년간의 증가율(2.03배)이 비교적 높았던 것은 만주침략 이후 신설되기 시작한 공장들이 1937년 경부터 조업에 착수된 경우가 많았고 중국침략 이후 건설된 공장들도 시국의 중대함에 비추어 바로 조업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¹⁸⁾ 大藏省管理局、《日本人の海外活動に關する歷史的調査》第6分冊、19~20쪽、

¹⁹⁾ 川合彰武、《朝鮮工業の現段階》(東洋經濟新報社, 1943), 229~230쪽.

생산액 감소는 생산성의 격감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1936~1942년간에 [공장수(2.14배)<생산액(2.59배)] 증가율 관계를 보였지만 단위공장의 생산성, 즉 공장의 평균생산액 증가율(1.21배)은 이전 시기보다 크게 둔화되었다. 각년별 증가율 추이를 보면 1936~1937년간(26.4%) 이후 떨어져 1939~1940년간(9.7%)에 격감한 이후 마이너스로 반전되었는데 1940~1941년간(-31.3%)의 감소율이 특히 컸고 1941~1942년간(-7.0%)의 감소율도 적지 않았다.

노동자수는 1931~1936년간(1.76배)에 이어 1936~1943년간(1.93배)에도 급증했지만 노동생산성, 즉 노동자의 평균생산액은 1940년대에 격감 추이를 보였다. 노동생산성의 각년별 증가율을 보면, 1936~1937년간(22.1%)을 정점으로 1937~1938년간(9.1%)에 격감한 후 1940~1941년간(2.3%)까지 매년 떨어졌으며 1941~1942년간(-1.4%)에 마이너스로 반전되었다.

회사의 납입자본 증가 추이는 1931~1936년간(2.01배)에 비해 1936~1941년간(2.34배)에 크게 늘어났다. 그러나 1934~1935년간(37.0%)부터 1938~1939년간(37.3%)까지, 즉 중국침략을 전후한 시기에 급증했을 뿐 일제가 자금동원에 주력했음에도 불구하고 1940~1941년간(5.4%)에는 격감했다. 자본생산성(공산액/납입자본금 비율)의 각년별 추이를 보면 투자의 효율성도 크게 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즉 납입자본이 급증하는 1934~1935년간(-3.4%)과 1935~1936년간(-8.6%)의 마이너스 성장률은 투자와 공장가동의 시차 때문이기도 하지만 1938~1939년간(-8.9%) 이후에도 계속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다. 전시체제에 따른 생산독려 속에서도 생산량이 조선경제가 견딜 수 있는 한계를 넘어 동원한 투자액을 따르지 못하여 투자효율은 현저하게 격감하고 있었다.20)

이처럼 각 부문의 생산성이 격감하는 와중에서 공장수가 1940년대에도 계속 늘어났다는 것은 사실상 휴폐업 된 경우까지 포함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려니와 공장가동률이 크게 떨어지고 있던 당시의 현실을 반증한다. 한편 1943년의 공산액 추정치를 15억여 엔으로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1942~1943년간에 공장생산성(-23,3%)과 노동생산성(-26.6%)이 격감했고 이러한 추이

²⁰⁾ 이를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는 일제가 패전할 때까지 더욱 심해져 갔다.

공산액의 업종별 추이와 특징을 살펴보자. 이전까지 가장 비중이 컸던 식료품공업은 1931~1932년간(56.9~59.4%)에만 늘어났을 뿐 이후 다른 업종 의 급증으로 계속 감소하다가 1939년에 화학공업에 수위를 내주었고 특히 1940년(18.5%)에 격감하여 1936~1942년간의 증가율(1.27배)도 가장 낮았다. 비료 및 군수원료의 생산이 급증하여 화학공업은 1931~1936년간(5.09배, 11.6~22.6%)에 급증했고 1939년(31.4%)에 최다비중을 차지한 이후 1940년 (39.4%)에는 압도적인 업종으로 부상했다. 그러나 기초부문인 산 알칼리공 업은 물론 유기화학공업 부문이 거의 없이 약품 및 역료 공업의 대부분을 일본에 의존했다. 방직공업은 1931년(8.9%), 1937년(12.7%), 1942년(16.8%)에 이르는 동안 계속 확대되어 1936~1942년간 증가율(3.47배)도 대단히 높았 다. 특히 면방직공업은 '일본권'과의 종속적 분업연관 속에서 중국침략 이 후 늘어난 군수요를 충족시키고. 일본이 군수공업에 치중하면서 발생한 필 수품 공급의 부족을 보완하는 역할 때문에 크게 성장했다. 이 기간 면방직 업의 경영주체는 경성방직 외에는 대부분 일본자본이었는데 면방직업도 1940년대 이후에는 목화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정체 또는 축소되는 처지에 놓였다.

금속공업은 1931~1936년간(5.9~3.9%)의 완만한 감소 추이에서 1937년 (4.7%) 이후 늘어나 1942년(11.1%)과 추정치인 1943년(14.6%)에 급증했는데

연 도	1931	931 1932		1934	1935	1936	1937	1938	1939	1940	1941	증가	간별 율(배)
												~36	1936 ~41
납입자본금 (만엔)	35,923	37,525	39,324	43,151	59,128	72,326	93,467	102,814	141,159	160,372	168,954	2.01	2.34
전년비증기 율(%)	-	4.5	4.8	9.7	37.0	22.3	29.2	10.0	37.3	13.6	5.4		
자본생산성	0.77	0.86	0.98	1.13	1.09	1.00	1.04	1.14	1.03	1.03	1.02	1.30	1.02
전년비증기 율(%)	-	12.5	13.6	15.2	-3.4	-8.6	3.9	9.7	-8.9	-0.8	-0.6		

^{(〈}표 1〉, 《朝鮮總督府統計年報》, 각년판).

^{*} 공산액에는 회사가 아닌 소공장 생산액도 포함되지만 추이 파악에 무리는 없다고 생각된다.

1936~1942년간의 증가율(7.32배)도 대단히 높았다. 기계기구공업은 1936~1942년간(14.3배, 1.0~5.7%)에 증가율이 가장 높았지만 비중이 작았고 2~3개 대공장을 제외하면 소규모 수준이었다. 금속・기계기구공업의 비중은 1938년(9.2%)에 비해 1942년(16.8%)에 늘어났지만, 일본의 경우 1938년(41%)에 이미 절대적 비중을 점했고 1940년대에 70%로²¹⁾ 급증한 것과 비교하면 미미한 수준이었다. '일본권'의 종속적 고리로 규정된 가운데 선철이나 鋼 등 군수용 광물의 이출과 공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금속・기계기구공업의 제한적성장도 생산수단의 생산보다 수리・조립 수준에 머물러 일본으로부터 중공업제품 수입의 급증을 수반했다. 1940년에도 기계기구 자급률은 제조가공용기계 19.6%, 차량・선박・자동차 및 부속품 등 수송수단에서 29.5%를 차지했을 뿐 나머지는 4~7%의 낮은 수준이었고 공작기계나 철도기관차의 경우는 전무했다.²²⁾

(3) 군수원료로서 광물의 생산 및 이출 급증

'병참기지화'정책의 큰 특징은 '鑛業化政策'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광산 개발에 집중되었다는 점이다. 〈표 2〉를 보면 1937년 이후의 광산액(41억 2,700만여 엔)은 식민지 전기간 광산액(48억 9,300만여 엔)의 84%가 집중되었다. 특히 전쟁수행에 필수적인 차량이나 항공기 등 군수품 생산원료로서, 그리고 무역결제대금 확보를 위해 '지상명령'으로 채굴된 원광석이 그대로 일본으로 이출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 시기의 광업은 군수공업, 대일 이출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면서 '성장'했기 때문에 해방 후 미군정이 억제정책을 펴는 배경이 되었고 시장도 사라져 광산 가동이 대부분 정지되는 운명에 처하게 되었다.

1936~1942년간에 광산액 증가율(4.3배)은 공산액 증가율(2.6배)보다 훨씬 높았으며 [광산액] 비율도 1931년 7.0%에 불과했던 것이 1930년대 후반에 15% 내외로 급증했고 1940년대 초에 20%를 훨씬 넘었으며 추정치이지만 1943년

²¹⁾ 川合彰武, 앞의 책, 309쪽.

²²⁾ 朝鮮銀行調查部、《朝鮮經濟年報》I (1948), 101 목.

과 1944년에는 50%가 넘을 정도로 광산액이 급증했다. 광산경영도 점차 일본자본이 장악해 가는 추이를 보였다. 1937~1944년간에 조선인 광산의 생산량 비중은 금의 경우 25%~10%로 격감했고 동(20%)·아연(5%)·납(10%)의경우는 변동이 없었지만 나머지 鑛種에서는 형석·흑연 등 일부를 제외하면모두 일본인 광산에서 생산되었다. 조선인 광구의 비중은 1931년 26%, 1937년 47%, 1945년 31%로 적지 않았지만 영세규모를 벗어나지 못했다. 1937~1945년간에 조선인 광구 비중의 감소와 대조적으로 일본인 광구는 1.84배나급증했다.²³⁾

'병참기지화'정책의 일환으로서 일제가 광산 개발에 박차를 가한 것은 무엇보다 일본 내에서 생산되는 중요광물의 종류가 적었기 때문이었다.〈조선중요광물증산령〉(1938. 5) 공포 당시 총독부의 穗積 식산국장은 철・텅스텐・수연・흑연・운모・마그네사이트 등의 광물은 전적으로 조선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다고 토로할 정도였다. 실제로 1944년 '일본권' 안에서 생산된 광산물 중 조선산 비중이 50% 이상을 점하는 광물은 형석・흑연・텅스텐등 9가지였고 보통선철・알루미늄・아연・철광석・석면・운모・철광석 등은 10% 이상을 차지했다. 중요하고 시급하게 증산해야 할 중요광물은 금・은・동・납・수은・아연・철・텅스텐・니켈・코발트・흑연・석탄・마그네사이트・사금 및 사철 등 25종이었고 조선에서는 이 가운데 금・철강・석탄・경금속(알루미늄・마그네슘), 비철금속(동・납・아연) 등 생산력확충 15품목을 생산하도록 규정되었다. 광업을 군수공업에 종속시킨〈조선중요광물증산령〉은 '국방상 특히 중요'한 광물 증산을 위해 장려금을 교부하거나 광업자에게 사업설비의 신설・확장・개량 또는 광업권 양도를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²⁴⁾

²³⁾ 朝鮮銀行調査部、《朝鮮經濟年報》I (1948)、86\(\text{86}\).

²⁴⁾ 全國經濟調查機關聯合會朝鮮支部編,《朝鮮經濟年報》(1939),198~199等·(1940), 215~216等.

²⁵⁾ 일제 말기의 통계는 불확실한 경우가 많다. 이 표에서는 1943년과 1944년의 광산액이 급증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1942년 이후 가동광구수와 허가광업자가 격감하는 상황에서(〈표 3〉) 그 가능성은 희박하다. 물론 같은 자료의 다른 통계(Ⅲ-19쪽)를 보면 광업종사자가 1943~1944년간에 51만 4,000여 명~323만여 명으로 급증하여 호당 가족 수를 감안할 때 1944년의 광산노동자가

〈표 2〉 광산액과 이출(대일 수출)액²³⁾

(만엔)

연도	광산액 (T)	이출액 (E)	E/T (%)	연	년		광 산	액(T)		Ó] 출 앤	(E)	E/T (%)	
1910	607	72	11.9	19	1937		14	4,197		74.7				
1914	852	149	17.5	19	40		31,966				30,84	5	96.5	
1916	1,417	623	44.0	19	41		36	5,914			7,14	0.	19.3	
1918	3,083	2,648	85.9	19	42		4	4,544			24,26	5	54.5	
1920	2,414	1,627	67.4	19	43		10	1,043			31,08	4	30.8	
1926	2,437	1,249	51.3	19	44	110,273					1,60	4	1.5	
1929	2,648	1,923	72.6	19	45			1,719						
1930	2,468	1,561	63.2	총 액				3(100.0%)			,101(10		41.3	
1001	1.000	1.000	CC O	1910~	~30년	4	41,750(-8	8.5%) 4.1	1배	28	,709(1	4.2%)	68.8	
1931	1,932	1,293	66.9	1930~	~36년		34,859('	7.1%) 4.5	2배	24	,813(1	2.3%)	71.2	
1936	10,310	9,240	89.6	1936~	~44년	41	2,709(84	.3%) 10.	.7배	148	,580(7	3.5%)	36.0	
1910~1945년간 총광						산	액에 대형	한 종별	비중	(%)				
금은기	금은광 강철 선칙		철	철강	중선	1	유연탄	무연탄	아	연	석면	소	:계	
21.2 27.7		7 7.	.4	3.5	4.6		6.1	6.0	7.	3	3 2.3		86.1	

^{*} 朝鮮銀行調査部、《朝鮮經濟年報》I (1948), 36\.

이처럼 전쟁수행을 위한 생산력 확충의 명분 아래 재정·금융의 집중혜택을 받으면서 '기대 이상의 성적'을 거둔 광업의 비약적인 성장은 결국 조선이 보유한 지하자원이 비생산적으로 소진되었음을 의미한다. 금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중국침략과 때를 맞추어 제정된 〈조선산금령〉(1937. 7)은 1936년의 금생산액 20톤을 1942년에 75톤, 즉 '일본권' 산금량의 55%를 조선에서 생산한다는 5개년 계획으로 제정되었다.26) 군수산업의 기초원료인 철과 원유의 자급도가 낮았고 '일본권'밖에서 기계류 수입이 급증함에 따라 그에 대한 결제수단으로서 금 증산이 절실했기 때문이었다.27) 그러나 1943년 이후원래 목표했던 증산계획기간이 끝나고 연합군의 대외무역봉쇄가 강화되어

^{65~70}만여 명이나 되어 광산액 급증의 가능성을 보여주기도 한다. 그러나 또 다른 통계(I-84쪽)에서의 1944년 광산액(4억 3,400만여 엔)은 이 표(11억여 엔)와 큰 차이가 있다. 이 표에서는 자료의 일관성을 위해 그대로 게재한다.

²⁶⁾ 당시 일본의 금생산량은 10톤 정도였다(水田直昌・土屋喬雄 編述,〈金融機關 の近代的改編とその發達(第5話)〉、앞의 책、86等).

²⁷⁾ 朝鮮殖産銀行調査部、〈朝鮮産金業の再檢討〉(《殖銀調査月報》7,1938),28~30쪽.

28 I. 전시체제와 민족말살정책

무역결제자금으로서 금 증산의 필요가 없어졌다. 원래의 증산계획기간인 1937~1942년간의 금생산액은 〈표 2〉에서 같은 기간 광산액(17억여 엔)의 32% 나 차지했다.²⁸⁾ 이윤을 초월하여 채굴된 금은 조선경제의 내실을 채우는 것과 무관한 군수자재를 수입하거나 '기름을 사고 전쟁을 수행'하는데 유용되었으며 일본은행권 발행의 정화준비에 쓰여진 것이다.

⟨표 3⟩ 광구수와 종류별 비중

(%)

	_		주요	2. 鑛租	別비	중(%)		1 100		주.	3. 鑛和	重別 日	중(%)		가동:	랑구율	(가동	광구수,	/총광구	수 비원	k, %)			
연도	총 광구 수 (개)	금은	철	금,은, 동, 아연	흑연	석탄	사철 사금	가동 광구 수 (개)	금은	철	금,은 동, 아연	흑연	석탄	사철 사금	전체	금은	철	금,은, 동, 아연	흑연	석탄	사철 사금	광업 出願 건수 (A)	광업 허가 건수 (B)	B/A (%)
1927	2,175	29.1	8.0	21.5		21.7	4.6	366	35.8	7.7	16.9	9.3	15.6	2.5	16.8	20.7	16.0	13.3	29.1	12.1	9.0			
1931	2,390	37.6	5.9	22.2	6.0	14.8	3.9															1,805	343	19.0
1935	5,596	57.8	2.5	19.7	2.6	6.7	5.5						l									10,153	1,445	
1936	6,513	58.6	2.2	20.0		6.1	5.3	3,902	71.1	1.3	7.4	2.3	3.8	7.8	59.9		34.0		50.3	37.7	88.9	6,105	1,268	
1937	7,454	58.1	2.1	25.0		5.8	4.9	4,523	70.1	1.1	9.5		3.7	7.0	60.7		33.3		39.2	38.3	86.8		1,357	16.7
1938	8,623	56.6	2.0	22.1	2.8	5.4	4.5	5,206	70.4	1.2			3.6	6.7	60.4		37.4	31.1	44.4	40.6		15,721	1,466	9.3
1939	1 1	55.3	2.2	21.3		4.6	4.1	6,503	66.4	1.2			3.4	5.9	61.5				50.0	45.6		16,411	2,237	13.6
1940	1 1	53.1	2.0	21.9		4.4	3.9	7,084	65.4	1.2	16.9		3.4	5.4	58.6		34.6		42.0	45.4		10,548	1,886	17.9
1941	,	51.2	2.0	27.8		4.4	3.7	7,254	54.2	1.8	26.6		4.1	3.7	58.0		53.1	55.6	54.7	54.6	58.7	-,	1,020	16.3
1942	,	51.7	2.2	26.2	3.5	4.5	3.1	6,828	54.2	1.9	25.7	3.4	4.2	2.9	58.1	60.9	50.4	57.0	57.4	53.9	55.5		372	7.9
1943	1 1	50.1	2.3	26.0		4.5	3.0															9,798	995	10.2
1945	10,577	32.8	3.1	31.4	7.0	5.7	2.3	733							6.9							1,266	390	30.8
		7	1간별	증가:	율(배)	_		기간별 증가율(배) 기간별 증가율(배)																
1936 - 41	1.92	1.35	1.70	2.67	2.28	1.40	1.35	1.86	1.42	2.65	6.73	2.48	2.02	0.89										
1941 ~ 45	0.85	0.54	1.34	0.96	1.83	1.09	0.52	0.94	0.94	1.01	0.91	1.05	0.96	0.74										

^{*《}朝鮮經濟年報》I (1948), 85쪽, III, 35쪽;《朝鮮統計年鑑》(1948), 118~121쪽;《朝鮮總督府統計年報》(1940), 110~111쪽. 가행광구수의 마지막 증가율은 1941~1942년 간임. 1945년의 가동광구 수는 7월 현재임,《朝鮮經濟年報》I (1948), 86쪽.

1937년 이후 금생산액

(만엔)

연도	1937	1938	1939	1940	1941	1942	1943	1944	1945	총액
생산액	7,331	9,271	9,918	9,493	8,273	9,289	5,868	257	230	59,929

^{*}조선은행 조사부,《朝鮮經濟年報》I (1948), 81쪽.

²⁸⁾ 金생산액은 1943년 이후 격감 추이를 보였다.

《표 3〉에서 '병참기지화' 정책 시행 이후 1942년까지 가동광구의 대부분(54~71%)이 금(은)광이었고 합금광을 포함하면 80% 정도나 차지했으며 광업 출원건수와 허가건수의 대부분(80~90%)이 금광 또는 합금광이었다. 금(은)광은 1931년에 출원건수의 76%를 차지한 이후 채산성 있는 광구가 점차 줄어들면서 1940년에는 16%로 격감했다. 대신 이를 메운 합금광(금・은・동・아연광)이 1931년 14%에서 1940년에 64%로 급증했다. 이 기간에 금(은)광이 허가건수의 71~51%로 감소한 반면에 합금광은 17~34%로 급증했다. [허가건수] 비율은 1942년까지 10~20% 정도에 불과했지만 금(은)광의 출원은 해마다 수천건씩, 많을 때에는 1만 4,000여 건(1939년)이나 될 정도로 금(은)을 찾아 떠도는 부류가 대단히 많았다.29) 금광이 많은 것도 일제의 금증산정책에 부응한 당시의 골드러쉬 추세와 어우러져 다른 광종보다 소규모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골드붐은 시간이 지나면서 채산성 있는 광구 탐색에 한계를 드러내 신규허가건수가 1940년(1,886건)부터 줄기 시작하여 특히 1942년(372건)에는 격감 추이를 보였다.

광산은 채굴에 착수했더라도 채산성 문제로 실제의 가동률이 현격하게 떨어지게 마련이다. 실제로 〈표 3〉에서 1920년대에 가동광구율(가동광구/광구총수 비율)은 20%도 안되었다. 그러나 1930년대 중반 이후부터 1941년 사이에는 광구수가 급증했을 뿐 아니라 가동광구율도 60% 안팎으로 급증했다. 그만큼 일제의 독려와 더불어 채산성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재정·금융의혜택이 집중되었음을 뜻한다. 물론 가동광구수의 증가 추이도 곧 한계에 부딪혀 1936~1941년간(3,902개~7,254개, 1.86배)과 달리 태평양전쟁 도발 직후인 1942년(6,828개)에 바로 감소 추이는 반전되었고 1943년 이후 금광이 정리되면서 해방 직전인 1945년 7월(733개)에는 1941년의 1/10로 축소되었고, 1945년 말 총광구 수의 6.9%에 불과할 정도로 광산가동률도 급격하게 떨어졌다.

^{29) 《}朝鮮總督府統計年報》(1940), 108~109\.

⟨표 4⟩

수이출상품의 종류별 비중

	수이출품			수이출	품 총액	에 대한 각	비중(%	6)
	총액 (만엔)	대일이출 비중	대만주 수출비중	농산품	광산품	광산품 중 광물 비중	공산품	공산품 중 섬유제품 비중
1920	19,702.0	86.0		64.1	11.8	(47.6)	6.2	(73.6
1928	36,597.8	91.2	6.9	58.1	4.9	(49.0	15.7	(75.3)
1929	34,566.4	89.7	8.0	61.7	5.4	(52.3)	19.9	(69.4)
1930	26,654.7	90.3	6.9	62.7	5.6	(53.2)	20.1	(75.3)
1931	26,179.8	95.1	4.1	66.3	4.8	(65.5)	18.5	(70.2)
1936	59,331.3	87.3	11.0	55.7	11.1	(70.2)	13.8	(55.3)
1937	68,554.2	83.5	13.4	48.0	14.4	(57.6)	14.4	(59.2)
1938	87,960.6	80.8	16.0	49.2	13.6	(61.2)	11.7	(60.9)
1939	100,679.3	73.2	22.7	31.6	17.5	(93.3)	13.1	(61.4)
1940	94,780.9	78.2	15.5	18.3	26.8	(57.6)	14.8	(61.5)
1941	97,319.8	81.0	13.5					
1942	94,472.2	79.6	15.3					
1943	70,500.7	72.8	19.3					
1944	91,960.2	79.3	16.4					
			기간	별 증가	율(배)			
1928~31	0.72	0.75	0.43	0.82	0.71	0.94	0.84	0.79
1931~36	3.85	2.96	21.03	1.83	13.97	13.50	2.72	2.38
1936~40	1.60	1.43	2.25	0.52	3.85	3.16	1.71	1.90
1936~44	1.55	1.41	2.31	0.63	0.97	1.39	0.05	0.06

^{*} 朝鮮銀行調査部、《朝鮮經濟年報》Ⅲ(1948)、43·44·48\.

광산액 급증에 따라 수이출품 구성에서도 농산품 비중이 줄고 광산품, 특히 광물의 비중이 높아졌다. 〈표 4〉를 보면 1936~1940년간의 수이출총액 증가율(1.60배)을 이끈 것은 광산물이었다. 광산물의 수이출총액에 대한 비중과증가율(11.1~26.8%, 3.85배)이 급증한 반면 농산품(55.7~18.3%, 0.52배)은 현격하게 축소되었고 공산품(14.4~14.8%, 1.71배)은 정체된 모습을 보였다. 수이출광산액 가운데 원광물의 비중은 60% 내외를 차지했다. 〈표 2〉에서 광산액중 이출 비율은 1910~1936년간(71.2%)에 비해 1937~1942년간(68.8%)에 다소

비고 : 1941년 이후는 기타품목의 비중이 높게 잡혀져 있어 품목별 구분이 명확하지 못해 제외했음.

떨어졌다. 이것은 태평양전쟁을 전후한 1941년부터 해상수송에 차질이 생기면서 조선 내에서 소비되는 광물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반영한다. 수이출액이 1940년대에 감소 추이로 반전된 것도 이 때문이었다. 일본과 만주에 집중된 식민지 무역구조하에서 수이출액 증가율은 '조선공업화'기간인 1931~1936년(3.85배)에 비해 기간이 훨씬 긴 1936~1944년간(1.55배)에 크게 떨어졌다. 공산액의 경우처럼 수이출액은 특히 1943년에 격감했고 대만주 수출보다 바다를 건너야 하는 대일이출의 정체 또는 감소현상이 두드러졌다. 이처럼 1940년대의 생산력 정체와 감퇴현상은 여러 지표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다.

3) '병참기지화' 정책과 조선경제

(1) 성장을 모색하던 조선인 자본가의 한계

식민지공업화를 추동한 일본자본의 조선산업에 대한 지배력은 절대적이었다. 1929~1937년간에 조선인회사의 수는 3.7배, 자본금은 2.3배 증가했지만 90% 이상이 자본금 10만엔 이하의 소회사였다. 공업화 붐 속에서 조선인: 일본인 회사의 납입자본금 비중은 1931년(10.3:83.3%)보다 1937년(12.2:83.0%)에 합작회사의 비중이 줄고 조선인 회사의 비중이 다소 확대되기도했다. 그러나 '병참기지화' 정책에 의한 통제경제가 한창 진행중이던 1942년(8.3:88.8%)에는 조선인 회사의 비중이 크게 축소되었다.30) 특히 자본금 100만엔 이상인 대자본회사의 격차는 더 커서 1940년의 경우 조선인 자본은 6%에 불과했다. 1942년 추계에 의하면 광공업회사의 설비자본 29억여 엔 가운데 일본질소(주)와 같이 일본에 본점을 둔 회사의 투자비율이 74%나 된반면에, 조선내 회사의 투자비율은 18%에 불과했고 그 가운데 조선인 회사의 비율은 6%에 그쳤다.31)

조선인 공장의 대부분은 50인 미만의 직공을 둔 영세한 규모였다. 업종별

³⁰⁾ 허수열, 〈식민지적 공업화의 특징〉(《공업화의 제유형》 Π , 경문사, 1996), 195쪽.

³¹⁾ 河合和男・尹明憲, 앞의 책, 135쪽.

로는 화학·식료품·요업·방직공업 등에서 두드러졌는데, 화학공업의 경우 정어리에서 魚油를 추출하여 일본질소(주)와 같은 일본회사에 공급하는 하청업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금속정련업, 도금업, 원동기·전기·토건용기기제조업, 법랑철기 제조업 등에도 조선인이 진출하였으나, 증기관·전지·철도차량·시멘트·펄프·맥주제조업, 제당업, 가스업 등 기술력을 요하는 업종에서는 조선인 공장이 전무하였다. 또 방직공업 부문을 제외하면 대자본이 필요한 영역에는 거의 진출하지 못하였고 대부분 생필품이나 일본인 군수회사의 하청 생산을 담당하는 영세공장이었다. 즉 식민지공업화로 조선인 자본가들은 영세한 기술력과 자본으로도 경쟁이 가능한 제한적인 틈새 영역에서일시적으로나마 성장했지만 기술력과 대자본을 요하는 부문으로 거의 진입하지 못한 상태다. 그만큼 공업화에 따른 기술이전의 수준도 제한적이었다.

《표 1〉에서 공장수는 1936~1943년간(5,927~13,293개, 2.24배)에 크게 늘어났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1940년대 이후에는 각종 통제로 사실상 (世)휴업 상태에 있던 공장이 다수 포함 된데다가 가동률이 대단히 떨어졌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다른 한편 이처럼 공장수가 많이 늘어난 것은 공장통폐합을 통한 군수산업 집중도가 컸던 일본에 비해, 조선에서는 전쟁수행의 간접적 지원을 위해 중소공업을 활용하여 소비재 필수품 생산을 유지할 필요가 있었던 정책의 차이 때문이기도 했다. 그러나 가중되는 물자난과 1942년 이후에는 영세업체를 주요 대상으로 한 〈기업정비령〉이 시행되어 조선인 업체를 중심으로 한 중소공장은 가동률이 떨어지거나 폐업하는 수밖에 없었다. 즉 중소업체들은 전쟁경기의 틈새시장을 노리면서 명맥을 유지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일본독점자본의 군수 하청공장으로 재편성되지 못하면 대부분 도태될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조선인자본이 집중된 대표적 업종인 메리야스제조업의 경우 1단계 기업정비가 종료된 1944년 3월, 이전의 722개에서 174 개로 격감했다.

이 시기 조선인 자본가의 존재 양태는 세 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드문 경우였지만 조선비행기공업(주)의 朴興植, 경성방직(주)의 金佾 洙처럼 군수산업에 관련을 갖고 '일본권' 내의 분업구조에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일제의 정책적 보호 아래 자본축적과 성장을 꾀했던 자본가군을 들 수 있다. 예속자본가 범주에 속하는 이들은 일제가 도발한 침략전쟁과 흥망을 같이 했다고 할 수 있다. 한 외국 연구자는 물자부족과 전시하 공급자위주 시장을 기반으로 1933~1945년 사이에 고정자산을 50배 이상 늘인 경성방직에게 품질과 경쟁에서 이겨야 하는 평화시대는 오히려 장애물이었고식민통치가 준 경제적 기회를 이용하여 1945년 이전에 처음으로 재벌을 형성했다고 평가했다.32)

둘째, 식민지공업화의 붐을 타고 일정한 성장을 보였지만 전시체제가 강화되면서 성장의 기회가 차단되어 타협적으로 투자의 전환을 꾀한 경우를 들수 있다. 예를 들어 1930년대 중반에 텅스텐 광산을 소유했던 원윤수는 만주침략 이후 군수광물인 텅스텐 수요의 급증으로 부를 축적할 수 있었지만 1937년 이후 광물채굴에 점차 일본자본이 집중되면서 광산을 판 매각대금으로 지주・요식업자・고리대금업자・고무공업 등으로 다양한 투자처 변신을 꾀했다. 그러나 결국 광업자본가로서의 성장이 차단되어 퇴보의 길을 걸었다.33)

셋째, 대다수 조선인 자본가들의 경우로서 전시통제 속에서 물자난과 자금 난이 겹쳐 점차 도태되는 부류를 들 수 있는데 특히 1942년의 〈기업정비 령〉은 이들에게 큰 타격을 안겨 주었다. 물자난의 틈새를 타고 소극적 저항 의 한 형태라고 볼 수도 있는 암거래로 자본축적을 꾀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들의 대부분은 기업정비 과정에서 자기 자산을 사실상 빼앗기는 상황에 처했으면서도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했다. 鄭周永이 20대 시절인 1940년에 설립한 자동차 정비공장인 아도서비스의 경우,〈기업정비령〉으로 1943년 초 일진공작소에 합병당했다. 그는 이를 두고 "말만 합병이지 합병 아닌 흡수였 다. 동업자였던 李乙學ㆍ김명현씨가 먼저 빠져나가고, 강제 합병된 회사에 아무 의욕도 정열도 없었던 나 역시 곧 손을 떼었다"고 회고했다.34)

1930년대 이후 식민농정의 전환으로 유산층의 자본투자처가 다양화되고,

³²⁾ Carter J. Eckert, Offspring of Empire—The Koch'ang Kims and the Colonial Origins of Korean Capitalism 1876~1945,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1991.

³³⁾ 정병욱, 《일제하 조선식산은행의 산업금융에 관한 연구》(고려대 박사학위논 문, 1998), 226쪽.

³⁴⁾ 정주영, 《이 땅에 태어나서—나의 살아온 이야기》(솔, 1998), 42~43쪽.

일제 침략의 부산물로서 '만주붐'이 조성되는 환경 속에서 조선인 자본가들이 경영하는 공장이나 회사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러나 전시체제로 접어들고 전황이 악화되면서 일본 독점자본이 장악한 시장의 틈새에서 성장과 자본가로서의 생존을 모색했던 이들에게 운신의 폭은 극도로 제한되었다. 이들은 자기들의 이해관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일제의 정책 운용에 개입할 여지도 능력도 없이 일본 또는 조선총독부가 전쟁 동원의 필요에 따라 결정하는 정책에 일방적으로 순응하는 존재였다. 일제가 패망할 때까지 군수업에 관련을 가지면서 기업을 유지하거나 부를 축적한 극소수의예를 제외하면 결국 기업정비 단계에 들어와 대부분 도태되거나 현상유지에급급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한국근대사에서 자본가 그룹은 자신들이 주체가 되어 역사의 전면에서 사회를 이끌어가기보다 민족해방운동을 적대시하면서 일제에 예속되어 부의 축적을 꾀했지만 결국 성공하지 못했고 사회구성원에 대한 사회적 정치적 리더십은 더더욱 가질 수 없었다. 오늘날까지 불식되지 못한 한국 자본가그룹의 천민성・부패성・대외의존성은 이러한 역사적 연원에서 배태된 것이다.

(2) 생산력과 기술 이전의 제약

원료조달과 생산의 자급체제로 구상되었던 '일본권'에 종속된 조선의 무역은 〈표 4〉에서 보듯이 일본과 만주에 집중되었다. 이 때문에 수송체계가 위협을 받는 1940년대에 무역규모가 크게 축소되거나 정체되었다. 1936~1937년간에 수이입액이 13.6%, 수이출액이 15.5% 증가한 이후 1930년대 말까지증가 추이는 계속되었다. 그러나 수이입액은 1940년까지 늘어나다가 1941년부터 감소하여 1943~1944년간에는 38%나 축소되었다. 수이출액은 이보다빠른 1940년부터 감소했는데 특히 1942~1943년간에는 25%나 축소되었다. 1940년대 이후의 무역 축소는 전적으로 대일무역, 즉 이출액과 이입액이 격감했기 때문이다.35)

'일본권' 무역에 집중되어 값싼 전력과 노동력에 기초한 조선경제는 기계

³⁵⁾ 송규진, 《일제하 조선의 무역정책과 식민지 무역구조》(고려대 박사학위논문, 1998), 136~137쪽.

기구의 대일의존도가 절대적이었다. 철광의 경우에도, 생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선철은 일본으로 이출되어 강철 또는 기계로 제조된 후 조선으로 반입되었다. 이 때문에 급증한 기계류 수이입액은 1931~1936년간(4.9배)에 수이입액에 대한 비중(2.8~6.0%)도 급증했는데 1936~1942년간(3.5배)에는 총수이입액 증가율(1.96배)을 훨씬 능가했고 특히 1940년에는 수이입액 가운데 최다비중(14.8%)을 차지하기에 이르렀다.

즉 일본의 수이출품이 면직물 등 경공업품에서 기계기구류 등 중공업품 중심으로 바뀌어 갈 때 착수된 식민지공업화는 조선경제의 중화학제품 수요를 촉진시켰고 '병참기지화'정책은 이를 더욱 심화시켰다. 기술의 축적 보다원자재 생산과 인력동원에 집중된 공업화는 대일무역적자의 급증을 불러왔다. 1910~1945년간의 무역적자 총액(54억여 엔) 가운데 1937~1945년간의 무역적자액(48억 4,000만여 엔)이 무려 90%나 차지했다.36) 1944년과 1945년에 무역적자액이 격감한 것은 극심한 생산성 저하와 해상통로 두절에 의해 대일무역이 격감했기 때문이다. 식민지공업화가 진행될수록 조선경제는 재생산구조의 기반이 취약해지고 '일본권'으로의 종속성이 더욱 심해졌다. 특히 '병참기지화'정책은 경제논리를 넘어 강제동원 방식을 수반하고 조선의 자원을유실·고갈시키면서 전개되어 해방 후 민족경제 건설 과정에서 평화산업으로 전환하는 데에도 큰 장애요인으로 남게 되었다.

한편 식민지공업화 과정에서 흡수된 노동자들은 미숙련 단순노동에 집중되어 이른바 기술이전의 파급효과도 운위하기 어려웠다. 농촌과 분리되어 공장이나 광산으로 흡수되는 노동력의 범주는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렀고 반농반공의 계절노동자가 많아 조선사회의 취업구조가 질적으로 변화된 것도 아니었다. 일본인과 일본자본이 물러간 해방 후 이들이 다시 농촌으로 돌아가야 했을 때, 그 근거가 그대로 유지된 상태였다는 점은 이를 반영한다. 이런가운데 전 인구 가운데 상업종사자가 7~8%나 차지했고 1930년대 이후 오

^{36) 1937}년 이후의 무역적자액은 아래 표와 같다.

1937년	1939년	1940년	1941년	1942년	1943년	1944년	1945년	합계
17,790만엔	17,632	38,163	58,856	54,604	43,401	5,893	5,207	484,127

^{*} 송규진, 앞의 책, 158~160쪽의 〈표 4-21〉.

36 I. 전시체제와 민족말살정책

히려 증가 추이를 보였다는 것은 통제경제하에서 물자난의 틈새를 타고 유통 부문으로 몰려든 식민지공업화의 기형성 또는 비생산적 경제 운용을 드러내준다.

이러한 추이를 개관해 보면, 1933~1942년간에 공장·광산·토목건축 부문의 노동자는 74만 4,000여 명으로 증가(3.3배)했다.37) 여기에 교통운수업·자유업 노동자를 감안하면 1942년에는 175만여 명에 이르렀을 것으로 추산된다.38) 이 가운데 공장노동자는 〈표 1〉을 보면 1936~1943년간(1.93배)에 18만8,000여 명~36만 3,000여 명으로 늘어났는데 1942년에도 노동자 총수의21%에 불과했다. 총인구 가운데 공업중사자는 1930년대에 2.5~3.2%에 불과하다가 1942년에야 5.0% 정도를 차지했는데 가내공업 종사자를 제외한 공장노동자의 비중은 더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광업종사자의 비중은 1939~1942년간(1.2~2.1%)에 급증한 이후 다소 늘어났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농업종사자(가족 포함) 비중이 1931~1942년(77.9~66.2%)간에 크게 감소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인구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39)

산업구조의 현상적인 '고도화' 경향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보면,〈공장법〉도 적용되지 않는 열악한 노동조건 위에서 빈농 출신의 미숙련 단순노동과 강제동원 방식이나 노동시간을 늘려 절대적 잉여가치 착취에 의존하는 낙후된 구조였다. 이 시기의 산업생산성이 갈수록 떨어진 것은 물자난뿐 아니라경제외적 강제에 의존한 약탈적 생산방식 때문이기도 했다. 1937년 공장 조

^{39) 1930}년대 이후 업종별 종사자(가족 포함) 비율은 아래 표와 같다.

	1931	1936	1939	1940	1941	1942
총인구 (만명)	2,026.3	2,204.8	2,280.1	2,370.9	2,470.4	2,636.1
농업종사자 (%)	77.9	75.0	72.5	70.7	69.2	66.2
광업종사자 (%)			1.2	1.7	2.0	2.1
공업종사자 (%)	2.5	3.2	3.2	3.5	4.4	5.0
상업·교통업종사자 (%)	7.0	7.6	8.4	8.6	8.7	8.8

^{*《}朝鮮經濟年報》Ⅲ(1948), 18~19쪽 ;《朝鮮總督府統計年報》각년판. 비고: 상업·교통업종사자는 교통업이 제외된 수치임.

³⁷⁾ 안병직, 〈植民地 朝鮮의 雇傭構造에 관한 研究〉(《近代朝鮮의 經濟構造》, 비봉출관사, 1989), 395쪽.

³⁸⁾ 朝鮮銀行調査部、《朝鮮經濟年報》Ⅲ, 19쪽.

사에 따르면 노동시간이 12시간 이상인 경우가 41%나 되었는데 실제로는 이보다 심했다고 봐야 한다. 1939년에 제정된〈공장취업시간제한령〉이 하루 12시간 이상 노동을 금지했다는 것은 이러한 살인적 노동이 당시에 일반적 인 추세였음을 반영한다. 통제경제의 분위기 속에서 이러한 법령이 제대로 집행되었는가도 의문스럽고 이마저도 전황이 악화됨에 따라 1943년 7월에 폐지되어 오히려 장시간노동이 합법화되는 모습까지 드러냈다.

장시간 노동은 저임금체제를 수반하기 마련이었다. 조선인 미숙련노동자가 받는 평균 90전 정도의 日給으로는 노동력 재생산은 커녕 가족의 부양 또는 생계조차 꾸려갈 수 없었다. 농한기에 광산이나 토목건축업에 계절적으로 취업하는 경우가 많은 것도 이 때문이었고,40) 이는 저임금체제의 악순환을 불러왔다. 물론 조선인 간에도 미숙련노동자와 숙련노동자의 임금이 2배 정도의 차이를 보였고 조선인 노동자의 평균임금은 일본인의 절반에 불과했다. 이것은 직무상의 차이뿐 아니라 조선인이 승급·승진에 제한을 받았고 일본인에게 별도로 外地근무수당이 지급되었기 때문이다. 임금을 비용으로 지출해야 하는 자본가의 입장을 감안할 때 이러한 임금격차를 민족차별 때문이라고 단순하게 이해할 수는 없다. 오히려 조선경제와 식민지 교육정책에 따라 미숙련 조선인 노동자들이 적체될 수밖에 없던 당시의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조선인 기술인력 부족은 경제외적 강제와 '독려'를 당연시하는 전쟁 분위기, 물자난과 어우러져 산업의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기술자수 | 환요은 1937년(2.7%), 1939년(3.1%), 1940년(3.5%)을 지나는 동안 완만하게 늘어났지만 여전히 낮았고 기술자의 대부분도 일본인이었다. 공업화정책에도 불구하고 조선인 기술자가 드물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기술자 양성과 고급기술 교육을 억제했던 조선총독부의 교육정책이 큰 몫을 차지한다. 실제로 1937년 이전까지 갑종실업학교 이상의 공업계학교는 경성고등공업학교와 경성공업학교 두 개 뿐이었고 민족별 입학쿼터제 때문에 조선인 학생 수는 일본인의 절반에 불과했다. 1930년대 이후 광산 및 토목건축

⁴⁰⁾ 李憲昶, 《韓國經濟通史》(法文社, 1999), 356\.

업, 1937년 이후에는 금속공업과 기계공업 분야에서 기술자 수요가 증가했지만 필요한 기술자를 조선에서 채우지 못한 것도 이 때문이었다. 따라서 기술자의 공급은 1939년 경까지 일본에서 교육받은 일본인으로 충당될 수밖에 없었고 이들의 대부분은 일본인 회사에 고용되었다. 조선인 회사는 필요한 기술자를 공급받기도 어려웠을 뿐 아니라 기술자를 필요로 하는 업종으로 진출하는 데에도 큰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었다. 기술자를 채용한 36개의 조선인 회사도 대부분 1명만 고용한 정도였고 2명 이상 고용한 조선인 공장은 경성방식・삼양사・충남제사 등 7개 회사에 불과했다.41)

중화학공업 및 군수공업의 기술인력 수요는 더욱 커지는데 반해 일본인 기술자들이 정병으로 전쟁에 동원되면서 기술자수는 1940~1944년간(10,406~6,129명)에 41%나 격감했다. 1944년의 공장노동자 수를 1943년보다 10% 이상 늘려 잡아 40만여 명으로 추산해도 [기술자수 종노동자수] 비율은 1.5%에 불과하여 그나마 1940년까지 늘어나던 추이와 달리 격감했다. 이 때문에 총독부의 전통적인 기술자 및 기능공 정책도 일정하게 수정될 수밖에 없었다. 그 공백을 메우는 조치로서 경성광산전문학교와 대동공업전문학교, 그리고 경성제국대학에 이공학부를 설치했다. 또 고등기술학교를 신설 또는 증설하고 갑종 및 을종 실업학교와 직업학교를 만들어 기능공을 배출함과 더불어 직업훈련을 강화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조선인 기술자는 1942~1944년간에 1,215~1,632명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1942년 조사에서도 공업부문에서 조선인은 여전히 기술자의 18%에 불과했고 노무자의 93%를 차지했다.⁴²⁾ 즉 일본인이 관리직과 기술직을 독점하고 조선인이 미숙련 단순노무직에 집중된 이원화된 고용구조의 골간은 해방 때까지 큰 변화 없이 유지된 것이다.

4) 한국자본주의사에서의 '병참기지화' 정책

1930년대 후반기의 '병참기지화' 정책은 일제의 중국대륙 침략을 전후하여

⁴¹⁾ 허수열, 앞의 글, 204~209쪽.

⁴²⁾ 안병직, 앞의 글, 430~431쪽.

조선경제가 물자공급을 위한 '병참기지'로 규정되는 외적 동인을 안고 강압적으로 추진되었다. 이것은 1930년대 전반기의 '조선공업화' 정책이 대공황과만주침략을 계기로 일본 자본주의의 독점이 심화되고 중화학공업화로 이전되는 외적 조건 외에 기존의 식민통치방식과 지주계급 위주의 농정을 전환할 필요가 있던 내적 조건이 어우러져 전개된 것과 큰 차이가 있었다.

이 기간에 조선경제의 겉모습은 큰 변화를 보였다. 가내공업이 상당 부분을 차지한 가운데 전쟁수행과 직접 관련을 가진 광공업 생산이 급증하여 1939년을 경계로 중화학공업 우위로 반전되어 공업구성의 '고도화'경향을 띠었다. 또 농업종사자 비중이 여전히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했고 가내공업 종사자가 많아 노동력 흡수는 제한되었지만 노동자수와 조선인 공장이 급증했다. 이런 와중에서 '병참기지화'정책의 추진주체인 일본자본의 독점적지배력은 더욱 확대되었다. 그러나 조선인 노동력의 미숙련 단순노동 집중, 영세한 기술력과 자본으로 경쟁이 가능한 틈새영역으로 제한된 조선인 자본가, 원활한 원자재 공급의 차단과 경제외적 강제에 의존한 생산독려에서 비롯된 생산성 격감으로 이른바 기술 또는 생산력 이전의 파급효과를 논하기는 어렵다.

즉 '병참기지화' 정책은 조선경제의 재생산구조 형성을 가로막고 '일본권'의 종속적 하부단위로 고착시켜 해방 후 평화산업으로 전환하는데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했다. 화학공업은 약품 및 염료의 대부분을 일본에 의존한 상태였고 광물 이출과 공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성장'한 금속·기계공업도 대부분 수리 또는 조립 수준의 소규모공장으로서 생산수단 생산은 여전히 취약했다. 방직공업은 일본이 군수공업에 치중함에 따라 비롯된 필수품 부족을 보완하면서 '일본권'의 종속적 분업연관 속에서 군수품 수요로 꾸준히 확대되었지만 그나마 원료 조달이 어려워진 1940년대에는 축소되었다. 자급체제를 꾀했던 '일본권'과의 교역에 집중된 무역규모도 해상통로의 두절로 1940년대에 정체 또는 축소되었다. 교역품을 보면 곡물·금이나 선철과 같은 원광물 등을 수출하고 주요 기계기구를 수입하는 강한 종속성을 드러내었고 중화학제품 등의 수입액 급증으로 식민지 전기간 무역적자의 90%가 1937년 이후에 집중되었다.

연합군의 '일본권' 봉쇄가 강화되면서 원활한 원자재 공급이 차단되는 등 전황이 악화되어 가자 일제는 설비 확장보다 기존설비의 활용도를 높여 단 기적 생산극대화 방침으로 대처했다. 그러나 강제동원과 공출 등 경제외적 강제에 의존한 생산독려는 곧 한계가 드러나 생산성과 생산액의 격감 추이 로 반전되었다. 공장생산액은 1943년부터 격감했고 수출액도 1940년대에는 격감 추이를 보였다. 공장수, 회사의 납입자본, 노동자수는 크게 늘어났지만 자본생산성 증가율은 1939년부터, 공장·노동자의 평균생산액 증가율은 각기 1941년과 1942년부터 마이너스로 반전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상업종사자가 증가한 것은 유통부문에서 물자부족의 틈새를 탄 주변부 인력이 몰려드는 식민지공업화의 비생산적 경제 운용과 기형성을 보여준다.

'병참기지화'정책의 큰 특징은 일본의 대외무역 결제자금으로서 금과 군수품 생산을 위한 광산개발에 집중되었다는 점이다. 재정·금융의 집중혜택을 받은 광산은 대부분 일본자본이 장악하게 된데다가 군수관련 요구로 '급성장'한 결과 해방 후 미군정의 폐쇄정책과 어우러져 대부분 가동이 정지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식민지 전기간의 광산액 가운데, 1937년 이후에 조선이 보유한 지하자원을 비생산적으로 소진시키면서 84%가 집중되었다. 수이출품 가운데 원광물의 비중이 높은 것도 이 때문이었는데 태평양전쟁을 계기로 조선 내 소비량이 늘어난 것은 해상통로가 두절된 외적 상황에서 비롯되었다.

'병참기지화'정책이 시행되는 동안 조선사회는 전쟁수행을 위해 폭력적 강제력이 수반된 인력·물자·자금 등 각종 자원의 동원대상으로 규정되었다. 수탈의 정도는 당시의 재정·금융 담당책임자조차 일본이 오류를 범했다고 인정할 정도로 극심했다. 결국 조선사회가 보유 또는 개발한 각종 자원을 고갈시키면서 전개되어 해방 후 경제건설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기도 했다.

조선인 노동력은 노동시간에 의존한 절대적 잉여가치 착취에 편승하는 구조와 총독부의 기술교육정책 부재 속에서 미숙련 단순노무직에 집중되었다. 1940년대 이후 일본인 기술자의 징집으로 기술교육과 직업훈련이 강화되었지만 조선인이 단순노무직에 집중되는 이원적 고용구조의 근간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이 뿐 아니라 1938년 일본〈국가총동원법〉의 적용에서 시작되어 1944년〈국민징용령〉실시에 이르는 과정에서 구조화된 노동력 강제동원체제는 국내외에서 '성노예'를 포함한 200여 만의 조선인을 전쟁터의 노예와 같은 존재로 혹사시켰다.

조세수탈·강제저축·조선은행권 증발 등 식민지화 이전부터 일제의 편의에 맞게 '정비'된 재정금융기구를 통해 동원된 자금은 군수(관련)산업에 집중되었다. 원자재 수입 급증에 따른 국제수지 악화 대책으로서의 수출입 통제, 물자부족에서 비롯된 물가상승에 대한 인위적 억제조치는 암거래 가격만 부채질했다. 또 전쟁물자는 물론 생활필수품까지 포함된 통제와 배급제도, 식량 등 거의 모든 물자를 암시장에서 높은 가격으로라도 구입해서 충당해야하는 공출정책 등으로 조선인의 생활은 도탄에 빠졌다.

조선인 공장과 회사는 늘어났지만 각종 통제로 (반)휴업 상태인 경우가 포함되어 있고 가동률이 크게 떨어진 상태였다. 영업영역도 영세한 기술력과 자본으로도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전쟁경기의 틈새 시장으로 제한되었다. 조선에서는 일본과 달리 군수품과 소비재 필수품의 생산 유지를 위해 중소 공업의 활용도가 상대적으로 높아 중소공장이 활동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었지만 〈기업정비령〉시행을 계기로 이마저도 유지되기 어려웠다. 조선인 자본가는 일제의 정책 운용에 개입할 여지도 능력도 없이 전시동원체제에 절대적으로 종속된 존재였다. 이들은 '일본권'의 군수산업 분업구조에서 자본 축적을 꾀했던 몇몇 예속 자본가군, 투자전환을 꾀한 가운데 퇴보의 길을 걷는 자본가군, 물자난과 자금난이 겹쳐 도태되는 대다수 중소자본가군 등으로 구분된다. 이들은 사회를 이끌어가기보다 민족의식을 내버리고 민족해방운동을 적대시하면서 부의 축적을 모색했지만 결국 성공적이지 못했다. 한국근대 사에서 사회구성원에 대한 사회적・정치적 리더쉽도 지닐 수 없었던 자본가 그룹의 천민성・부패성・대외의존성은 이러한 역사적 조건에서 배태되었다.

〈鄭泰憲〉

2. 국가총동원체제와 민족말살정책

일제의 조선에 대한 식민지 통치는 경제적 수탈과 민족말살로 전 시기를 일관하고 있었다. 표면적인 통치정책은 일제가 직면하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약간씩 변형되기도 하였으나, 지엽적인 문제에 불과할 뿐 기본적인 성격은 그대로 유지되었고 점차 강화되어 나아갔다. 이러한 일제 식민통치의 성격은 1937년 중일전쟁 도발, 1938년 〈국가총동원법〉통과를 계기로 더 한층 강화되는데, 이후 경제 수탈과 민족말살이라는 두 개의 축은 조선 통치를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이자 일제의 전쟁수행과 생존을 위한 유일한 방책으로 그 극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여기서는 〈국가총동원법〉을 확대·적용하면서 조선을 본격적으로 전시동원체제로 전환시켜 나아가는 일제 말기 식민통치의 성격을 주로 국가총동원체제하에서의 정신적 수탈의 문제, 즉 민족말살정책에 초점을 맞추어 그 구체적인 전개과정을 통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1) 민족말살정책의 전개와 그 성격

흔히 제국주의 국가의 식민정책을 논할 때 정책의 유형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 하나는 自主의 유형으로 직접적인 간섭보다는 식민지의 자주적 발전을 표방하는 정책이며, 또 다른 하나는 同化로 식민지 제도와 풍습을 본국과 일체화시키는 정책이다. 일제의 조선통치는 바로 동화의 대표적인 예이다. 조선을 식민지로 영유한 직후부터 일제는 줄곧 조선인의 완전한 일본인화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식민지 정책을 전개시켜 나아갔다. 그리고 이러한 원칙은 조선민족의 일제 식민통치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저항운동이었던 3·1운동 직후인 1919년 8월 19일 일본의 다이쇼(大正)천황이 조선인과 일본인을 '천황의 赤子'로서 전혀 차별하지 않고 一視同仁의 입장에서 통치하겠다는 요지의 조서를 발표하면서 이후 조선 통치의 기본입장으로 간주되어 왔다.1) 그리고 이어 1920년 하라(原敬)수상이 〈朝鮮問題私見〉을 통

해 조선에서의 식민지 통치의 원칙으로 동화주의 즉 '內地延長主義'를 내세 우면서2) 공식화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동화주의에 입각한 식민통치는 우가키 가즈시케(宇垣一成) 총독 시기 '內鮮融和'를 거쳐, 특히 일제의 침략전쟁이 본격화하는 1937년 중일전쟁을 전후하여 '內鮮一體'론이 대두하면서 더욱 강화된 형태로 나타 나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모든 식민정책은 조선의 민족과 문화를 말살하는 데 집중되고 있었다. 즉 조선인들의 민족의식을 완전히 파괴시키는 것만이 조선인들의 일제 식민정책에 대한 비판의식을 마비시켜 아무런 저항없이 일제의 침략전쟁에 인적·물적으로 동원시키는 유일한 방법으로 인식되었 던 것이다.

'내선일체'론은 1936년 8월 제7대 조선총독으로 부임한 미나미 지로(南次 郞)에 의해 조선에서의 통치이념으로 내세워진 것이었다. 내선일체론에서는 조선인들이 완전한 일본인이 되어 진정한 阜國臣民이 되면, 더 나아가 '大東 亞共榮圈'의 추진력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대륙전진병참 기지라는 조선에 대한 군사적 ㆍ경제적 요구를 이념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의 도가 내포되어 있었다. 이는 조선인들로 하여금 일본인과 같은 운명공동체라 는 인식을 갖게 하여 저항 없이 전쟁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에 입각 한 것이었다.

그러면 내선일체란 어떤 내용과 구조를 갖고 있는 이념인지 잠시 살펴보 기로 하겠다. 첫째로 내선일체는 '國體의 本義의 具現'으로 강조되고 있다. 즉 "萬世一系의 천황을 살아 있는 신으로 받들고 萬民輔翼의 臣節을 완수하는 데 힘쓰는 사람 모두가 一視同仁의 皇恩을 입은 황민으로서 추호의 차이가 없다"3)는 것을 일본 국체의 본질적인 의의로 내세우며 조선인들로 하여금 진정한 황국신민이 되고 더 나아가 '대동아공영권'의 추진력이 될 것을 요구 하고 있다.4)

¹⁾ 御手洗辰雄.《南次郎》(1957), 419\.

²⁾ 山本有造、〈日本における植民地統治思想の展開(2)-「六三問題」・「日韓倂合」・ 「文化政治」・「皇民化政策」->(《アジア經濟》32-2, 1991), 37쪽.

³⁾ 朝鮮總督府、〈極秘 内鮮一體/理念及其/具現方策要綱〉(《大野文書》1260, 1941), 1쪽.

44 I. 전시체제와 민족말살정책

두번째로는 내선일체란 '肇國의 정신'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일본의 역사는 先住者와 外來者를 불문하고 모두 무차별의 日本臣民으로 만드는 "부단한 皇國臣民 創成의 역사"5)라고 단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선일체는 필연이고 또 유일한 목표이며, 장래의 목표일 뿐 아니라 과거의 역사가 실증하는 엄연한 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내선일체를 역사 속의 사실로 증명하기 위한 작업이 역사연구의 미명 아래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다.6)

내선일체론의 세번째 이념은 세계 대세의 하나로 주장되고 있다. 독일·이탈리아와 더불어 三國同盟을 결성하고 있는 일본이 담당한 임무는 대동아공영권의 건설에 있는데, 그 근본정신은 어디까지나 동양 古來의 사회사상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이다.7) 즉 "작게는 家, 크게는 國으로 나아가는 바로 국가 본위의 정신이며, 그 가운데서도 일본은 一大家族國家로서 天皇과 臣民과의 관계에서 義는 君臣간의, 情은 父子간의 기본으로 이것을 겸하는 것이 그본질이다"라고 하였다.8) 그리고 대동아공영권의 기본이념은 萬邦이 각기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국제 공존공영의 사상에 있으므로 "안으로는 내선일체

⁴⁾ 朝鮮總督府、〈極秘 内鮮一體/理念及其/具現方策要綱〉(《大野文書》1260, 1941), 2等.

⁵⁾ 위와 같음.

⁶⁾ 津田剛, 〈内鮮一體論の基本理念〉(《今日の朝鮮問題講座》1, 1939), 11~23쪽.

⁷⁾ 이와 관련하여 한가지 주목할만한 주장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일본이 청일전쟁에 승리한 결과 대만을 식민지로 영유하고 또 동시에 청국이 최후의 屬邦인 조선에 대한 宗屬관계를 소멸당한 이후 동아시아 세계제국의 붕괴과 정은 동시에 근대 제국주의에 의한 동아시아 세계제국의 최종적 분할과정과 중복된다는 점이다. 이 때 같은 동아시아 문명권에 속하면서 제국의 外周部에 있었고 자기를 小'中華'제국으로 비교해 왔던 일본이 바로 근대 제국주의의 상속인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근대 제국주의국으로 성장한 일본의 식민지지배의 존재방식을 규정하는 특질로서 기능하는 것이 된다는 주장이다. 즉 구제국의 宗屬관계의 繼承帝國 日本의 식민지 지배정책의 특징, 즉 皇民化 정책의 原由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바로 일제가 내선일체의 이념을 동양 고유의 정신・사회사상에서 찾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大江志乃夫,〈東アジア新旧帝國の交替〉,《近代日本と植民地》1, 1992, 11~14쪽).

⁸⁾ 朝鮮總督府、〈極秘 内鮮一體/理念及其/具現方策要綱〉(《大野文書》1260, 1941) 4等.

의 결실을 맺고, 밖으로 일본을 盟主로 하는 동양인의 동양을 건설하는 것이 세계평화 확립의 大據點을 건설하는"의 것이 된다는 것이다.

네번째로는 내선일체는 필연이므로 이 필연성에 대한 확신을 가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10) 조선인과 일본인의 사이에는 계통상 및 문화상 고도의 沂 似性이 있어서 一體化의 여러 조건을 구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과거와 현 재에 걸쳐 내선일체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많은 실례가 있다는 것이 다. 그러나 일제는 내선일체가 필연적인 사실임을 조선인들로 하여금 믿도록 강요하는 한편에서 내선일체라는 이념. 그 자체로부터 교묘히 빠져나가 그들 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조선인에 대한 차별을 가능케 하는 근거를 이 가우데 에서 논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내선일체라고 하면 곧바로 권리・의무의 완전한 同一化를 想起 要望하는 사 람이 없지 않다. 그렇지만 내선일체의 근본 전제는 皇國臣民化에 있으며 私心 을 버리고 公을 받들며 진정으로 폐하의 民이라는 자각에 철저한 것이 모든 제 도상의 일체화의 先決問題이다. 이 근본 전제를 躬行 실천하지 않고 도리어 제 도상의 평등을 구하여 그것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고 궁극의 이념을 비방하는 것과 같은 것은 정말로 非皇國臣民的인 태도로서 … (朝鮮總督府, 〈極 秘 内鮮一體/理念及其/具現方策要綱〉、《大野文書》1260, 1941, 6等)。

이와 같이 바로 일제가 표방하는 내선일체의 내용은 황국신민화라는 전제 하에서만 가능한 一體化이며, 각종 차별제도도 "특수한 이유에 근거한 것으 로서 황민화의 진도에 따라 점차 改變해야 하는 것이지만 현단계에서는 아 직 존재의 이유를 잃지 않은 것이 많다는 것"11)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일제측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황국신민화가 이루어지지 않고는 얼마든지 유 예될 수 있는 一體化, 즉 차별의 합리화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필연이라고

⁹⁾ 朝鮮總督府、〈極秘 内鮮一體ノ理念及其ノ具現方策要綱〉(《大野文書》1260, 1941), 4~5쪽.

¹⁰⁾ 朝鮮總督府、〈極秘 内鮮一體ノ理念及其ノ具現方策要綱〉(《大野文書》1260, 1941). 5쪽.

¹¹⁾ 朝鮮總督府、〈極秘 內鮮一體ノ理念及其ノ實現方策要綱〉(《大野文書》1268). 구체적인 작성연도는 미상이나 〈內鮮一體/理念及其/具現方策要綱〉의 내용 을 보다 구체화시킨 것으로 보아 비슷한 시기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주장하고 있는 내선일체란 사실상 언제까지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일제의 일방적인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성질의 것이었다. 더구나 1930년대 중반 이후 조선 내의 민족해방운동이 그 명맥을 유지하기조차 어려워진 상황 속에서 '차별로부터의 탈출'12) 논리로 내선일체론을 추종하던 많은 친일적인 조선인들이 등장하게 되었고, 이들은 바로 일제에 의해 교묘하게 포장된 차별을 내선일체라는 이름 아래 다시 조선인들에게 유포시키고 있었다.

내선일체론의 이념으로서 끝으로 들고 있는 것이 內鮮文化의 綜合이다. 그러나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말 그대로의 종합이 아니라 일본 문화의 일방적인 移植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半島文化政策의 근본은 일본 문화의 半島에의 移植 培養에 있으며, 일본국민 도덕의 반도에의 浸潤 透徹을 꾀하여 忠君愛國의 숭고한 義理・人情의 機微에 도달하기까지 조선 민중으로 하여금 올바르게 理解 咀嚼시켜 그 성격을 도야시키고 그 情操를 순화함과 동시에 과학・언어・문예・취미・오락 기타 생활양식의 전반에 걸쳐 일본 문화의 秀美한 것들을 半島에 育生 繁茂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 (朝鮮總督府,〈極秘 內鮮一體/理念及其/具現方策要綱〉,《大野文書》1260, 1941, 7쪽).

즉 일본의 문화를 그대로 조선에 옮겨 놓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종합의 궁극적인 의미이며 단지 조선의 문화는 대륙적인 정조를 지니고 있으므로 섬세 미묘한 섬나라 일본의 문화를 보완하는 데에 필요하다는 인식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13)

이상과 같은 내용과 구조를 갖고 있는 내선일체론은 일제의 침략전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필요성에 의해 여러 가지 모습으로 윤색되면서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다. 즉 조선인과 일본인, 더 나아가 조선과 일본이 하나라는 논리는 조선인들의 일제 지배정책에 대한 반발과 반항을 희석시키기위한 목적에 이용되고 있었다. 뿐만아니라 중일전쟁 이후 일제 말기에 전개되고 있는 모든 일제의 정책의 근본이념으로서 조선인들을 물심양면에서 철

¹²⁾ 宮田節子、〈「內鮮一體」の構造〉(《朝鮮民衆と「皇民化」政策》, 1985), 148~192等.

¹³⁾ 朝鮮總督府、〈極秘 內鮮一體/理念及其/具現方策要綱〉(《大野文書》1260, 1941), 7等。

저한 일본인으로 만드는데 이용되고 있었으며, "내선일체는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신념"¹⁴⁾이라고까지 절규되고 있었다.

2) 〈국가총동원법〉의 확대와 관제운동의 실시

〈국가총동원법〉이 일본에서 공포된 것은 1938년 4월 1일이었고, 이는 곧이어 5월 10일 조선에 확대되었다. 〈국가총동원법〉은 전시 국가의 총력을 발휘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그에 따라 모든 물자·산업·인원·단체·근로조건·생산·유통구조·출판·문화·교육에 이르기까지 통제·징발·징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15) 이에 따라 조선은 국가총동원체제에 편입됨과 동시에 본격적으로 전시수탈의 대상이 되었지만, 법적인 장치만으로조선인들을 제국주의 침략전쟁에 동원시킬 수는 없는 것이었다. 식민통치를시작한 이래 조선인들의 저항의식에 대한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 없었던 일제로서는 조선인들의 사상을 어떠한 형태로든 통제하면서 일제에 대한 저항, 전쟁수행에 대한 불만을 무마시키기 위해서는 조선인들을 '황국신민'으로 거듭나게 해야 하는 필요성이 절감되고 있었다.

우선 일제는 중일전쟁 발발 1년 후인 1938년 7월 7일부터 일본에 호응하여 國民精神總動員運動을 시작하였다. 이 운동은 명칭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조선인들의 정신력을 종합하여 일본통치에 순응하도록 하는 목적과 이러한 정신상태가 초긴장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직화하고 훈련을 거듭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실제 국민정신총동원운동의 목적은 반드시 정신적인 면에서의 총동원에 국한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다. 물론 정신적인 면에 많은 중점을 두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 외에 여러 방면에 걸쳐 운동을 추진시켜 나아가고자 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는 것이 1938년 9월 22일에 결정된〈國民精神總動員 朝鮮聯盟 綱領〉이다.16) 강령

¹⁴⁾ 朝鮮總督府、〈極秘 内鮮一體ノ理念及其ノ具現方策要綱〉(《大野文書》1260, 1941), 10等.

¹⁵⁾ 조동걸,〈日帝末期의 戰時收奪〉(《千寬宇先生還曆紀念 韓國史學論叢》, 정음문 화사, 1985), 963쪽.

¹⁶⁾ 國民總力朝鮮聯盟 編,《朝鮮に於ける國民總力運動史》(1945), 90~96\.

의 내용을 통해 운동의 목적과 이념을 몇 가지로 나누어 보면, 첫번째가 조선인의 황국신민화를 통한 내선일체화이며, 두번째가 일제의 戰時國策事業에의 협력, 세번째가 조직과 훈련을 통한 전시체제의 확립 등으로 요약할 수있다. 여기서 보이는 바와 같이 국민정신총동원운동은 〈국가총동원법〉의 원활한 적용을 위하여 조선인들을 조직하고 통제하는 기본작업이었다.

조직면에 있어서도 조선의 국민정신총동원운동은 일본과 달리 처음부터 행정조직과 일원화된 조직체제를 완비하였을 뿐 아니라, 일본보다 앞서 愛國 班이라는 말단조직이 만들어졌는데 이는 전 조선인을 빠짐없이 감시하고 전 쟁동원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운동의 식민지적 특질을 잘 보여주고 있다. 더구나 지역 조직과 별도로 직장을 단위로 하는 각종 연맹을 통한 조직화를 병했합으로써 조선인들을 이중으로 조직화해 나아가고 있었다.

특히 국민정신총동원운동 실시에 앞서, 그리고 일본보다도 앞서서 1937 년 9월부터 조선에서 실시된 '愛國日'행사와¹⁷⁾ 10월에 제정된〈皇國臣民誓 詞〉¹⁸⁾는 이러한 운동의 목적, 특히 내선일체화 작업에 필요한 정신적 정지

¹⁷⁾ 애국일 행사의 대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神社・神祠의 참배(없을 경우에는 생략한다)

② 皇居遙拜

③ 國旗揭揚(간단한 설비라도 상관없다)

④ 國歌齊唱(제창이 곤란한 경우에는 생략한다)

⑤ 講話(매회 할 필요는 없다)

⑥ 皇國臣民의 誓詞 齊誦

⑦ 天皇陛下 萬歲三唱

⁽國民精神總動員忠淸南道聯盟,〈愛國日ノ一般實施ニ關スル件〉,《國民精神總動員聯盟要覽》, 1939, 102零).

¹⁸⁾ 아동용〈皇國臣民의 誓詞〉其 1: 초등정도의 학교 및 각종 幼少年단체용》

① 私共ハ大日本帝國ノ臣民デアリマス(우리들은 대일본제국의 신민입니다)

② 私共ハ心ヲ合セテ天皇陛下ニ忠義ヲ盡シマス(우리들은 마음을 합하여 천황 폐하에게 忠義를 다합니다).

③ 私共ハ忍苦鍛錬シテ立派ナ强イ國民トナリマス(우리들은 인고단련하여 훌륭하고 강한 국민이 되겠습니다).

일반용〈皇國臣民의 誓詞〉其 2 : 중등학교 및 동 정도 이상의 학교 및 청년 단체와 동등 이상의 유사단체용)

① 我等ハ皇國臣民ナリ忠誠以テ君國ニ報ゼン(우리는 황국신민이며 충성으로 君國에 보당한다).

② 我等皇國臣民ハ互ニ信愛協力シ以テ團結ヲ固クセン(우리들 황국신민은 서로

작업에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이상과 같은 정신운동과 병행하여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전시협력운동도 강요하였는데 국산품애용, 소비절약, 국채응모, 비상시국민생활기준양식 실행, 군수품 공출, 근로증가 등의 내용이 여기에 해당된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예로 1938년 8월 결정되어 전 조선인의 생활 구석구석을 통제한〈非常時生活基準樣式〉을 보면 바로 일제가 강요하고 있었던 戰時下 생활상을 엿보는 것이 가능하다. 그 내용은 의식주의 간단화, 물자의 애용과 소비절약, 허례폐지, 연회제한, 절주절연의 습관 양성, 시간존중, 근로보국정신의 함양, 저축의 장려 등이다. 즉 이러한 기준을 제시하고 조선인들의 생활을 엄격한 규율 속에 통제하려고 하는 의도인 것이다.

일제는 이 운동을 上意下達·下意上達을 위한 관민일체의 운동이라고 선전하고 있었지만,¹⁹⁾ 그 실상은 위로부터의 일방적인 강제의 성격을 벗어나지 못했고, 조선인들의 방관적인 태도로 말미암아 운동은 극히 형식적인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한편 국민정신총동원운동에 대한 조선인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운동의 한계성을 타개하고 마침 일본 내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신체제운동의 움직임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 1940년 10월 16일 國民總力運動으로 전환하였다. 일본의 신체제운동이 大正翼贊會라는 명칭으로 진행된 것에 비해 조선에서는 운동의 정치성을 처음부터 배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민총력운동으로 명명함으로써 조선인들의 정치적 관심이 운동의 조직들을 통해 분출되는 것을 극히 경계하고 있었다. 이는 당시 조선인들의 병역의무와 관련하여 나타나고 있었던 참정권 요구 등 정치적 움직임을 사전에 봉쇄하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었다.

국민총력운동은 국민정신총동원운동의 조직과 운동내용을 기본적으로는

信愛 協力하여 단결을 공고히 한다).

③ 我等皇國臣民ハ忍苦鍛鍊力ヲ養ヒ以テ皇道ヲ宣揚セン(우리들 황국신민은 忍 苦鍛鍊力을 걸러서 皇道를 성양한다).

⁽조선총독부,〈生活ノ刷新ニ關スル件〉,《朝鮮總督府時局對策調査會諮問案參考書》, 1938, 19~20零).

¹⁹⁾ 朝鮮總督府 官房文書課、《諭告・訓示・演述總攬》(1941), 184쪽.

그대로 계승하는 형식을 취하였지만 구체적인 면에서는 몇 가지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었다. 즉 국민총력운동에서는 1930년대를 일관하여 진행되어 오던 農村振興運動을 폐지·통합함으로써 일제의 모든 식민지 정책을 총괄하는 운동으로 등장하게 되었으며, 총독이 조선연맹 총재에 직접 취임함으로써 일제의 통치구조와 운동의 조직을 일체화시켜 나아갔다. 또한 국민정신총동원운동의 본질적인 목적은 계승하면서도 '高度國防國家體制의 確立'20) 즉 국가총력전을 가능하게 하는 체제의 완성을 보다 강조하고 있었다. 때문에 국민정신총동원운동에 비하여 생산력 확충을 비롯한 공출·증산·저축 등 조선인들에 대한 물질적 수탈을 더욱 강화하였다. 이후 국민총력운동은 1945년초 '國民義勇隊 中央本部'로 개편되어 조선을 명실상부한 전쟁동원체제로 밀어 넣고 있었다.

3) 교육정책

일제의 민족말살정책은 가장 먼저 조선인, 특히 자라나는 조선의 청소년들에 대한 일본인화 교육으로부터 출발하고 있었다. 일제가 조선을 식민지화하고 1911년 8월 제1차〈조선교육령〉을 공포한 이후 제4차〈조선교육령〉에 이르기까지 일제의 식민지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교육령의 내용 또한 바뀌어 가고 있었다. 그렇지만 그 기본방향은 교육을 통한 조선민족의 말살에 있었고, 제1차〈조선교육령〉의 '忠良한 제국신민의 육성'이라는 기본목표가이를 단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다. 이후 1922년 2월 공포한 제2차〈조선교육령〉에서는 앞서 언급한대로 일제의 지배정책이 '내지연장주의'를 표방함에따라 식민지 교육에 있어서도 이러한 노선을 충실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내용을 변화시키고 있었다. 즉 학교 종류 및 수업 연한에 있어 일본과 동일한학제를 택하고, 內鮮共學을 원칙으로 하였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일본어를 常用하는 사람과 상용하지 않는 사람을 구분하여 학교 교육을 행함으로써 일제가 주장하는 동화주의가 철저한 차별주의에 입각한 것임을 보여주

²⁰⁾ 朝鮮總督府 文書課,《諭告·訓示·演述總攬》2(1943), 16\.

고 있었다.

일제의 교육정책의 성격을 변화시킨 또 한번의 계기를 만든 것이 바로 앞서 언급한 내선일체론의 등장이었고, 조선 민족에 대한 말살책은 더욱 가 속화되었다. 미나미 총독의 핵심 브레인으로서 조선인의 황국신민화를 실질 적으로 주도하였던 시오하라(鹽原時三郞) 학무국장이 내세운 교육의 〈3대 강 령〉(國體明徵·內鮮一體·忍苦鍛鍊)에²¹⁾ 입각한 1938년의 제3차〈조선교육령〉 은 시오하라가 만들어 낸 말 그대로22) '皇國臣民'의 완성을 위한 교육의 기 본 방침이었다. 즉 이전 시기의 '충량한 제국신민'이 '황국신민'이라는 용어로 표현됨으로써 새로운 유형의 식민지 교육이념으로 자리잡게 된 것이다.

그리고 제3차 〈조선교육령〉이 갖는 중요한 의미는 그 내용 자체가 육군특 별지원병제도의 창설을 앞 둔 군부의 교육시설 개선안을 그대로 수용한 것 으로. 〈교육령〉의 목적 가운데 하나가 조선인들을 병력자원화하는 기초작업 에 있었다는 것이다.23) 제3차 (조선교육령)에서는 보통학교는 소학교로 고 등보통학교는 중학교로, 여자고등보통학교는 고등여학교로 학교 명칭을 고쳐 조선인을 위한 학교와 일본인을 위한 학교의 명칭을 동일하게 하였다. 그리 고 교과목 • 교과과정 • 교수과목 등은 조선어 이외의 것은 일본과 동일하게 하였는데, 조선어 교과를 종래 필수과목으로부터 선택과목으로 전락시키는 동시에 수업시수를 감축시켰다. 이에 따라 공립학교에서는 대부분 조선어를 가르치지 않게 되었다. 즉 제3차〈조선교육령〉의 내용은 표면적으로는 조선 의 교육제도를 일본과 동일하게 만드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 이면에서는 조 선의 교육을 일제가 철저하게 장악하고 더 나아가 '황국신민'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조선인들의 의식·언어·역사 등을 완전히 말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일제는 1941년 3월〈교육령〉의 일부를 개정하여〈국민학교규정〉을 공포하 고 종래 소학교라는 명칭을 일본과 마찬가지로 국민학교로 바꾸었다. 국민학 교라는 명칭이 의미하는 것은 "동아 및 세계에서의 일본의 역사적 사명을

²¹⁾ 정재철, 《日帝의 對韓國 植民地 敎育政策史》(1985), 401쪽.

²²⁾ 宮田節子、〈皇民化政策の構造〉(《朝鮮史研究會論文集》29, 1991), 42~43쪽.

^{23) 〈}國民教育ニ關スル方策(1937년 6월)〉(《舊陸海軍文書(別冊 三)》No. 678).

감안하여 국민의 기초적 鍊成을 완수할 수 있는 교육체제를 확립"한다는 것으로, 바로 일제의 침략전쟁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국민을 양성해 내는 교육이그 목표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국민학교의 교과과정에서 종래선택과목으로나마 존속하고 있었던 조선어 과목을 완전히 폐지시켜 조선어의 완전한 말살이라는 목적을 함께 관철하려 하였다. 이어 1942년에는 1946년부터 조선에서 의무교육제도를 시행할 것을 발표하였는데 이것은 1944년부터 조선에서 실시하기로 결정된 징병제의 기반조성을 위한 것이었다. 즉태평양전쟁을 도발한 일제는 이제 조선에서의 교육의 목표를 조선인의 민족의식을 없애고 이른바 '황국신민'으로 만드는데 그치지 않고, 침략전쟁에 조선의 학생들을 총동원하여 군사체제화하는 것에 두게 된 것이다.

1943년 3월 공포된 제4차〈조선교육령〉의 내용이 이러한 일제의 의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 교육의 전시체제화를 목적으로 하는 일련의 정책들이 함께 기능함으로써 정상적인 학교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키기에 이르렀다.이 시기의 교육은 조선에서 징병제가 실시되는 상황을 반영하여 학교가 군대의 보조기관으로 전략하였고, 이에 따라 전체주의적·군사주의적·국가주의적 교육이 강제되고 있었다. 뿐만아니라 전쟁수행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던 극심한 노동력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를 노동력 공급원으로 동원함으로써 학생들의 생활전체가 전쟁협력에 강제되고 있는 형편이었다. 제4차〈조선교육령〉에서는 이제까지 형식상 선택과목으로나마 존속하고 있었던 조선어 교과를 앞서의 초등학교에 이어 중등학교 및 사범학교의 교과과정에서 완전히 배제해 버렸다. 이에 반해 일본어・일본도덕・일본지리 등의 교과는 國民科라고 하는 종합적인 교과로 통일시켜 종전보다 더욱 중시하였다.

이어 전쟁 막바지인 1945년 5월에는 〈전시교육령〉을 공포하여 모든 학생들의 決戰態勢 확립을 외치면서 교직원과 학생들로 하여금 '學徒隊'를 결성하도록 하여 학생들을 곧바로 군대조직화함으로써 이제 교육은 그 의미를 완전히 상실하고 말았다. 즉 민족말살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있었던 일제의 조선에 대한 교육정책은 일제 말기의 징병제·학도대 등으로 이어지면서조선 청소년들을 전쟁에 몰아넣는 것으로 귀결되고 있었다.

4) 언론통제정책

일제가 내선일체론에 입각하여 조선을 통치하는데 있어 구체적인 여러 정책들을 입안하기 위한 기반조성으로 가장 중요시하였던 것이 바로 조선인의사상과 정보를 완전히 통제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특히 1937년 중일전쟁이발발한 이후 전쟁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전쟁을 둘러싼 많은 유언비어와 아울러 그 속에 내재해 있던 조선인들의 저항의식을²⁴⁾ 뿌리뽑기 위해서는 조선인들이 접할 수 있는 정보의 원천을 일제가 완전히 장악해야만 했던 것이다. 이러한 판단에 입각하여 등장하고 있는 것이 〈言論機關 統制計劃〉이었다. 특히 이 계획에서 보이는 일제의 언론정책은 1920년대 일제가 표방하였던 '文化政治'를 일제 스스로가 완전히 부정해 가는 과정이었다.

《언론기관 통제계획》은 조선인 발행의 신문뿐만 아니라 일본인 발행의 신문도 통제의 대상으로 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일제가 내세웠던 통제의 사유는 조선인 발행의 신문과 일본인 발행의 신문이 각각 그 성격을 달리 하고 있었다. 일본인이 발행하는 신문에 대한 통제사유의 경우 기본적으로 기사의 내용에 대한 불만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단지 일제가 내세운 통제의 이유로서 중요한 것은 군소신문이 난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일본의 유력한 신문들이 조선에 진출함으로써 과열경쟁에 빠져 운영이 곤란해지고 있다는 점과, 전시경제하에서 자재의 공급이 통제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신문사의 경영합리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와 물자절약을 의도한 조치였으며, 이를 통해 강력한 신문사를 육성함으로써 일제 당국의 施政方針에 적극 호응하는 일본인에 의한 어용언론의 입지를 강화시키고자하였다.

한편 조선인 발행 신문의 경우에는 그 목적이 강제 폐간을 통한 말살에 있었다. 즉 표면적으로는 동일한 계획에 의해 언론기관의 정리작업이 실시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내용에 있어서는 그 목적하는 바가 전혀 다를 뿐 아

²⁴⁾ 宮田節子、〈朝鮮民衆の日中戰爭觀-「流言蜚語」を通して->(앞의 책, 1985), 11~49等.

니라, 조선인에 의해 발행되던 조선어 신문의 존재를 완전히 뿌리뽑고자 의 도된 정책이었다.

그런데 주목할 만한 것은 언론기관 통제계획에 조선어 신문에 대한 통제안이 별도로 입안되어 있었다는 사실인데,²⁵⁾ 이는 조선어 신문에 대한 통제가 다른 일본어 신문에 대한 통제와는 다른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그리고 《매일신보》를 제외한 다른 조선어 신문들은 재고의 여지없이 폐간을 결정하는 가운데에서도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에 대해서는 그 처리 방안에 있어 여러 각도의 가능성을 상정해 보고 또 그에 따른여론의 향배에 많은 관심을 보임으로써 이 언론기관 통제계획이 사실상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처리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그러면 먼저 조선어 신문 통제안이 대두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일제가 조선어 신문에 대한 통제가 필요한 이유로서 가장 먼저 들고 있는 것은 조선어 신문, 특히 《동아일보》·《조선일보》의 존재가 내선일체, 즉조선인들을 황국신민화하는데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26) 그러나 언론기관 통제계획이 입안되고 실행에 옮겨지던 당시의 소위 '민족지'의 논조는 1920년대에서 1930년대 초반에 이르는 시기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 주고 있었으며, 극단적으로 말해 총독부 기관지와의 구분이 불분명할 정도였다.27)

즉 1930년대 말에 들어서면서 조선어 신문에 있어서도 상업화가 진행되고 또 점차 신문사가 대기업화하면서 경제적 타격을 받는 것을 두려워했기때문에 총독부의 정책에 대한 비판적 기사는 감소하고 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경향은 1936년의 '일장기 말소사건' 이후 더욱 두드러졌다.²⁸⁾ 그리고 이

^{25) 〈}極秘. 諺文新聞 統制案〉(《大野文書》1248, 1939).

이 통제안은 조선어 신문, 특히《동아일보》와《조선일보》의 폐간에 관한 것인데 御手洗辰雄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가 있다(森山戊德,〈現地新聞と總督政治-《京城日報》について-〉,《近代日本と植民地》7, 東京:岩波書店, 1993, 30等).

^{26) 〈}極秘. 諺文新聞 統制案〉, 2~3쪽.

²⁷⁾ 정진석, 《조선언론사》(1990), 538쪽.

²⁸⁾ 森山戊德, 앞의 글, 24~25쪽. 《동아일보》의 경우'일장기 말소사건'으로 인한 장기 정간에서 해제된 후 그

와 같이 조선어 신문들의 저항이 눈에 띄게 감소한 반면 일제의 시책에 대 해 지지하는 태도조차 보이는 사실에 대해 일제로서도 어느 정도 만족을 보이고 있었는데, 이 시기에는 단지 적극적 협력의 태도가 보이지 않고 기 사의 논조에 있어 소극적이나마 민족의식을 암시하는 경우가 있다는 등의 문제가 지적되는 정도였다. 따라서 일제가 말하는 장애물이란 이들 신문에 게재되고 있었던 기사내용이 아니라 조선어 신문 가운데에서도 《동아일 보》 · 《조선일보》가 지니고 있던 '민족지'로서의 상징성이라고 보는 것이 타 당할 것이다. 즉 일제의 탄압 때문에 표면상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고 있는 민족의식이 언제 이들 '민족지'의 존재를 빌려 폭발함 지 모른다는 우려가 작용하고 있다.

또 다른 통제의 이유로 내세운 것은 일본어 보급의 문제였다. 당시 일제는 내선일체 실현을 위한 방법의 하나로 교육령을 개정하여 1938년 제3차〈조선 교육령〉을 시행하였다. 그 가운데에서 학교 내에서의 조선어 사용을 금하였 을 뿐 아니라, 교수용어를 일본어로 한정시키고 조선어 수업시간을 감소시켜 종래 필수과목이던 것을 선택과목으로 하는 등 조선어를 말살하는 동시에 일본어를 보다 철저하게 보급시키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정책에 따라 신문에 대해서도 신문이 지니고 있는 사회교육의 역할을 중요시하여 가능한 한 조선어 신문을 통제하려 하였으며.29) 단지 일본어가 완전히 보급 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므로 그 때까지 조선어 신문을 존속시키기는 하되 그 형태는 《매일신보》하나만을 남기고 나머지 모든 조선어 신문을 없 앤다는 것이었다

일제가 조선어 신문을 통제하려는 이유로서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바로 《매 일신보》와 관련된 부분이었다. 앞에서도 잠시 언급한 바와 같이 총독부의 기 관지로 어용적 성격을 가지고 있던 《매일신보》는 그 발행 부수나 조선인 독 자의 확보에 있어 《동아일보》·《조선일보》양 신문을 따라가기에는 엄청난

기사 내용을 時局에 잘 맞추고 있다고 일제측도 인정하고 있다(〈諺文新聞統 制ノ必要性〉・〈東亞日報廢刊ニ對スル關屋氏ノ質疑要領〉、《大野文書》1248). '일장기 말소사건'에 따른 장기 정간으로 당시 3대 민족지 가운데 하나였던 《朝 鮮中央日報》는 약한 재정상태 때문에 그대로 문을 닫고 말았다.

^{29) 〈}極秘 諺文新聞 統制案〉, 3~4쪽.

격차를 보이고 있었는데 이런 상황에 대한 일제의 불만은 상당히 강했다. 즉조선인들이 《동아일보》·《조선일보》양 신문을 조선민족 자신들의 신문으로받아들이고 또 환영하고 있는 분위기에 대한 위구심이었다.30)

이상과 같은 통제계획에 기초하여 일제는 《동아일보》·《조선일보》의 폐간을 실행에 옮겨갔다. 1940년 1월 일제는 《동아일보》·《조선일보》양 신문사로 하여금 《매일신보》와 통합하여 자진 폐간하도록 중용하였다. 이에 대해양 신문사는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하였고, 아울러 일본에 건너가 폐간방침의부당함을 지적하였다. 그러자 결국 《동아일보》에 대해 소위 '경리부정'사건을조작하고 더 나아가 독립운동 자금을 전달하려 했다고 하여 신문사 간부 등을 대량으로 구속하는 사태까지 벌어지자 양 신문사는 끝내 1940년 8월 10일자 신문을 끝으로 폐간하고 말았다.

일제 말기에 이르러 《동아일보》·《조선신보》의 성격이 아무리 변질되어 가고 있었다고 해도 양 신문의 폐간이 조선인들에게 미친 심리적 영향은 대단한 것이었다. 일제가 언론기관 통제계획이 조선어 신문뿐만 아니라 일본어 신문도 통제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누누이 강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제 스스로가 이 계획을 보고 있는 조선인들의 여론의 행방에 비상한 관심을 보였다는 사실 자체가 이 계획이 노리고 있었던 '민족지' 탄압의 성격을 가장 분명하게 나타내 주고 있다.

그러나 이 언론기관 통제계획이 지니는 보다 중요한 의미는 이것이 단순한 하나의 언론통제정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당시 일제의 조선에 대한 모든 정책들은 일제의 전쟁수행을 위해 조선과 조선인들을 직접 동원시키려는 의도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이 계획은 그 일련의 기반조성과정속에 위치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중요한 문제인 사상과 정보의 통제를 의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사상과 정보의 통제라는 문제는 당시 일제가 조선 통치의 기본이념으로 내세우며 조선인들을 호도하려 하였던 내선일체를 통한 황민화정책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라고 해도과언이 아닌 것이다.

^{30)〈}極秘 諺文新聞 統制案〉, 2\.

5) 조선어 말살정책

조선을 식민지로 만든 이후 일본어의 보급문제는 주도면밀하게 추진되고 있었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육과정에서 조선어에 대한 교육이 완전히 배제되기 시작한 것은 1938년의 제3차〈조선교육령〉이후였다. 내선일체라는 통치이념이 전면에 등장하고 또 조선인들이 병력자원으로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일본어 보급은 조선어의 완전한 말살을 의미하기 시작하였다. 당시조선인들에 대한 일본어 보급률이 1940년 말 현재 15.5%에 머무는 극히 저조한 상황이었고,31) 특히 농촌의 경우는 10%를 겨우 상회하고 있었다.32) 이때문에 일본어의 보급문제는 내선일체 완성을 위한 기본요건인 동시에 징병제를 앞두고 있었던 일제로서는 더 이상 미루어 둘 수 없는 것이었다.

조선어 말살을 위한 일제의 정책은 여러 방향에서 진행되었다. 가장 먼저들 수 있는 것이 학교로부터 조선어 교육을 완전히 배제시키는 작업이었다. 다음으로는 조선어 신문을 폐간시켜 조선어를 사회로부터 추방하고 있다. 특히 같은 조선어 신문이라 하더라도 총독부의 기관지였던 《매일신보》는 일제의 선전과 여론호도를 위해 남겨 두면서도 민족적인 색채를 띠고 있었던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만을 1940년 8월 강제 폐간시킴으로써 언론에 대한 이중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와 아울러 징병제의 실시가 결정된 1942년에는 당시 일제가 전 행정조직과 일체화시켜 진행하고 있었던 '국민총력운동'의 일환으로 '國語全解・常用運動'을 대대적으로 실시함으로써33) 전 조선인에 대해 일본어 상용을 강제하였다.34)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인에 대한 일본어 보급률은 1943년에 이르러서 겨우 22%에 미치고 있었고,³⁵⁾ 더구나 정병 적령자에 대한 일본어 보급률 또한

³¹⁾ 조선총독부, 〈第79回 帝國議會說明資料〉(《大野文書》1236).

³²⁾ 朝鮮總督府,《朝鮮總督府調査月報》, 11-6(1940), 53~54쪽.

³³⁾ 大藏省 管理局、《日本人の海外活動にする歷史的調查(朝鮮 3)》4(1946)、47쪽、

³⁴⁾ 이명화, 〈朝鮮總督府의 言語同化政策〉(《조선독립운동사》9, 1995), 13~17쪽.

³⁵⁾ 近藤釰一 編、〈第85回帝國議會說明資料〉(《太平洋戰下終末期朝鮮の治政》,1961),200 年.

1944년 현재 30%의 수준을 보이고 있었다.36) 이는 언어의 소멸이 곧 민족의 소멸이라고 인식하여 강하게 반발하고 있었던 조선인들의 저항의식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며, 1930년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던 '朝鮮學'의 연구성과와 그 가운데에서도 조선어에 대한 깊은 관심에서 나타나고 있는 언어를 중심으로 한 민족주의 사상의 영향이 이 시기 조선에서의 일본어 보급을 어렵게 한 가장 큰 이유였다. 이처럼 조선어에 대한 말살정책이 일제의의도대로 진행되지 못하자 조선인들의 민족주의 사상에 대한 탄압으로 나타난 대표적인 예가 1942년 '咸興學生事件'의 조작으로 비롯된 '朝鮮語學會事件'이었다.

일본어 사용을 강제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각급 학교의 학생들이 교내에서 는 일본어를 사용하면서도 학교 밖으로 나가면 일본어를 전혀 쓰지 않는 현 실을 개선하고 이들 학생들을 통하여 일본어 상용을 각 가정으로 확대시키 기 위하여. 학생들에 대한 조선어 사용 단속이 한층 강화되고 있었다.37) 그 리고 관공서, 각종 단체, 상점 등의 직원들에게 집무시간 중 반드시 일본어 를 쓰도록 하고 있는데, 만일 이러한 방침을 어기는 경우에는 많은 액수의 과태료를 징수하는 등의 제재방법을 사용하여 일본어를 반드시 사용하도록 요구하였다. 또 직원들에 대해 일본어 사용을 강요하는데 그치지 않고 조선 어를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절대 응대나 거래도 하지 말 것을 정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전화로 조선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화를 중간에 끊어 버리도 록 요구하기까지 하였다. 따라서 일본어를 사용하지 않고는 일상생활 자체가 불가능한 분위기를 만들어 나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방법을 통해 '싸 움이나 잠꼬대까지도 國語로'하는38) 상태를 만들어 내고자 하였던 것이다. 아울러 일본어 상용을 도모하는 동시에 조선어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 들이 취해지고 있었는데 조선어를 사용한 출판물・영화・연극・방송・레코 드 등을 가능한 한 억제하고, 그 대신 쉬운 일본어를 사용하여 대체하도록 하였다.

³⁶⁾ 조선총독부,〈極秘 朝鮮人徵集ニ關スル具體的研究〉(《大野文書》1279-5, 1942).

³⁷⁾ 咸鏡北道 清津府、〈昭和 17년 5월 府尹郡守會議 諮問答申書〉.

³⁸⁾ 八木信雄、〈徴兵制度施行の意義〉(《朝鮮》326, 1942), 47쪽.

6) 창씨개명

創氏改名은 1939년 11월에 공포되어 1940년 2월 11일부터 실시된 制令 제19호 〈조선민사령 중 개정의 건〉과 제령 20호 〈조선인의 氏名에 관한 건〉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전자에서는 조선인에게 종래의 '姓' 대신에 일본의 가족법상의 제도인 '氏'를 새로이 만든다고 하는 '창씨'의 내용을, 후자에서는 새로이 만들어진 '씨'와 종래의 '名'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변경을 허가한다고 하는 '改氏・改名'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39)

그러면 조선의 '성'과 일본의 '씨'의 차이점이 어디에 있는지 잠시 살펴보 겠다. 우선 일본의 '씨'는 한 사람이 속하는 '家(동일 호적의 가족집단)'의 명칭 이다. 즉 '씨'는 '가'라고 하는 친족집단의 칭호이기 때문에 남계혈통은 물론 모게혈통과도 관련이 없다. 따라서 혼인이나 養子 등의 이유로 호적을 이동 하여 소속하는 '가'가 바뀌면 그에 따라 당연히 '씨'도 바뀌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일본의 '씨'는 개인을 '가'가 포괄함으로써 천황이 일본 모든 가족의 宗家가 되는40) 일본 특유의 천황을 정점으로 하는 가족주의로 확대되고 있 고, 또 더 나아가 전체주의적인 성격으로 발전되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조 선에는 일본과는 달리 조상에 대한 제사를 중심으로 하는 남계 혈족집단인 '宗'이 있다. 그리고 이 남계 혈족집단을 식별하는 표시가 두 가지 있는데. 그 하나가 남계 혈연계통을 표시하는 '성'이고 다른 하나가 시조의 발상지를 나타내는 '本'이다. 이 두 가지 표시 즉 '본'과 '성'을 넓은 의미의 '성'이라고 하며, 언급한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남계혈통의 표시로서 개인에게 붙는 것 이기 때문에 혼인이나 기타 호적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일생 동안 변하지 않 는 것이다. 이처럼 개인을 중심으로 하는 개인주의적인 성격이 혈족ㆍ씨족ㆍ 민족의 개념으로 연결되면서 확대되어 나아가는 것이다.41)

³⁹⁾ 여기서의 '정당한 사유'라는 것은 조선식의 명칭으로부터 일본식의 명칭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⁴⁰⁾ 권태억,〈近代化・同化・植民地遺産〉(《朝鮮史研究》108, 2000), 121\.

⁴¹⁾ 宮田節子·金英達·梁泰昊,《創氏改名》(東京;明石書店, 1992), 47~50\.

60 I. 전시체제와 민족말살정책

때문에 조선인의 창씨개명은 내선일체론에 입각하여 단순히 '성'을 '씨'로 바꾸고 조선인의 이름을 일본식으로 고치는 가족제도의 동화정책·호칭의 동화정책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조선인들이 가장 중시하는 혈통의 관념을 상대적인 것으로 격하시키고, 더 나아가 혈족·씨족·민족의 관념까지 말살하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었다. 더구나 창씨개명이 시작된 시기에서도 보이는 바와 같이 조선에서 징병제가 실시되었을 경우 소위 '천황의 군대'의 일체성과 동질성에 혼란이 오지 않도록 조선식의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꾸려는 목적도 함께 작용하고 있었다.42)

일제가 행정조직과 학교, 그리고 '국민정신총동원운동'의 조직, 그리고 친일적인 조선의 지식인들을 총망라하여 대대적인 선전과 창씨개명 신청을 강요한 결과 8월 10일 현재 호적 총수의 7할 9분 3리에 달하는 사람들이 창씨개명을 하였다. 창씨개명에 대해 일제는 절대 강제하지 않는다고 선전하고 있었지만, 신청기간이 마감된 8월 11일 이후에는 제령 제19호 부칙 제3항에따라 종래의 '성'을 그대로 '씨'로 하여 일방적으로 호적정리를 하였다. 때문에 나머지 일제에 저항하여 '창씨' 신청을 끝까지 하지 않았던 조선인들의 경우에도 호적을 갖고 있는 한 모두 일제에 의해 '창씨'가 되어 버린 결과가되었다.

그러나 일제가 '내선일체'의 구현으로 강조하고 있었던 창씨개명 작업도 조선인에 대한 철저한 차별 속에서 이루어진 민족해체작업이었다. 일제는 일본식의 '씨'와 이름을 조선인에게 강요하는 한편에서는 조선인들이 쓸 수 없는 '씨'를 정해 놓고 한번에 조선인이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이름을 장려하고 있었다. 즉 '내선일체'라는 미명 아래 하급의 일본인들을 만들어 내고자한 것이 일제 동화정책의 본질이었다. 43) 조선민족을 완전히 말살시키기는 하되 이들을 일본인과 평등한 구조 속에 편입시킬 수는 없다는 발상이 기저에 깔려 있었던 것이다.

⁴²⁾ 宮田節子・金英遠・梁泰昊、 위의 책、 39~40쪽、

⁴³⁾ 조선인들에게 창씨개명을 허용하는 일제의 정책에 대한 일본 내부의 반발도 매우 심했다(〈朝鮮同胞ニ傳來ノ名字許與反對ノ件ニ付イテノ請願書〉,《大野文書》1275, 1940).

7) 신도 강요

일제의 민족말살정책은 일본의 神道를 강요함으로써 조선인들의 종교마저도 부정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형태가 神社參拜의 강요로 나타나고 있었다. 조선을 식민지로 만든 이후 1925년 朝鮮神宮을 비롯하여 꾸준히 신사를 건립하고 참배를 강요해 왔던 일제는 대륙침략전쟁이 본격화하면서 조선인들의 정신을 통제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로 신사보급정책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36년 8월 조선총독부령 제76호로〈改正神社規則〉을 공포하면서 일거에 새로이 57개의 신사를 건립하였다. 이후 1938년 9월 시국대책조사위원회가 개최되면서 일제의 신사정책은 1面 1神社・神祠主義로 확대되어색) 1925년에 231개였던 神社・神祠의 수가 1945년에 이르면 1,141개로 급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45) 그러한 가운데 신사가 설치되지 못한 지역에서는 신사의대체 기능을 할 수 있도록 神宮大麻의 배포, 神棚의 설치, 궁성요배,〈황국신민서사〉제창 등을 강제하였다.46) 또 '내선일체의 王都'부여에 부여신궁을건립하여 내선일체의 정신적 전당으로 만드는47) 계획을 세워 1939년 6월 완공하였다. 일제는 국민총력운동의 조직을 총동원하여 地域・職役을 망라한국민운동의 형태로 신사참배를 대대적으로 강요하였는데 朝鮮神宮 참배자수만 1942년 260만 명을 기록하고 있었다.

일제는 일본민족이 우주 창조의 신인 아마테라스 오오미카미(天照大神)의 嫡子이며 일본 천황은 그 神孫으로 살아 있는 現人神이라고 설명하면서 이 것을 皇道 이데올로기로 강조하고 조선인들에게 이 신도사상 이외의 일체

⁴⁴⁾ 山口公一,〈戰時期 朝鮮總督府の神社政策〉(《朝鮮史研究會論文集》36, 1998), 202等.

⁴⁵⁾ 손정목, 〈朝鮮總督府의 神社普及・神社参拜 强要政策研究〉(《韓國史研究》58, 1987), 120~121쪽.

⁴⁶⁾ 山口公一, 앞의 글, 207쪽.

⁴⁷⁾ 손정목, 〈日帝下 扶餘神宮 造營과 소위 扶餘神都建設〉(《韓國學報》49, 1987), 128쪽.

62 I. 전시체제와 민족말살정책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았다.48) 그러나 이미 수천 년의 문화·사상·종교 유산을 갖고 있던 조선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신도란 雜神을 숭배하는 유사 종교에 불과한 것이었으며,49) 신사참배 또한 일제의 폭력에 못이긴 형식적인 의례에 불과한 것이었다. 그렇지만 일제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방법에 의존해 서라도 정신동원을 하지 않고서는 조선에서 총동원체제를 유지해 나아갈 수 없는 실정이었음을50)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일본 신도는 이외에도 역사인식을 왜곡시켜 식민사관을 만드는데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51) '皇國史觀'에 의해 일본의 역사를 과장·날조한 일제는 이 에 그치지 않고, 조선 역사를 비하시키면서 일제에 의한 식민지배의 정당성 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8) 결혼정책

민족말살정책은 조선인과 일본인간의 결혼을 장려하는 결혼정책에서 그 극단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미나미 총독이 내선일체의 궁극적인 모습으로 내세웠던 "形도 心도 血도 肉도 모두 일체가 되지 않으면 안된다"라는 조선민족말살의 의도를 그대로 관철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미나미는 조선인과 일본인간의 통혼을 내선일체를 구현하는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게 되었다. 더구나 확대일로를 걷고 있던 일제의 침략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조선 내부로부터 분출될 수 있는 저항을 뿌리째 뽑고, 일본인과 같은 운명 공동체라는 인식을 갖게 하기 위한 정신면에서의 정지작업이 필수적이었다. 그리고 이처럼 일본화된 정신이 가장 자연스럽게 발현되는 것을 조선인과 일본인간의 결혼을 통한 혼혈에서 찾고자 한 것이었다.

중일전쟁이 발발한 이듬해인 1938년 9월에 열린 '조선총독부 시국대책조사

⁴⁸⁾ 손인수, 〈일제 식민지교육정책의 성격〉(《일제하의 교육이념과 그 운동》, 한 국정신문화연구소, 1986), 91쪽.

⁴⁹⁾ 石剛. 《植民地支配と日本語》(東京:三元社, 1992), 22쪽.

⁵⁰⁾ 山口公一, 앞의 글, 208쪽.

⁵¹⁾ 김승태, 〈日本 神道의 침투와 1910·1920년대의「神社問題」〉(《조선사론》16, 1987), 292쪽.

회'에서는 '내선일체'를 완성하기 위한 여러 시책 가운데 "內鮮人의 통혼을 장려할 적당한 조치를 강구할 것"52)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이후 결혼정책이 보다 강도있게 진행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 '시국대책조사회'에서 통혼의 문제가 언급된 이후 조선인과 일본인 사이의 혼인은 그 수에 있어 급증세를 보여주고 있을 뿐 아니라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내용 면에서도 상당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통혼정책에 또 하나 중요한 轉機를 가져 온 것은 1940년 2월 시행된〈朝鮮民事令〉의 제3차 개정, 즉 '創氏改名'으로 알려져 있는 법률 개정이었다. 이는〈조선민사령〉제2차 개정 당시 형식만을 도입했던 일본의 호적과'家'의 제도를 그 실질적인 내용의 면까지도 조선에 적용하고자 한 것이었다. 그래서 종래 조선의 '姓'에 대신하여 '家'의 칭호인 '氏'를 조선인에게도 붙여서 호칭질서와 가족제도의 기본단위를 '家'로 만들었다. 또한 婿養子와 異姓養子 제도를 신설하였는데,53)특히 조선의 '異姓不養'의 원칙을 무너뜨리고 異姓養子를 인정함으로써 부계혈통의 계승을 중심으로 하는 조선의 가족제도는 그 근저로부터 부정되기에 이르렀다. 이〈조선민사령〉의 제3차 개정에대해 일제는 "內鮮通婚 및 內鮮緣組에 관하여 남아 있는 유일한 장벽을 철폐하여 內地人 남자가 조선인의 養子로서 그 家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한 것"54)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즉 조선인과 일본인 사이의 혼인과 양자관계를통해 양 민족의 혼혈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던 것이다. 또한 일본식가족제도의 도입은 일본인들의 조선인과의 통혼을 활성화하는데 큰 역할을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조선인과 일본인간의 통혼이 갖는 목적과 의미가 구체적으로 거론되면서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즉 '내선일체'를 완성하기 위한 목적과 함께 "혈액의 융합을 촉진시키는 것은 그 우수한 내지인의 피로써 조선 동포의 황국신민화에 박차를 가하는 것"55)이라는 민족적 우월감과 제국의식에

⁵²⁾ 朝鮮總督府、《朝鮮總督府時局對策調查會諮問答申書》(1938) 참조.

⁵³⁾ 宮田節子・金英達・梁泰昊, 앞의 책, 52쪽.

⁵⁴⁾ 野村調太郎、〈朝鮮家族制度の推移〉(《朝鮮》296, 1940), 21\,

⁵⁵⁾ 朝鮮總督府,《朝鮮統理と皇民化の進展》(1943).

입각한 식민지 동화의 원칙이 강조되고 있었다. 아울러 '내선일체'를 인구정책의 면에서 완성시키기 위하여 조선에 거주하는 일본인의 증가책, 조선인의일본 移住에 대한 규제책과 함께 조선인과 일본인간의 혼인의 장려가 중점적으로 거론되었다.56) 즉 조선에 거주하는 일본인의 증가와 정착을 위해서는조선인과의 통혼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이는 조선인과 일본인간의 통혼의 문제가 이전 시기에 비해 보다 구체적이면서도 절실한 필요에 의해 인식되고 정책으로 구체화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일제가 통혼정책을 통해 의도한 가장 큰 목적은 조선인의 동화, 즉 민족말살이었으며, 이를 가정과 가족구조의 일본화로부터 시작하고자 한 것이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정의 중심인 여성의 일본인화가 가장 급선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인 여자들은 낮은 취학률로 말미암아 일본식으로 사회화할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었다. 조선인 여자의 일본인화가 이처럼 난관에 부딪치게 되자 일제는 지금까지 조선인 여자가 차지하고 있었던 가족구조 속에서의 위치와 지위를 일본인 여자로 대체시키는 것에 의해 조선인의 일본인화, 조선인의 말살을 완성하고자 했던 것이다. 일제 말기에 이르러 조선인남자와 일본인 여자간의 통혼을 가장 장려하고 또 그 결과로 숫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였다. 일제는 내선일체의 완성을 위해서는 장래 일본인 여자가 주도하는 가정에서 그들에 의해 아이들의 가정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더 나아가 조선인의 가정생활을 그 속에서부터 일본화하려는 목적으로 식민지 동화와 민족말살에서의 일본인 여성의 역할을 주목하고 있었던 것이다.

일제는 이처럼 결합된 통혼의 경우 매우 원만한 가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선전하고 있었지만, 그 실상을 보면 결혼에 대한 이혼의 비율이 조선의 평균 비율을 거의 두 배 이상 상회하고 있다. 또한 당시 공식적인 통계에 나타나 고 있는 혼인관계 외에 내연의 관계에 있었던 경우, 그리고 다수였던 것으로 추측되는 중혼관계까지도 포함해서 생각해 본다면 이혼율은 이보다 훨씬 높 았을 것이다. 통혼이 내포하고 있는 갈등의 요인은 배우자 당사자간의 애정

⁵⁶⁾ 朝鮮總督府、〈極秘 内鮮一體/理念及其/實現方策要綱〉(《大野文書》1268, 1941).

문제뿐만 아니라, 양 민족 사이의 문화와 풍습의 차이, 세대간의 갈등 등이 민족감정과 얽혀 나타남으로써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었다. 더구나 조 선인이 갖고 있는 동화에 대한 강한 거부감과, 일본인이 갖고 있는 조선인에 대한 차별의식까지 복합되어 나타나고 있었던 것이다.

일제의 통혼정책은 민족말살을 위한 또 하나의 방법이었다. 그런데 통혼정책이 다른 민족 말살책과 다른 것은 性을 매개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때문에 한 개인의 가장 사적인 영역을 정책적으로 이용하는 데에서 오는 많은 문제점을 처음부터 내포하고 있었다. 또한 일제가 의도하는 통혼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이 조선인의 일본인화였기 때문에 일본인화에 뒤쳐지고 걸림돌이되는 부분들은 도태될 수밖에 없었다. 이런 구조 속에서 희생된 것이 조선인여자들이었다. 결국 조선인 여자들의 가정 내에서의 역할에 회의적이었던 일제는 그 자리를 일본인 여자들로 대신하고자 하였고, 조선인 여자들을 부족한 노동력의 대체수단으로, 또 군대 위안부와 같은 성적 노리개로 이용할 수있는 인식이 가능해진 것이다.

性을 통한 민족말살정책이었던 통혼정책의 가장 커다란 희생자는 이처럼 조선인 여자들이었다. 그렇지만 또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통혼정책의 또 하나의 피해자로서 일본인 여자들의 존재이다. 조선에서뿐만 아니라일본 내에서도 통혼이 적극적으로 장려되면서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조선인 남자들과 혼인할 수밖에 없었던 일본인 여자들이 다수 생겨나고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결국 통혼정책은 식민지인으로서 조선인이 겪어야 했던 민족적인 갈등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가부장적 전통이 거의 그대로 답습되고 있었던 가족제도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조선여성의 희생과 왜곡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다.

9) 징병제와 참정권

1938년 시작된 육군특별지원병제도와 1944년부터 실시된 징병제는 모두 조선인들을 병력으로 전쟁에 동원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갖 고 있지만, 구체적인 실시목적과 그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일제의 의도는 차 이를 보이고 있었다. 절박해진 병력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되었던 정병제와는 달리, 지원병제도의 경우는 일제의 침략전쟁 확대와 장기화에 따른 병력 부족을 해소한다는 목적과 함께 조선인들에게 황국의식을 주입하기 위한의도 아래 실시되었다.

즉 지원병제도를 통해 조선인의 일본인화의 바로미터로 사용하는 한편, 조선에서 완전한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단계가 되어야만 비로소 조선인들을 안심하고 병력자원으로 쓸 수 있다는 생각이었다. 따라서 조선에 대한 병역의무의 부과, 즉 정병제의 실시는 50년 정도 적어도 20~30년 후의 일로 상정하고 있었으며,57) 지원병제도가 징병제의 전제가 아님을 강조하고 있었다.58)그리고 지원병의 자격요건을 엄격히 적용함으로써 사실상 일제가 병력으로필요로 하는 조선인의 황민화 상태의 상징으로 제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일제의 이러한 계획은 1941년 태평양전쟁의 발발로 커다란 차질을 가져오게 되었다. 일제가 필요로 하는 병력의 규모가 평균 200만 내지 250만에 이르는데 반해 일본 민족만으로 병력을 충당할 경우 적정규모는 120만에 불과한 상황이 된 것이었다.59) 게다가 계속되는 일본 내의 출생률 저하는 병력의 부족과 더불어 노동력의 부족까지 초래하게 되었다. 그 결과 일제는 外地民族의 활용에 착안을 하게 되었고, 그 일차적인 대상이 된 것이 조선인들이었으며 조선에 징병제가 실시되게 되었다.

지원병제도와는 달리 모든 조선청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징병제의 실시는 조선인들의 완전한 일본인화, 일본정신의 주입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었다. 하지만 전쟁의 확대 속에 병력부족을 해소해야 하는 필요에 몰린 일제로서는 그러한 조건을 검증할 만한 여력이 없었다.

일제의 당초 의도와는 달리 징병제가 그 전제조건이었던 의무교육이 구체적인 계획도 입안되기 전에 갑작스럽게 도입되게 되자 일제로서는 징병제의 준비작업으로 청년특별연성소를 통해 징병 대상자들에 대한 빠짐 없는 교육

^{57) 〈}朝鮮人志願兵制度ニ關スル意見〉(《舊陸海軍文書》No. 678. 別冊 二).

⁵⁸⁾ 朝鮮總督府、〈朝鮮人志願兵制度施行ニ關スル樞密院ニ於ケル想定質問及答辯資料〉(《大野文書》1276-2, 1938).

⁵⁹⁾ 陸軍省兵務課、〈大東亞戰爭ニ伴フ我カ人的國力ノ檢討〉(1942). 高崎隆治 編、《十五年戰爭極秘資料集》1(1977).

을 실시하였다. 교육의 내용은 일본어, 일본식 생활의 수련 등으로 일제가 30여 년 추진해 왔던 동화정책이 아무런 효과가 없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 주고 있었다. 특히 일제가 조선 통치를 시작한 이후 태어나 일제에 의한 교 육 속에 자라난 청년들의 의식상태에 대해서도 신뢰를 보낼 수 없었다는 것 은 일제의 내선일체론이 조선인들에게 아무런 설득력을 갖고 있지 못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여기서 중요성을 갖고 등장한 것이 바로 조선인들의 생명을 전쟁에 몰아 넣는 징병제에 대한 선전ㆍ계몽이었고. 그 주된 논리 역시 내선일체론이었 다. 즉 조선인의 내선일체화 작업이 완성되어 비로소 숭고한 병역의 의무가 부여되었다는 논리를 내세움으로써, 병력의 부족을 조선인의 징집을 통해 보 충하려 한다는 일제의 본래의 의도를 교묘히 감추고 있었다.60) 지금까지 조 선인에 대한 차별의 이유로 설명되고 있었던 民度의 차이와 황민화 정도가 미흡하다는 점등은 이제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징병제의 실시와 더불어 중요성을 갖게 된 것이 조선인들의 참정권 문제 였다. 조선인들이 일본인들과 마찬가지로 병역의 의무를 지게 되자 1930년대 전반 이후 소강상태를 보이던 조선 민족개량주의자들 사이의 참정권 논의가 다시 재연하게 되었다. 즉 血稅를 납부하는 데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조선인 들의 정치참여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일제는 지금까지 조선인들의 참정권 요구에 대해 극히 제한적이고 형식적인 지방자치제의 도 입으로 일관하고 있었던 대응방식을 지원병제도를 실시한 직후인 1939년 경 부터 변화시키고 있었다.61)

참정권 문제의 해결을 지방자치제의 확대라는 방식으로 계속해 나아갈 경 우 이것이 조선지방의회의 설립으로 이어지고 나아가 조선의 자치령화와 독 립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었던 것이다. 이에 대 해 일제는 조선의 식민지 지배를 영속화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의 자치제 확 대는 위험하다는 판단 아래 지금까지 캐스팅 보트를 쥘 수도 있다는 이유로

^{60)〈}朝鮮同胞ニ對スル徴兵制施行準備決定ニ伴フ措置狀況並其ノ反響〉(《大野文書》 1262, 1942).

⁶¹⁾ 朝鮮總督府內務局、〈極秘 制度改正ニ關スル諸資料〉(《大野文書》1256, 1939).

금기시되어 왔던 조선인 의원의 일본의회의 중의원 참여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참정권 문제를 해결하였다.

그러나 그 선거방식은 국세 15원 이상 납세자를 선거권자로 하는 엄격한 제한선거였기 때문에 전 조선인의 2.3%만이 선거권을 갖는 것이었고, 그 가운데 29%는 일본인이 점하고 있었다. 즉 극히 일부의 친일적인 조선인들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하고 이들이 뽑은 몇몇(23명) 조선인들을 일본의회에 참여시키는 방법을 통해 일제의 지배구조 속에 편입시킴으로써 민족분할통치를 실현하려는 의도였던 것이다. 그러면서도 조선인들에 대해서는 징병제의실시로 확인한 조선인들의 내선일체화의 결과를 일본의회 참여라는 제도를통해 완성시켰다는 논리로 선전해 가고 있었다. 바로 내선일체의 구체적인표현으로 참정권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써 같은 논리를 내세워 조선인을 전쟁에 동원하고자 했던 징병제의 실시를 가능하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처럼 일제는 정병제와 참정권 문제를 내선일체의 구현이라는 같은 논리로 조선인들에게 설명하고 있었지만, 징병제 실시에 적극적이었던 일본 군부와 정부는 참정권 문제에는 상당히 부정적이었다. 오히려 조선총독부가 참정권 해결을 적극 추진하고 있었다. 이것은 조선인들을 정치적 차별 상태에 방치해 놓고는 전쟁에 동원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판단에 입각하여 징병을위한 명분과 분위기 조성을 위해 의도적으로 참정권 문제를 표면화시키고이를 해결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즉 징병의 명분으로 이용하고 있었던 내선일체의 논리를 어떤 구체화된 모습으로든 보여주지 않고는 징병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없다는 일종의 강박관념 속에서 이 문제에 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기에 이용된 내선일체의 논리는 전 조선인의 생명을 대상으로 하는 징병제와 엄격한 제한선거로 전 조선인의 2%에도 못 미치는 경제적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참정권을 함께 포괄하기에는 설득력을 갖기 어려운 것이었다.

이상으로 일제의 민족말살정책을 특히 1937년을 전후한 내선일체론의 등 장과 1938년 국가총동원체제의 확립 시기로부터 살펴보았다. 민족말살정책은 위에서 살펴본 국민정신총동원운동과 국민총력운동 등의 관제운동·교육정 책·언론통제·조선어 말살·창씨개명·神道 강요·결혼정책·징병제와 참정권 문제 등을 포함하여 전방위에서 강요되고 있었다. 일제가 내세운 조선인의 동화란 결국 조선인들이 조선민족으로 생활하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철저한 민족파괴작업이었고, 이것은 조선인을 하급 일본인으로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차별성을 그 근간으로 하고 있었다.

지금까지의 일제 민족말살정책에 대한 연구들은 각각의 정책에 대한 실상 폭로를 위주로 하여 상당히 감정적인 면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감정적 대응으로는 일제의 정책 이면에 자리잡고 있는 지배이념과 그 메카니즘을 간파하기란 쉽지 않다. 때문에 각 시기마다 일제에 의해 주장되었던 지배이념이 정책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반영되고 관철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의도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었는지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崔由利〉

3. 전시수탈정책

1) 전시동원체제의 구축

일제는 1940년 10월 소위 고도국방국가건설의 완성이란 기치 아래 국민총 력운동을 성립시켰다. '고도국방국가'란 국민, 국가의 모든 요소가 국방력을 최고도로 발휘할 수 있도록 조직되고 통제되는 국가체제이다.¹⁾ 이 체제는 기존 체제의 자유주의·개인주의적 요소를 척결하고 전체주의 이념와 천황

¹⁾ 전시체제란 1937년 중일전쟁 이후 국가운영의 원리와 재생산 구조가 전쟁수행을 위해 재편된 것이다. 식민지 조선인의 노동력·정신·물자를 전면적으로 동원하기 위해, 일제는 이전보다 강력한 관제조직을 활용하여 전시동원체제를 구축했다. 이 절에서는 전시체제 아래 조선인의 노동력과 생산물을 수탈하는데 기간적인 역할을 했던 국민총력운동, 이 운동의 말단조직으로 개개인의 일상까지 침투하여 동원체제를 부식하는데 결정적으로 작용한 부락연맹에 대해면서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중심주의를 전면에 내걸고 재편되기 때문에 소위 신체제라고 하였다. 모든 인적·물적 자원이 전쟁수행을 위해 동원되는 만큼, 사회 전반을 전체주의 이념으로 규제해야 했다. 國民總力運動(이하 총력운동)은 소위 신체제를 조선 사회에 구축하기 위한 관제조직이었다. 일제는 조선사회를 전시체제로 통제하는데 당시 일본사회보다 용이한 점이 있었다고 했다.2)

첫째, 강력한 행정력을 들었다. 식민지 통치 아래 조선총독을 중심으로 행정조직의 통제력이 강고하여, 행정은 고유한 권한과 영역을 넘어 광범한 권능을 가졌다는 것이다.

둘째, 기존 통제조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고 한다. 일제는 새로운 정세에 직면하여 별도의 기구를 만들면 종래 기구와 마찰이 생기고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을 수 있고, 새로 구한 사람이 통치목적에 따라 일하도록 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 그런데 기존조직을 활용하면 이런 문제는 없다는 것이다.

셋째, 법규통제를 가능한 한 피했다고 하였다. 총독에게 이미 모든 권한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법을 적용하지 않아도 통제를 강행할 수 있는 조직이 마련되어 있다는 것이다. 법에 입각한 통제는 상황변화에 따라 법을 계속 개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민간의 '자치통제'를 유도하고 활용했다.

전쟁에 필요한 막대한 인력과 물자를 동원하자면, 자연히 강한 행정력과 강제력이 발동하게 되었다. 총력운동은 날로 확대되는 전시동원을 행정력을 앞세워 강제로 추진할 때 수반되는 마찰을 완화시키면서 그 목적을 관철시키기 위해 등장했다. 총력운동은 기존 관제조직인 國民精神總動員運動(이하정동운동)과 농촌진흥운동의 조직과 활동을 흡수 통합한 것으로, 공익우선과 직역봉공의 구호 아래 전체주의 이념을 사회·경제의 운영원리로 확산시켰다. 즉 총력운동은 경제의 재생산구조를 전쟁동원에 맞게 재편하고, 조선인

常設戰時經濟懇話會 편,《조선경제통제문답》(동양경제신보사 경성지국, 1941), 27~38쪽.

全國經濟調査機關聯合會 朝鮮支部 편,《朝鮮經濟年報(1941・1942년관)》(개조사, 1943), 11零.

의 참여를 끌어내기 위한 정신과 사상을 통제하는 중핵체였다.3) 총력운동은 '사상의 통일', '국민총훈련', '생산력확충'이란 핵심적인 방침을 조선민중에게 부식하고 관철하는데 역량을 집중하였다. 즉 천황중심 전체주의로 전시동원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전제조건으로 '사상의 통일', 노동력 동원의 사전 정지작업이며 실제 동원이 이루어지는 '국민총훈련', 이 두 가지를 바탕으로 전쟁에 필요한 물자를 증산하는 '생산력확충'에 조선민중을 편입시키려고 했다.

총력운동은 총독부의 외곽단체로서 식민지 권력이 개개인의 삶 속에 침투하여 인적·물적 자원의 '供出'4)을 획책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일제는 조선민중에 대한 전시동원이 심화될수록, 총력운동의 기구에 민간인의참여를 늘려 총력운동이 관제운동이 아니라 '자발적인' '국민운동'이 되도록의도했다.

총력운동의 역할이 총독정치를 지원하여 전시동원체제를 사회 말단에까지 구축하는 것이므로, 그 조직은 행정조직과 일체가 되었다. 총독과 정무총감은 총력운동의 중앙기구인 조선연맹의 총재와 부총재를 겸임했고, 행정계통에 따라 조직된 지방연맹의 장은 지방행정의 장이 맡았다.

총력운동이 이전의 관제조직을 활용하여 재조직되었지만, 그 말단기구는 이전의 정동운동의 그것보다 한층 정치하게 확립되었다. 총력운동은 국가지 상주의와 전체주의가 다른 가치와 이념보다 우월한 상황에서, 어떠한 이탈자도 허용되지 않았다. 가입대상이 '조선의 모든 단체 및 개인'으로 되어, 표면 상 자유의사에 따라 가입할 수 있었던 정동운동과 달리 가입에 대한 강제성이 확대되었다. 또 일제는 각 개인의 능력을 파악하여 인적・물적 자원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부락연맹과 그 하부조직인 애국반을 통해, 戶의 대표와 그가족원(개인)까지 파악하고 통제할 수 있는 일원적인 계통조직을 구축했다.

³⁾ 이하 김영희, 〈국민총력운동의 전개와 농촌통제정책〉(《한국독립운동사연구》 14, 2000) 참조.

⁴⁾ 供出이란 전시체제 아래 통제경제의 산물로, 생산자로부터 물자를 강제로 출하시키는 것이다. 일제는 전시체제기 극단적인 천황중심주의로 개인의 권리를 배제한 채, 의무만 부과하면서 인격과 인명을 매우 경시했다. 이 점은 일제가 '노무공출'이라고 하여, 노동력도 물자의 하나와 같이 취급하던 사실에서 일단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전시동원정책은 총독부의 지시에 따라 도연맹→부·군·도연맹→ 읍·면연맹을 거쳐 "정·동·리부락연맹→애국반→대표애국반원(戶대표)→애 국반원(개인, 가족원)"으로 이어지는 총력운동의 조직체계를 따라 관철될 수 있게 되었다.

총력운동은 1944년 2월 현재 도연맹 13개, 부·군·도연맹 241개, 읍·면연맹 2,324개, 정·동·리부락연맹 6만 3,025개, 애국반 37만 3,750개, 애국반에 편입된 호대표 반원수 457만 9,162명을 포섭하고 있었다. 1943년 현재일본인과 외국인까지 포함하여 전국 호수는 487만 8,901호인데, 戶의 대표 457만 9,162명이 총력운동에 포섭되었기 때문에, 전국 호수의 약 93.8%와 그 아래 편입된 개개인이 관의 통제권에 놓여 있었다. 외형상 당시 조선에 거주하는 인구의 거의 대부분이 동원체제에 편입되었다.

일제는 전시부담이 개개인에게 부과되는 만큼 직접 조선민중과의 대립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간 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부락연맹은 촌락 단위로 농민의 물적·정신적 생활 전부를 통제하고, 통제된 생활 전부를 전시동원체제에 협력시키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부락연맹은 지방행정의 최말 단기구로 공인되어, 농산물 생산력확충과 노무동원정책의 실행단위였다. 전시정책은 행정계통과 총력연맹을 통해 하달되는데, 면행정까지 내려온 정책은 기본적으로 부락연맹을 단위로 할당되었다. 애국반 역시 총력운동의 최하부조직이면서, 대체로 부락연맹 아래 구체적인 정책 실행을 담보하는 매체였다.

일제는 부락연맹을 중심으로 농민통제를 달성하기 위해, 부락연맹의 역할 과 기능을 꾸준히 강화시켰다. 부락연맹의 책임자인 이사장의 역할이 중요했기 때문에, 區長의 수를 늘려 부락연맹마다 구장을 배치해갔다. 부락연맹이 사장으로서 구장의 처우개선이 진전되면서 촌락에서 구장의 권위는 강화되었다. 종래 촌락에서 직접 현물로 주던 구장의 수당을, 면에서 호별세로 거두어 구장에서 지급함으로써, 구장에 대한 관의 지배력을 높였다. 구장의 수당은 계속 증액되었으며, 구장에게 지방 관직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기도하고 때로는 '거물구장'까지 배치하면서, 구장을 통해 농민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려고 했다. 이렇게 면의 직접 지배 아래 놓인 부락연맹은 촌락의 농산물증산과 공동작업 등을 주도하면서, 농민들의 주된 생활권을 통제할 수 있

었고, 특히 배급행정의 말단에 위치하여 배급배제, 즉 생활권 박탈을 위협하면서 농민들을 규제하고 장악하고 있었다. 특히 이 점은 표면적으로 전시체제에 농민들이 편입되는 모습을 띠게 했다.

2) 농업증산정책과 농산물 수탈

(1) 조선증미계획의 전개 과정과 그 결과

1930년대 초 농업공황을 계기로 일제는 조선미가 일본의 농업을 압박한다고 하여, 1934년 산미증식계획을 중단시켰으나, 中日戰爭의 발발로 조선미의 증산계획을 다시 모색했다. 당시 일본의 연간 미곡소비량은 8,000만 석인데, 연평균 생산량은 약 6,300~6,400만 석이어서, 조선과 대만의 약 1,400~1,500만 석을 이입하여 소비량을 충당하고 있었다. 또 일본과 조선에서 군수생산력확충 중심의 산업이 팽창하면서 미곡수요가 증대할 전망이었고, 조선미의 만주・북중국 등지 수출도 중일전쟁 후 격증하고 있었다(1938년 35만 9,000석, 1939년 9월 말 현재 83만 7,600석).5)

식량 수급의 대비책으로 1939년 조선과 일본에서 증미계획이 실시되었다. 1939년 조선의 증미계획은 3개년 계획으로 주로 경종법 개선으로 120만 석을 증산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대한해로 미곡생산량은 1,453만 석에 불과하여 전년도 생산량보다 1,000만 석이 감소하였다. 남부지방 8개 도의 경작예정면 적 중 58%(70.9만 정보)가 7할 이상 감소・수확전무 혹은 경작불능의 상태에 빠졌고, 평년 생산량의 54%(916만 석)가 감소되었으며, 이재농가는 미작농가의 60%(118만 호)에 달했다. 특히 이재농가가 전라북도는 95%, 경상북도는 80%에 이르렀다. 총독부가 인정한 要구조농가는 미작농가의 40%였다.6)

1938년 전체 논 면적 173만 9,187정보 중에서 관개시설이 없는 천수답은 52만 2,373정보, 전체의 30%를 차지하였다. '관개답' 121만 6,814정보(70%) 중에도 수리안전답 83만 894정보(47.8%), 수리불안전답 38만 5,920정보(22.2%)가

⁵⁾ 嶋元勸,《食糧政策再建と朝鮮》(경성일보사, 1939), 34쪽. 全國經濟調查機關聯合會 朝鮮支部 編、《朝鮮經濟年報》(1941・1942년平), 65쪽.

⁶⁾ 조선총독부 사정국 사회과, 《昭和十四年旱害誌》(1943), 63·90쪽.

있었다.7) 약 83만 정보가 수리안전답인데 반해, 천수답과 수리시설이 있으나불안전한 논을 합쳐 약 90만 정보, 전체 약 52%가 한해에 취약한 상태였다. 이런 수리불안전답이 존재하는 한, 경종법 개선만으로는 증미계획을 달성할수 없었다. 1939년 한해는 수리안전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에서 진행된 경종법 개선을 무효로 만들었고, 관개개선을 포함한 토지개량사업의 중요성을다시 대두시켰다. 또한 천수답을 포함한 수리불안전답은 강우만 기다리기다가 비가 오면, 단기간에 많은 노동력을 동원해서 모내기를 해야 했다. 따라서 수리문제는 증산만이 아니라 농촌노동력을 공광업 방면으로 공출하려는 노무동원계획과 관련해서도 해결되어야 했다.

일제는 1939년에 실시하던 계획을 계승하여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조선증미계획(이하 증미계획)을 1940년부터 실시하였다. 증미계획은 6개년 동안 680만석을 증산하여 총생산량 3,005만 석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경종법 개선으로511만 석(75.1%), 토지개량사업으로 169만 석(25%)을 증산하려고 했다. 1920년대 산미증식계획에서 경종법 개선의 중점은 판매비료의 투하와 종자개량사업의 장려였으나, 이번에는 이외 모든 방안이 검토・활용되었다. 실행단위는 부락연맹 및 그에 준하는 단체로 하고, 공동 못자리 설치, 병충해 방제,신품종 육성, 판매비료 시비법 개선, 深耕과 秋耕의 장려, 적기작업, 자급비료 증산, 촌락공동작업 장려 등 다양한 내용을 포괄하였다. 이를 실천하려면노동력이 이전보다 많이 소요되어야 했다.

1939년 증미계획이 수리시설이 뒷받침되지 않아 실패로 돌아간 경험에 비추어, 이번에는 토지개량사업을 소극적이나마 추진했다. 1920년대 토지개 량사업은 개간·개척·지목변경 등으로 논의 면적을 적극 확장해왔다. 그러나 이 때는 급속한 증산의 효과를 거두어야 하고 자재부족으로 제약을 받았기 때문에, 기존 논의 수리시설개선에 중점을 두고, 새로 논의 면적을 확장하는 사업은 수리시설개선과 동시에 실시하는 것이 유리한 곳으로 한 정했다.8)

1940~1941년 토지개량사업의 실적은 관개개선 2만 7,000정보, 경지정리

⁷⁾ 남조선과도정부편, 《조선통계연감(1943년판)》(1948), 46~47쪽.

⁸⁾ 조선총독부 농림국, 《朝鮮の農業》(1942), 290~295쪽.

6,000정보, 암거배수 2,000정보, 소규모사업 4,000정보 등이었다. 미곡수확량은 1940년의 경우 2,152만 석으로 1939년보다 약 700만 석 증가하였지만, 평년 수확량 2,300~2,400만 석과 비교하면 저조한 실적이었으며, 1941년에는 2,488만 석으로 평년작을 약간 웃돌았다.

1942년에는 太平洋戰爭이 시작됨에 따라 증미계획이 장기적인 계획으로 확충되어(이하 갱신증미계획), 1951년까지 사업을 전개하여 1953년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토지개량사업은 1942년 이후 10개 년간 시행면적 57만 7,000정보를 새로 설정하고, 1943년에는 300정보 이상의 대지구 관개개선사업과 간척사업을 대행하는 조선농지개발영단을 설립하기도 하였다. 갱신증미계획의 증산량은 1,138만 3,000석인데, 경종법개선으로 518만 7,000석, 토지개량사업으로 619만 6,000석을 확보한다는 것이었다. 토지개량사업에 의한 미곡증산의 비율이 이전 증미계획의 25%보다 54.4%로 대폭 상향조정되었다.

갱신증미계획의 실적을 보면, 조선농지개발영단이 담당하기로 한 토지개량사업 31만 6,000정보에 대해, 착수면적은 1945년까지 9만 정보에 그쳤다.9) 수리불안전답의 해소가 증미의 절대적인 조건인데, 토지개량사업의 부진은 증미계획 실패의 큰 원인이 되었다. 1942년 이후 계속된 한발로 미곡수확량은 1942년 1,568만 석, 1943년 1,871만 석, 1944년 1,660만 석으로 증산은 커녕평년작(2,300만 석)의 70%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었다. 1942년의 한수해는 1939년 한해에 못지 않게 농민들에게 큰 피해를 끼쳤는데, 이 때는 식량공출의 강화로 농가의 고통이 더욱 가중되었다. 1939년과 1942년 한수해 피해 호수를 비교하면, 구조호수는 1939년 10만 7,051명에서 1942년 31만 2,512명, 구조인원은 22만 5,772명에서 75만 1,885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다.10) 피해 정도를 숫자만으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1942년 한수해 피해 농가도 1939년과마찬가지로 총독부의 노무공출의 대상이 되었다. 1942년부터 관알선 노무동원이 전개되었다.

일제는 1943년 말, 농업생산책임제(1944년)를 앞두고, 천수답 해소에 중점

⁹⁾ 최유리, 〈일제말기 조선증미계획에 대한 연구〉(《한국사연구》61·62, 1988), 387~389쪽.

¹⁰⁾ 樋口雄一,《戰時下朝鮮の農民生活誌》(사회평론사, 1998), 219쪽.

76 I. 전시체제와 민족말살정책

을 두고 토지개량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직접 자재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간단한 공사방법으로 1944년 모내기까지 확실히 완성할 전망이 있는 小溜池・井戶・洑 등을 급속히 축조하여, 전국에 10만 정보의 수리시설을 갖추기로 하였다. 또 경지확장을 위해 開烟 2,000정보, 野溪개수・경지보전사업 8,100정보, 소하천보수・황폐지복구사업 4,100정보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사업을 위해, 대규모 노동력을 동원하는 '전국적인 일대국민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11) 1944년 조선인 노무동원 중 근로보국대 192만 5,000명을 포함한 '도내동원' 245만 4,000명은 이러한 토지개량사업의 실시와도 연관지어볼 수 있다.

⟨표 1⟩

경지 면적의 추이

(단위:정보)

	논	밭	화 전	계
1937	1,736,368	2,769,876	437,525	4,943,369
1938	1,750,844	2,764,833	442,044	4,957,721
1939	1,762,774	2,763,983	431,750	4,958,507
1940	1,770,395	2,740,763	423,072	4,934,230
1941	1,769,572	2,719,964	399,014	4,888,550
1942	1,767,344	2,707,982	374,247	4,849,573
1943	1,704,257	2,878,051		4,582,308

^{* 《}조선경제통계요람》, 1949, 12쪽,

또한 주요식량 밭작물인 맥류·잡곡 등을 급속히 증산하기 위해, 휴한지의이용, 면작 등의 맥간작 장려, 경작방식의 개선 등으로 신규경작면적 3만 정보, 과수원·桑園의 간작 등으로 1만 정보, 답이작의 신규면적 2만 3,000정보를 확보하기로 했다. 특히 상습적으로 한해를 입는 논 5,000정보를 밭작물로 전환하기로 했다.¹²⁾ 〈표 1〉에서 보듯이 전체 경지면적은 1940년부터 줄기시작하는데, 이는 중공업의 발달로 인한 부지증대도 큰 원인이었다. 논의 면

비고:소수점 반올림.

^{11) 〈}第二次食糧增産對策決す〉(《朝鮮》, 1943. 12), 74쪽.

¹²⁾ 위와 같음.

적은 1941년부터 줄곧 감소하였고, 밭은 1940년부터 감소하다가 1943년부터 증가하였다. 이는 부분적으로 전개된 경지확장이 밭의 면적을 중심으로 진행되거나, 수리불안전답의 밭으로 전환 등도 그 원인이었다.

일제는 미곡 등 농산물의 증산이 여의치 않은 가운데, 필요량을 확보하기위해 1943년 공출사전할당제를 실시하였고, 사전할당제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위해 각 농가의 생산책임량을 결정하는 농업생산책임제를 1944년부터 실시하였다. 농업생산책임제는 미·맥·잡곡 등 필수농산물 13개 품목에 대해촌락별 책임생산 수량을 할당하여 부과하는 조치였다. 13개 품목을 증산하다보면, 경작면적이 경합하는 현상을 초래할 수 있는데,13) 이를 방지하기 위해단위 면적당 생산량의 증가와 천수답을 받으로 전환하여 경지의 활용도를높이는 방안도 함께 제시되었다. 할당생산의 책임자는 지주이며, 농민은 촌락연대로 책임수량을 경작하도록 되었다. 1944년 미곡생산책임은 경작예정면적 162만 2,000여 정보에 증수량 160만 석을 포함하여 2,600만 석의 획득을목표로 하였다.14)

종래 판매비료의 투입량 증가는 품종개량의 보급과 함께 미곡의 생산량을 확대하는 데 주된 요소였다. 그러나 판매비료의 소비량은 1938년 24만 5,079 톤을 최대로 이후 감소하였다. 〈표 2〉와 같이 1944년 질소비료의 소비량은 7만 8,000톤으로 1939년 12만 6,360톤의 약 62%에 불과하였다. 대신 자급비료의 소비량을 증가시키려고 했다. 그러나 원료인 짚이 가마니 등 藁工品의 중요자원이 되었고 양곡 공출이 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자급비료의 원료부족으로 퇴비제조도 어려운 형편이었다. 또 1941미곡년도 이후 공출강화로 영농을 기피하는 풍조가 만연하여, 경지의 일부 반환 혹은 농경태업이 우려될 수준이었다. 1944년 실제 미곡 경작면적은 132만 2,000정보에 불과하였고, 생산량도 평년작에서 700~800만 석이나 감소하여 1,660만 6,000석에 그쳤다.15)

¹³⁾ 久間健一,《朝鮮農政の課題》(成美堂書店, 1943), 382\.

^{14) 〈}농업생산책임제실시요강〉(《朝鮮》, 1944, 5), 5쪽,

¹⁵⁾ 村上勝彦・富田晶子・橋谷弘・並木眞人,〈植民地期朝鮮社會經濟の統計的研究〉(1)(《東京經大學會誌》136, 1984), 13쪽.

[〈]농업생산책임제실시요강〉(《朝鮮》, 1944. 5), 5쪽.

⟨₩ 2⟩

판매비료의 소비량

(단위 : 톤)

	질 소	인 산	가 리
1939	126,360(757)	50,344(302)	6,446(39)
1940	115,542(694)	49,225(296)	5,376(32)
1941	108,159(655)	40,832(247)	3,804(23)
1942	108,159(655)	19,679(120)	3,183(19)
1943	68,545(525)	10,042(61)	_
1944	78,000(472)	7,000(42)	_

^{* 《}조선경제통계요람》, 1949, 31쪽.

비고: ()는 경지 1반당 소비량

1945년도 증미목표는 2,940만 석이었으나 심각한 생산조건의 저하로 계획을 변경하였다. 10만 정보를 받으로 전환하고, 미곡경작면적 149만 1,569정보에, 생산책임량을 2,360만 석으로 조정하였다. 또 자급비료의 사용량을 확대하기 위해 농업책임생산 품목 중에서 새로 퇴비를 추가하고, 대신 소·말·돼지·면양을 삭제하였다. 논의 받으로 전환, 퇴비의 증산도 모두 촌락 공동책임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였다.16)

농기구의 부족, 비료의 절대량 부족 등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더욱 많은 노동력이 소요될 수밖에 없었다. 생산여건으로 보아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노동력은 농외로 유출되고 있었다. 따라서 뒤의 〈표 3〉에서 보듯이 1941년 이후 계속 감소하는 수확량이나마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농촌에 남아 있던 노동력의 강도 높은 혹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2) 부락생산확충계획과 농촌재편성계획의 내용

가. 부락생산확충계획의 실시와 그 내용

총력운동은 농업생산력확충(농산물 증산)을 위해 1940년 12월 5일 농촌생

¹⁶⁾ 近藤釼一 편、《太平洋戰下の朝鮮》 4(우방협회, 1963), 6・22・123쪽.

일제가 패망하는 1945년에는 기후가 순조롭고 강우량도 많아 천수답도 모내기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10만 정보의 밭 전환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미곡생산량도 약 2400만 석 정도를 획득하였다고 한다(石塚峻,《朝鮮における米穀政策の變遷》, 우방혐회, 1983, 55쪽).

大藏省 管理局、〈조선편〉(《日本人の海外活動に關する歷史的調査》), 61쪽.

산보국지도방침을 발표하고 농업보국운동을 전개하였다. 농업보국운동은 공익우선, 국가본위의 경영원리를 농촌 말단에까지 부식하여 농산물에 대한 계획증산을 달성하려는 조치였다. 이에 농업보국운동은 종래 농촌진홍운동을 흡수하여, 농가갱생계획은 部落生産擴充計劃(이하 部落計劃)으로 대체되었다.

부락계획은 전시계획경제에서 농업 부문 생산확충계획으로, 촌락 단위로 3개년을 1기로 1941년부터 1943년까지 실시하기로 되었다. 이 계획에 따르면 농가의 개별적인 영농이란 있을 수 없고 위로부터의 일방적인 생산통제를 받기 때문에, 해당 촌락이 적절한 산지가 아닐지라도 어떠한 농산물이 전쟁수행상 필요할 경우, 이를 생산해야 했다. 따라서 부락계획은 '일종의 경작강제'였다.17)농민들은 공익우선, 생업보국이란 구호 아래 생산이 통제되었다.

부락계획의 실시구역은 부락연맹의 구역과 일치하도록 되었고, 그 실행기관은 부락연맹이었다. 당시 농산촌 7만 4,000여 촌락 중에서 부락계획이 수립된 촌락은 1942년 1월 현재 7만 611개로, 전체의 약 97%이고, 계획 수립농가는 282만 2,824호로,18) 1941년 말 전체 농가 호수 307만 900호의19) 약 92%에 이르고 있어 전국 농촌과 농민이 거의 부락계획에 포섭되었다. 증산계획이 총독부→도→부·군·도→읍·면→촌락→농가로 할당되면, 농민들은할당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부락연맹의 상회를 열어 '합의'와 부락연맹원 사이의 '공려'를 통해 증산에 동원되었다. 식민지권력은 위로부터의 일방적인경작강제를 상회를 통해 농민들의 '협의'・'합의'를 유도하고, 공동작업으로열악한 생산조건을 미봉하거나 이탈자를 방지하면서, 농가경제의 향상과는전혀 유리된 증산책을 강행하였다.

¹⁷⁾ 久間健一, 앞의 책, 380~381쪽. 〈임시농지등관리령〉(1941년 2월)에 따라 총독과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농작물의 종류, 지역, 기타 사항을 지정하여 경작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거나 명령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 규정을 근거로 1942년 4월 〈조선농지작부통제규칙〉을 공포하였다.

¹⁸⁾ 조선총독부 농림국 농정과,《朝鮮に於ける部落生産擴充計劃實施概要》(1942), 1~2等。

¹⁹⁾ 조선은행조사부, 《朝鮮經濟年報》(1948년판), Ⅲ-25쪽.

80 I. 전시체제와 민족말살정책

당시 전개되고 있던 조선증미계획을 비롯한 농산물증산계획은 부락계획이 실시되면서, 이에 통합되어 추진되었다. 1941년 이래 5개년의 식량전작물증산계획이 맥류를 중심으로 전개되었고, 감저중산장려계획이 1939년 이래 5개년간, 면화중산계획이 1933년 이래 10년간 1942년까지 추진되는 등 중요작물의 증산계획이 실행되고 있었다. 이런 증산계획은 시국의 요청에 따라 응급적, 횡렬적으로 수립되어 체계적이지 못한 점이 있었다. 따라서 일제는 부락연맹을 동원하여 이전부터 수립한 '중요농립산물증산계획'을 부락계획에서 조정하여 종합적으로 실시하려고 했다.20)총력운동의 등장 이후 농산물의 중산계획은 촌락 단위로 부락연맹이 중심이 되어 집단적으로 강행되었다. 농민들의 생산활동은 "국가가 있음으로써 농촌이요 농촌이 있음으로써 농민이다"21)는 전체주의와 국가지상주의로 통제되고 있었다.

일제는 부락계획을 강행하기 위해서 당시 농기구·비료 등 생산조건의 악화를 공작지·공동농기구·공동작업 등의 촌락공동시설로 보완한다는 방침을 세웠고, 각지에서는 촌락공동시설이 확충되고 있었다.

당시 계획생산과 생산통제의 실상을 가마니짜기를 통해 살펴보자. 공출되는 농산물 포장용 혹은 군용, 수출용 가마니의 수요가 확대되고 있었다. 경기도 이천군 부발면은 1941년 3월 10일 각 동리 구장과 촌락 간부에게 가마니공출 할당을 다음과 같이 했다.²²⁾

- ① 3월 10일부터 3월 말일까지를 군용 가마니 생산주간으로 함.
- ② 각 농가에서 생산한 책임수량은 매호당 130매.
- ③ 각 동리별 책임수량에 대해 구장 등이 책임.
- ④ 출하는 전반기 3월 22일, 후반기 4월 3일에 나누어 함.
- ⑤ 각 농가가 현재 소유한 원료 짚은 호불호간 전부 강제적으로 가마니짜기 원 료로 제공할 것.
- ⑥ 만일 각 농가에 이상에 위반자가 있으면 그 사정 여하를 불문하고 非國民으로 인정하고 엄벌주의로 처단함.

《朝鮮經濟年報》(1941·1942년판), 76쪽.

²⁰⁾ 久間健一, 앞의 책, 380쪽.

^{21) 《}每日新報》, 1943년 1월 19일, 〈우리道의 生産擴充〉.

^{22) 《}夫鉢邑 高白里 尹氏家 소장 근대문서》, no. 32, 〈軍用叭 공출에 관한 건〉.

⑦ 각 촌락에서 회합을 열어 주지 전달할 것.

부발면은 20개 촌락, 866호에게 11만 2,580매의 가마니 공출을 할당했다. 1 개 촌락의 할당량은 1호당 130매씩 일률적으로 할당된 수량에 따라 결정되었다. 면장은 다량 공출을 '황국신민의 의무'로 감수할 것을 촉구하면서, 수량 생산을 위해 각 농가가 소유한 원료 짚에 대한 '강제 제공'을 명령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비국민'이라 매도하면서 할당을 관철시키고 있었다. 이렇게 일률적으로 책임량을 할당하는 과정에서, 가마니짜기가 불가능한 데도 강제로 할당되어 구입해서 납부해야 하는 처지에서, 공정가격 32전인 것을 50전에 구입해야 하는 상황도 야기되었다.23》 또 위로부터 할당된 양을 채우기위해, 부여군 홍산면 북촌리 애국반장 宋村信吉은 자기 반의 상인 등에도 이를 할당하고, 현물을 공판장 입구에서 신원불명한 자에게 구입하여 할당량을 채웠다.24》 가마니짜기 할당을 거부하는 경우를 보면 ① 가마니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일일노동을 하고 대신 가마니를 구입해서 공출하는 것이 낮다는 것, ② 가마니짜기 경험이 없는 데다가 능률이 오르지 않고, 또한 채산이맞지 않기 때문 등이었다. 이로써 해당 농산물의 생산이 적절한지 여부도 가리지 않고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생산명령의 일단을 볼 수 있다.

부락계획으로 대표되는 전시농업정책은 위로부터 생산을 통제하여 실행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농민들을 압박한 경우가 많았다. 전쟁수행에 필요한 증산이라도 개인의 경제적 측면에서 거부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이럴 경우, 일제는 공익우선 논리와 '비국민'이란 도덕적 규제로 억압하고 있었다. 일제는 생산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농산물 증산정책을, 지역에 따라서는 촌락 단위에서 애국반 단위로 통제의 범위를 줄이기도 했으며,²⁵⁾ 더 나아가 농업생산책임제를 실시하였다.

²³⁾ 法務局 刑事課,〈業界並一般民衆ノ聲〉(《情報週刊展望》9, 정부기록보존소 소 장문서, 1941, no. 256), 779쪽.

²⁴⁾ 法務局 刑事課,〈供出叭ノ價格超過買入〉(《經濟治安日報》51, 정부기록보존소 소장문서, 1942, no. 195), 316쪽.

²⁵⁾ 김영희, 《1930·1940년대 일제의 농촌통제정책에 관한 연구》(숙명여대 박사학 위논문, 1996), 239~240쪽.

나, 농촌재편성계획의 추진과 그 내용

농산물 증산정책은 부락계획을 계기로 계획화되었고, 조선 농촌은 증산의가능성이 컸으나 영세하고 분산된 경영형태와 생산조건의 악화 등으로, 그가능성이 제한받고 있었다. 또 농촌에 부과된 노동력의 공출도 농업체제의정비, 즉 농촌재편성을 압박하였다. 농촌재편성 문제는 중일전쟁 이후 전시체제에 돌입하면서 여러 차례 제기되었다. 이 문제가 집약적으로 제기된 것은 태평양전쟁 발발 이후였다. 1942년 6월 부임한 고이소(小磯)총독은 농촌재편성을 농업정책의 중점과제로 설정했다.

총독부는 농촌재편성에 대비하여 농촌체제의 정비계획을 각 도에 시달하고, 각 도·군·읍면에 농촌대책위원회를 설치하였다. 농촌재편성의 기초자료를 얻기 위해 전라북도 옥구군과 경기도 장단군의 두 개 모범부락의 경지면적, 전업 및 겸업, 반당 수확량, 소작료, 공동작업, 설비, 임금수입 등 농촌실태를 조사했다. 또 각 도로 하여금 농지의 배분, 노동력 실태 등을 조사하고, 耕地圖를 작성하게 하였다.26) 농촌실태조사를 통해 얻은 자료는 기존 부락계획을 위해 조사했던 〈부락개황조사서〉,〈개별계획서〉와 대조하여 농업경영의 적정규모를 지역별로 설정하고, 적정 경영규모에 입각하여 농촌노무동원계획, 출입경작지의 정리계획, 경지적정배분계획, 자작농지창정계획, 개척민송출계획, 광공업노무동원계획, 공동시설확충계획 등 당면한 중요문제를계획하려고 했다.27)

1943년 농촌재편성정책에 소요되는 예산이 책정되고, 정책 수립의 참모기 관으로 정무총감을 위원장으로 朝鮮總督府農業計劃委員會가 설치되었다. 조선농업계획위원회의 農村再編策審議會 제1차 회의가 1월 12일부터 개최되었고, 같은 해 7월 재편성정책의 골격인〈조선농업계획요강〉이 발표되었다.28) 그 중요내용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皇國農民道의 확립이다. 황국농민도란 "농가로 하여금 여하한 곤란

²⁶⁾ 정연대, 《일제의 한국 농지정책(1905~1945)》(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4), 271~ 272쪽.

^{27) 〈}半島農村の臨戰態勢整備〉(《朝鮮農會報》, 1941. 9), 80쪽.

^{28) 〈}조선경제개황〉(《식은조사월보》, 1943. 9).

도 극히 이를 극복하여" 증산에 매진하고 "鄕閭를 들어 황국에 목숨을 받친다는 기풍"을 지니는 것을 의미했다. 이런 의식을 주입시키기 위해 종래 실시해 온 농민도장·농촌중견부인양성소·농업보국정신대·嚮導농가를 확충 강화하려고 했다.

둘째, 적정 규모의 농가경영 방안으로 임야 중에서 농경적지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수리불안전한 논을 개량하여 농경지를 확대하도록 했다. 또한 영세하고 분산된 농업경영을 정리하고 일정 지역을 중심으로 경작지를 확보하도록 하였다.

1938년 말 1정보 미만의 영세농가는 전 농가의 63%였고, 남부지방의 논농사지대는 77.8%에 이르고 있었다. 또 1호당 경영면적이 1정보 미만이면서, 전답이 7~9개소에 분산되어 있는 등, 당시 농지는 극히 세분되어 있었다. 일제는 이런 영세농과 농지의 분산이 노동력의 낭비와 공동작업의 추진에 방해가 되어 농업생산력 증대와 노동력 공출을 억제하고 있다고 보았다. 이에 영세농가의 경영규모 적정화를 위해 자작농지설정사업을 다소 확대하여, 1943년부터 금융조합이 실시하는 사업을 종전의 소규모 분산적 방식에서 대규모 집단적 방식으로 전환하기도 했다. 또 북선개척사업은 북부 지방의 화전을 이 지역 화전민에게 대부하여 자작농으로 만드는 동시에 남부지방의 영세농을 이주시키려는 정책으로 1938~1945년간 1만 호의 이주를 목표로실시하고 있었다.²⁹⁾

만주이주사업은 영세농 해소와 만주 침략정책의 일환으로 전개되어, 1937년 1차 5개년 계획으로 매년 1만 호씩 송출할 예정이었는데, 대한해를 당한 1939년 1만 526호를 포함하여 1941년까지 2만 6,807호를 이주시켰다. 1942년부터 실시된 2차 5개년 계획도 매년 1만 호씩 송출하려고 하였으며, 1942년 2,100호, 1943년 2,000호, 1944년 3,000호, 1945년 1,800호로 총 8,900호가 만주로 알선·송출되었다. 농업노동자를 비롯하여 5반 이하의 영세농이 송출 농가의 대부분을 차지했다.30) 만주이주사업은 2차 계획부터 分析계획의 일환으로 시행되었다. 과잉인구의 지역 농민을 집단적으로 이주시켰고, 이들의 농

²⁹⁾ 정연태, 앞의 책, 273~275쪽.

³⁰⁾ 樋口雄一, 앞의 책, 130~136쪽.

지를 기존 농민에게 재분배하여 적정 규모를 유지시킨다는 것이다.31) 적정 규모의 경영과 관련하여 소작관계의 적정화 방안도 제시되었다. 1939년 12월 〈소작료통제령〉의 공포로 지주의 자의적 수탈을 제한하는 조치가 시행되고 있었다. 다소 완화된 경영규모와 소작조건으로 경영의 안정과 생산력의 증대를 거두어 공출을 강화하려는 것이었다.

셋째, 농촌노동력을 공광업 방면으로 동원하고, 부족한 노동력을 공동작업과 부인노동력의 확충 강화 등으로 조정한다는 것이다.

넷째, 촌락 단위 협동사업을 확충하여 농업생산의 기반을 공고히 하도록했다. 창고·공동수익지·농용림지 등 영농에 관한 촌락공동시설, 농지의 개발보전과 개량, 신규경작지개발 등에 촌락의 공동작업 및 관리가 모색되었다. 일제는 열악한 생산조건 속에서 농산물 증산과 그 공출을 확대하기 위해, 농가의 생활권으로서 '촌락의 체제'를 강화하고자 했다.

다섯째, 지주의 활동 촉진이다. 1942년 현재 부재지주의 소유면적은 약80만 정보로, 당시 소작지 총면적 252만 정보의 31.7%에 달하였다.³²⁾ 일제는 재촌지주와 달리 부재지주가 농촌사회의 불안과 증산에 장애가 된다고보고, 이들에 대한 통제를 시도하였다. 종래 지주소작관계를 악화시켜 왔던마름을 배제하고 지주가 소작인과 직접 접촉하여 생산을 지도하도록 하였고, 지주가 직접 나설 수 없으면, 수리조합이나 기술자를 대신 배치시키는등 지주의 자세 변화를 촉구했다.³³⁾ 〈소작료통제령〉과〈임시농지등관리령〉으로 지주의 농업경영을 통제하고, 농업생산책임제에서 지주의 생산책임이명시되었다. 또한 전체주의 이념에 따라 이 때 토지의 소유권에도 奉仕의관념이 들어가, 토지는 국가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었다.³⁴⁾ 따라서 지주는 일본 천황을 대신하여 토지를 맡아 생산하여 국가에 바쳐야 할 임무를 강요받았다.

농촌재편성정책은 토지와 노동력의 재분배로 식민지권력이 요구하는 계획

³¹⁾ 정연태, 앞의 책, 276쪽,

³²⁾ 정연태, 위의 책, 278쪽.
조선은행조사부, 《조선경제연보》Ⅲ(1948), 25쪽.

³³⁾ 인정식. 〈부재지주론〉(《조광》, 1944, 4), 21쪽.

³⁴⁾ 岩田龍雄、〈農業勞働力に關する若干の考察〉(《조선노무》4-2, 1944. 3), 4쪽.

증산을 담당할 수 있도록 "건전하고 農道에 철저한 농가"를 단위로 농촌을 구성시킬 것을 목표로 하였다.³⁵⁾ 위에서 살펴본 내용들은 모두 공권력이 강력하게 개입해야 달성될 수 있는 것이다. 농촌재편성은 부락계획으로 구축된 계획생산체제를 기반으로, '국가의지의 침투를 지상명령'으로 농촌과 농가경영을 '통제경제순응형'으로 개편하려는 것이었다.³⁶⁾

만주이주사업, 북선개척사업, 노무동원계획의 대상이 주로 영세농의 이탈로 이루어지면서, 기존 농업방식에 변화의 가능성이 생겼다. 농가 호수는 1935년 306만 6,439호(전체 호수의 74.0%)에서 1939년 302만 3,133호(70.4%), 1941년 307만 1,000호(67.4%), 1942년 305만 3,446호(63.8%), 1943년 304만 6,001호로 감소하였다. 농가호수는 1941~1943년 사이에 25만 호가 감소했다. 그리고 1941~1943년 사이에 자작농이 전체 농가의 19.9%에서 17.6%로 감소한데 반해, 자소작농은 23.6%에서 27.8%로 증가하고 소작농은 53.6%에서 48.6%으로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났다.37) 이러한 변화는 영세농 중심의 농외 유출이 큰 원인이었다. 1944년 농업생산책임제 아래 '분산경지의 정리' 결정은 이런 농가들이 떠난 뒤남겨진 경지도 포함하여 세분된 경지를 재조정하려는 정책의 일단이었다.

전시체제하 특히 1941~1943년 사이에 농촌인구의 급격한 이동은 종래의 농민층 하강분해와 달리 상향분해의 가능성을 제공하였다. 영세농가의 농외 배출로 인한 생산성 향상의 조건이 부분적으로 형성되었지만, 생산조건 악화 와 전시체제 모순의 심화는 경작면적의 감소, 생산량 저하를 초래하였다.

(3) 미곡공출의 전개 과정과 농가경제의 파탄

가. 전시체제 아래 식량수급사정의 변화

〈표 3〉에서 보듯이 1937년은 미곡 대풍작으로 최고생산량 2,600만여 석을 얻었고, 1938년 2,400만 석을 거둔 후, 1939년에는 대한해로 급격히 감소하여 1,400만 석을 생산하는데 그쳤다. 조선미의 일본 이출량은 1938미곡년도(1937년 12월~1938년 11월) 1,000만 석을 돌파한 뒤, 1939미곡년도 690만 석, 1940

³⁵⁾ 大熊良一, 〈朝鮮農村再編成の諸問題〉(《朝鮮》, 1942. 11), 45쪽.

³⁶⁾ 朝鮮銀行京城總裁席調査課、《朝鮮農村の再編成について》(1942, '例言')、37零.

³⁷⁾ 조선은행조사부,《조선경제연보》Ⅲ, 25쪽.

86 I. 전시체제와 민족말살정책

미곡년도 약 600만 석으로 격감하였다. 1939년의 대감소는 전시하 식량문제를 본격적으로 검토하는 계기가 되었다.

조선내 미곡소비는 1937년까지는 1,200~1,300만 석 정도에서, 1938년 이후 급속히 증가하여 1942년 1,800만 석에 이르렀다. 소비증가의 주된 이유는 전시 공업화의 결과로 공장·광산노동자의 증가에 따른 소비의 증가에 기인하였다.

〈표 3〉 조선의 미곡수급상황 (단위: 천석)

내 역	공 급	급 량	수 5	오 량
미곡년도	생 산 량	수이입량	수이출량	소 비 량
1937	19,411	200	7,202	12,579
1938	26,797	44	10,997	15,784
1939	24,139	308	6,895	17,646
1940	14,356	372	601	13,982
1941	21,527	213	4,232	17,345
1942	24,886	73	6,273	18,613
1943	15,687	897	1,303	15,306
1944	18,719	20	4,121	14,597
1945	16,052	_	1,756	14,295

^{*} 近藤釼一 편,《太平洋戰下の朝鮮》4,88~90쪽; 조선은행조사부,《조선경제연보》 III.28쪽.

일제는 증미계획 등 일련의 농업생산력의 확충에 노력했지만, 미곡생산량은 〈표 4〉와 같이 1941년 이후 감소하였다. 미곡 감소에 직면한 일제는 "가장 확실하고 효과있는 식량대책은 소비규정과 배급기구의 편성"에 중점을 두는 것이라고 하며,38) 식량의 출하(공출), 유통(집하 및 배급), 소비과정에 적극 개입하여 필요량을 확보하고자 했다.

나. 미곡공출의 전개 과정

가) 식량의 '국가관리제' 준비단계와 공출(1940~1942미곡년도)

전시체제 아래 미곡공출은 1939년 대한해의 영향으로 수이출 미곡에 대한

^{38) 《}朝鮮經濟年報》(1941・1942년관), 249쪽.

조치에서 시작되었다. 일제는 그해 12월 27일〈조선미곡배급조정령〉과 그에 기초한〈미곡배급통제에 관한 건〉에³⁹⁾ 따라 1940미곡년도 이후 1943미곡년 도까지 생산자에게 강제 공출을 명령하였다. 1940미곡년도 식량대책(이하 '1940 대책')은 미곡공출과 관련하여 과잉지역의 과잉미가 통제의 대상이지만 그 전량이 아니라 일부였다. '1940대책'은 한해대책의 일환으로 임시적 성격을 띠어, 통제력은 극히 제한적이었다.

1941미곡년도부터는 수이출 미곡만이 아니라 조선내 소비에 대해서도 공출하면서 본격적인 공출제도가 실시되었다. 1940년 미곡생산량은 2,150만 석으로 1939년에 비해 약 700만 석이 늘었으나, 일본은 800만 석이 감소하였다. 1940년 이전 5개년을 평균하면 377만 석이 감소한 셈이지만, 일본의 식량 악화로 '1941대책'은 "최대한 미곡을 일본에 이출함"을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40) '1941대책'에서는 '과잉지역의 과잉수량의 전부'가 총독부의 통제대상이었다. 총독부는 1인당 소비량을 동일하게 간주하고, 각 도별 1년간 소비량을 결정한 후, 과잉도의 과잉미를 관리하여 부족도에 공급하거나 이출과 특수수요에 충당하도록 했다. 각 도는 총독부의 공출명령을 받으면 해당 수량을 과잉군에, 과잉군은 과잉면에 할당하였다. 또 부족도에서도 과잉군, 과잉면에 대해 과잉도와 같은 방법으로 공출을 할당하였다.

1939년에 설립되어 공출과 배급을 담당하던 조선미곡시장주식회사와 도식 량배급조합은 '1941대책'에서 개편·강화되었다. 도식량배급조합은 해소되고 총독부의 자금알선과 손실 보상, 도지사의 강력한 감독 아래 도양곡배급조합 (도배)이 조직되었다. 양곡의 매상은 도배에서 일원적으로 이루어졌다. 도배는 총독부의 명령에 따라 수이출분은 조선미곡시장주식회사에 매각하고, 다

^{39) 〈}조선미곡배급조정령〉에 따라, 미곡업을 허가제로 하여 업자의 난립・경쟁으로 인한 배급의 불원활과 가격의 무통제를 방지하고, 총독은 긴급조치 등 필요할 때 미곡의 집하와 배급을 명령할 수 있게 되었다. 〈미곡배급통제에 관한건〉에서 총독과 도지사는 판매 목적을 갖고 소유하고 있는 미곡을 최고판매가격으로 강제적으로 판매시킬 수 있도록 했고, 배급통제상 특히 필요할 때는 미곡의 이동 혹은 판매에 관해서도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게 했다(岩田龍雄・金子永徽,〈戰時下朝鮮に於ける米穀政策の展開〉상,《식은조사월보》, 1943. 9, 13~14쪽).

^{40) 《}朝鮮經濟年報》(1941・1942년관), 266쪽.

른 도에 보낼 것은 부족도의 도배에게 매각하게 되었다. 도지사가 도내 수급을 위해 도배에게 매상시킨 것과 과잉도에서 매수한 미곡은 도배→府・郡・島배급조합→소매업자→일반소비자에게 배급되었다.41) 기구의 정비로 집하에서 배급기구 말단에까지 종래의 중매인・지방미곡상・정미업자와 같은 상업조직은 배제되어 자유거래의 여지가 극히 축소되었다. 기존의 미곡업자들은 도배급조합 혹은 부・군・도배급조합의 조합원으로 편입되거나, 혹은 일정하게 구전을 받는 소매상으로 존속하거나, 아니면 배급조합에 예속된 賃搗業者의 지위로 전략하였다.42)

통제미 이외의 나머지 미곡은 통제미 할당량의 공출이 완료되기까지는 자유시장에 출하하는 것이 금지되었다. '1941대책'부터 '조선식량정책이 고도로 통제되는 계기'를 마련하여⁴³⁾ 본격적인 미곡공출이 시작되었다.

'1942대책'에서는 통제미의 개념을 분명히 하고,44)전년도와 마찬가지로 통제의 대상을 '과잉지역의 과잉미 전량'으로 하면서 통제의 정도는 매우 엄격하게 되었다. 첫째 전년도에는 통제미의 공출이 끝나면 통제미 이외의 미곡(부동미)을 자유로 판매할 수 있었으나, 1942미곡년도부터는 자유거래가 금지되었다. 대신 부동미도 판매를 원하면 통제미에 준하여 매상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지주와 농민은 자기소유의 미곡을 자유로이 처분할 권리를 사실상 완전히 상실하게 되었다. 둘째 공출미에 대한 장려금 지급과 그에 기초한이중미가제(공출미가와 소비자미가)가 실시되었다. 또 장려금은 생산장려금(1석당 약 3円)과 출하장려금(1석당 약 1円)으로 구분되어, 공출미가는 생산자미가와 지주미가로 나누어져서, 사실상 삼중미가제가 시행되었다.

중앙과 지방의 집하 매상 및 배급기구를 일원화하기 위해, 중앙에는 조선 미곡시장주식회사를 개조하여 조선양곡주식회사를 두고, 도에는 도양곡주식

⁴¹⁾ 石塚峻、《朝鮮における米穀政策の變遷》、36~37等.

⁴²⁾ 岩田龍雄・金子永徽, 〈戦時下朝鮮に於ける米穀政策の展開(하)〉(《식은조사월 보》, 1943. 10), 3쪽.

[《]朝鮮經濟年報》(1941・1942년관), 262~264쪽.

^{43) 《}朝鮮經濟年報》(1941・1942년관), 90・96쪽.

⁴⁴⁾ ① 조선총독부 통제미:수이출미·軍공출미·道間조작미(각 도 범위를 넘어 선 미곡 융통), ② 道통제미(각 도내 과부족을 융통함), ③ 浮動米(통제의 대 상에서 제외된 미곡).

회사를 설립하기도 했다. 조선양곡주식회사의 설립은 계획에 그쳤고, 조선미곡주식회사는 도양곡주식회사에 일정하게 출자를 하면서 중앙기관으로서의역할을 모색했다. 이는 종래 각 도간의 미곡반출을 꺼리는 '블럭화'경향을 완화하려는 조치의 일단이었다. 도양곡주식회사의 설립으로 종래 도양곡배급조합에 참여했던 지주와 미곡상은 더 이상 독립적인 미곡업자의 성격을 완전히 상실되고, 단순한 출자자나 회사의 역원이 되는데 그쳤다.45)

'1942대책'으로 통제미 이외의 부동미까지 자유판매가 금지되고, 도양곡주 식회사의 등장으로 기존의 미곡업자의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 곡의 자유시장은 완전히 부정되었다.

나) 식량의 전면적인 '국가관리제' 실시와 공출(1943~1945미곡년도)

1942년의 한수해의 영향으로 1943미곡년도의 식량대책은 미곡뿐 아니라 잡곡에 대해서도 광범하게 통제되었다. 1943미곡년도 식량대책을 보면 첫째, 처음으로 소위 '자가보유미제도'가 도입되었다. 생산량에서 경작자와 지주의 자가소비량 및 소요종자량을 뺀 나머지에 대해 공출명령이 내려지는 것이다. 또 이전까지 '과잉지역'의 '과잉수량'을 대상으로 하는 통제의 원칙은 모든 지역의 '전농민의 과잉수량'을 대상으로 확대・발전되었다.46)

둘째, 종래 자유 판매되었던 碎米·屑米와 같은 불량쌀 등을 포함하여 미곡이라고 불려지는 것은 모두 통제되었다. 또 맥류·잡곡 등이 광범하게 통제되어, 미곡중심의 식량대책에서 잡곡을 더하는 종합적인 식량대책으로 전환되었다.47)

셋째, 종래 공출시기를 11월~다음해 7월까지로 하였던 것을, 이번에는 11월에서 다음해 2월까지 전량 매입하게 되었다. 이전에는 미곡의 평균출하를 위해 매상 월별로 달리했던 생산장려금도 시기에 관계없이 벼 1석당 1원 50전으로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되었다. 공출시기를 앞당겨 철저하게 전량을 공출하려는 의도였다.

⁴⁵⁾ 전강수, 〈전시체제하 조선에 있어서의 미곡정책에 관한 연구-유통통제를 중심으로->(《경제사학》14, 1990), 104~105·108쪽.

⁴⁶⁾ 전강수, 위의 글, 113쪽.

⁴⁷⁾ 岩田龍雄・金子永徽, 앞의 글(하), 9쪽.

넷째, 촌락이 공출의 단위가 되는 촌락책임공출제가 도입되었다. 공출은 개별 농가의 책임이 아니라 촌락 전체의 연대책임이었다. 촌락책임공출은 촌락내 농가 사이의 '자치적인' 통제로 공출을 유도하여, 할당된 공출미를 확보하려는 것이다. 또한 이는 식민지 권력기관에 대한 공출 불만을 촌락민 사이의 갈등으로 전환시키려는 일제의 고도한 농민통제의 수단이었다.

다섯째, 집하 배급의 유통에 대한 일원적 통제가 한층 진전되었다. 도양곡주식회사에서 매상한 총독부 통제미는 모두 조선미곡시장주식회사에 매각하도록 되었으며, 이 회사는 수이출입분만 아니라 조선내의 부족도에 대한 배급까지 담당하게 되었다. 이로써 조선미곡주식회사는 도양곡주식회사의 중앙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었다. 48) '1943대책'으로 종래 통제미의 집하와 매상이 도 차원에서 종결되었던 것과 달리, 비록 총독부 통제미에한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중앙과 지방 사이의 통제의 일원화가 크게 진전되었다. 식량의 '국가관리제' 실시 조건이 한층 확립되었다.

1943년 8월〈조선식량관리령〉(이하 식량관리령)이 공포되어, 국가가 직접 모든 통제미의 매상과 매도를 담당하게 되었다. 공출명령을 받은 농가의 수량은 조선식량영단을 거쳐서 총독부에 집중되고, 총독부에 집중된 미곡은 조선총독이 수립하는 일정한 식량배급계획에 기초하여 다시 식량영단을 거쳐서 배급되게 되었다. 식량영단은 조선미곡주식회사와 13개 도양곡주식회사를 발전적으로 해소하고 성립된 것으로, "(국가의) 정책 요구대로 사업을 경영하는" 국가대행기관이었다. 49) 식량영단은 각 도에 지부를 두고 총독부와 일체가 되어 총독부를 대표하여 활동하였다. 중앙과 지방을 일원화하는 식량영단을 통해 미곡의 국가관리체제가 성립되었다.

〈식량관리령〉아래 통제대상은 미맥류를 포함하여 주요 식량 전부(잡곡·전분·곡분·감저 및 가공된 면류와 빵 등 포함)였다. 1944년 농업생산책임제는 〈식량관리령〉아래 주요 식량에 대한 공출 강화를 뒷받침하는 증산책이었다. 또전농민(지주포함)은 자신의 소유미 중 일정량 즉, '자가소비량을 제외한 전량'을 공출해야 할 법적 의무를 지게 되었다. 할당량을 기관에 매도하지 않을

⁴⁸⁾ 전강수, 앞의 글, 114~115쪽.

⁴⁹⁾ 山内敏彦 외、《朝鮮經濟統制法全書》(大洋出版社, 1945), 559쪽.

때는 체형 혹은 벌금형의 처벌로 공출을 강제했다.50)

공출수량은 총독부에서 도, 도에서 부·군·도, 부·군·도에서 읍·면에 할당하면, 읍·면에서는 읍·면내 거주하는 경작자의 수확량과 가족수에 기초하여 '촌락을 통해 할당'하였다.51) 촌락단위 공출할당은 1942년 10월 19일 발표된 '1943미곡년도식량대책'에 따라 이미 실시되고 있었는데, 〈식량관리령〉으로 법적 뒷받침을 받게 되었다. 〈식량관리령〉의 특징은 종래 실시해온 식량대책을 법적으로 확인하고 국가관리의 방향에 따라 이를 강화하는데 있었다. 일제가 행정력을 동원하여 정책을 관철시키고, 나중에 법령을 정비하는 과정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

〈표 4〉 미곡공출의 실적

(단위 : 천석)

	생산량 a	할당량 b	공출량 c	농가보유량	1인당 보유량	c/a(%)
1941	25,527(100)	_	9,208(100)	12,319(100)	0.725(100)	42.8
1942	24,886(97)	_	11,255(122)	13,631(111)	0.795(110)	45.2
1943	15,687(61)	9,119	8,750(95)	6,937(56)	0.401(55)	55.8
1944	18,719(73)	11,956	11,957(130)	6,762(55)	0.393(54)	63.9
1945	16,052(63)	10,541	9,634(105)	6,418(52)	0.373(51)	60.0

^{*} 전강수, 〈전시체제하 조선에 있어서의 미곡정책에 관한 연구-유통통제를 중심으로->(《경제사학》14, 1990), 132쪽.

비고:연도는 미곡년도, 1인당 보유량의 단위는 석.

공출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1941미곡년도 이후 공출의 실적을 보면 〈표 4〉, 전체적으로 생산량에 대한 공출량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었다. 1943·1944 미곡년도의 공출비율이 크게 상승하고 있었다. 1943미곡년도는 촌락공출책임 제가 실시되고, 1944미곡년도부터는 공출사전할당과〈식량관리령〉이 실시된 결과, 생산량 대 공출량은 이전의 40~50%에서 약 64%로 크게 증가하였고, 할당량을 100% 공출하는 실적을 올렸다.

1944년산 미곡은 사전할당제를 뒷받침하여 생산책임제가 실시되었다. 또

⁵⁰⁾ 조선식량영단.《朝鮮食糧營團槪況》(1944). 1 · 5쪽.

⁵¹⁾ 조선식량영단,《朝鮮食糧營團槪況》, 2쪽.

공출할당량의 90%, 100%를 넘는 실적을 올린 촌락에 대해서는 장려금과 보장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촌락내의 배분은 각 농가의 초과공출량에 따라 지급되도록 했다.52) 그러나 실제로 사전할당량이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장려금과 보장금을 받는다는 것은 극히 어려웠을 것으로 본다. 1944년 미곡의 생산책임량 2,600만 석에 대해 실제 수확량은 1,600만 석에 그쳤지만, 생산량의 60%가 공출되었다. 〈식량관리령〉실시 이후 공출의 증가와 함께 농가보유량은 더욱 감소하여 생산량의 50%대에 그쳤으며 농민들의 식량곤란은 그만큼 심각할 수밖에 없었다.

다. 말단 촌락의 공출 실태와 농가 경영의 파탄

공출의 강화는 소비억제를 야기하였다. 소비통제는 1939년 대한해를 겪으면서 농촌에서 실시되었고, 도시는 1940년 5월부터 경성을 중심으로 배급통제가 실시되었다. 그리고 '1941대책'에서는 총독부가 1인당 연간 소비량을 정해 각 도에 소비수량을 지시하면, 도, 읍·면은 월별 양곡소비량을 정하고이를 매월 현재량과 대비하여 양곡의 소비를 통제했다. 節米를 위해 총독부, 각 도 이하 기관은 국민정신총동원연맹과 긴밀한 연락을 취하고, 지방에서는 절미장려위원회를 관민으로 구성하여 대용식과 혼식 등 소비규정의 철저화를 도모하였다.

1941미곡년도부터 공출이 본격적으로 실시되면서, 1940년 11~12월에 많은 혼란이 야기되었다. "자유경제로부터 단절된 농민은 도배의 매상에 의혹 … 대금지불의 지연과 강제저축, 검사의 엄밀에 우려 … 생활비의 핍박"등으로 암거래와 현물은닉으로 자기보존을 강구했다. 53) 또 같은 해 작황이 부진한 일본으로 '최대한 미곡'을 이출하기 위해, 1인당 1일 소비량 2합 3작을 2합 1 작으로 낮추어, 1941년 4월부터 7개월간 확보한 수량을 보내기로 하고, 추가 공출을 하였다. 그러나 이 무렵 벌써 농가의 양식이 떨어졌는데도, 일제는 가택수사까지 강행했다. 농민은 "이후 공출이라고 하면, 수량의 여하에 불구하고 절대로 이를 배격하는 풍조"가 생겼고, 영농기피로 대응했다.54)

⁵²⁾ 石塚峻, 앞의 책, 57쪽.

^{53) 《}朝鮮經濟年報》(1941・1942년판), 258쪽.

1942미곡년도에는 종래의 대용식과 혼식의 장려는 물론, '식량 자체의 감축'까지도 감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식량사정은 질적·양적으로도 열악할수밖에 없었다. 1943미곡년도는 공출시기를 앞당겨 지주를 포함한 모든 농민의 자가소비량 이외 전량을 공출하도록 했는데, 공출의 엄격한 시행만큼 소비는 감소할 수밖에 없었다.

모든 농가의 자가소비량 이외 전량을 짧아진 공출기간 안에 공출시키기 위해, 일제는 농가의 생활권인 촌락 자체를 통제하는 조치를 취해, 부락연맹 이사장의 책임 아래 촌락 단위 공출책임제를 실시했다. 부락연맹마다 이사장 은 도→군→면을 통해 촌락에 할당된 일정량을 직접 호별 할당을 하거나. 각 애국반에 할당하면 각 애국반에서 호별 할당을 하였다. 이사장은 직접 혹은 애국반장을 통해 애국반원들을 동원하여 할당량을 이사장 또는 애국반장의 마당이나 소재 촌락의 일정한 장소로 집결시켰다. 그리고 공동탈곡과 조제가 끝나면. 공출미곡은 현장에서 바로 매상장소로 운반되어 도양곡주식회사로 인도되었다. 군면 직원·경찰·농회 직원 등으로 구성된 독려반은 공출 전에 선전과 독려를 위해 마을에 오거나 공출 당일 참석하기도 했다. 또한 공출 성적을 올리기 위해 면포·고무화 등 생필품의 배급과 연계시키기도 했다.55) 1943미곡년도에는 할당한 공출량을 완전히 거두기 위해. 총독부는 공출성적 이 우수한 군・읍・면・촌락에 대해 면포・양말・타올 등 생활필수품. 비료 와 농기구 등 영농상 필요한 물자. 생선류 등을 특배 혹은 우선 배급하기로 했다.56) 이로써 공출과 배급의 연계는 전국적으로 보편적인 현상이 되었다. 이로써 1943미곡년도는 생산량 1.568만 석으로 전년도보다 900만 석 가량이 격감했는데도 불구하고, 생산량의 55.8%를 공출할 수 있었다.

농민들의 공출에 대한 불만과 저항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 생산량을 초월한 과도한 할당량을 지적할 수 있다. 권력기관이 계 산한 수확예상량과 실제수확량 사이에는 막대한 차이가 발생했다. 관리들

⁵⁴⁾ 大藏省 管理局、《日本人の海外活動に關する歷史的調查》、52等、

⁵⁵⁾ 法務局 刑事課, 《現下食糧事情ヲ繞ル治安對策》(정早기록보존소 소장문서 no. 194, 1942), 534~536・546~548・619・627~629쪽.

⁵⁶⁾ 岩田龍雄・金子永徽, 앞의 글(하), 10쪽.

의 '탁상 숫자 조사'와 '행정 기술의 졸열', '업무 성과의 부풀리기' 등이 원인이 되어, 과도하게 할당이 되었다. 장흥군의 경우, 1942년 보리 수확은 전년에 비해 2할이 감소했는데도 공출량은 이전보다 9배가 넘는 경우까지 야기했다.57)

이런 과도한 할당은 당연히 공출 부진으로 이어졌으며, 일제는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군면 직원과 특히 경찰을 앞장 세워 무리하게 공출을 강행했다. 황해도 경찰부는 1942년 8월 관할 경찰서에 공출독려에 참가할 것과 예정수량의 확보와 관련된 지침을 하달하였다. 면 단위 주재소는 경찰서에서 지원나온 경찰에게 주재소를 맡기고, 지방 실정에 밝은 주재소 순사들이 혼락별로 공출확보에 나섰다. 경찰은 이전부터 '청결일' 행사라고 하여 각 집안의 대청소 상황을 검사하였지만, 이면으로는 그 집안의 구석구석을 살피면서 때로는 은신처가 될만한 곳 혹은 양식 보관 장소 등을 파악하고 있었다. 따라서 경찰의 활동이 강한 지역은 성적이 다른 지역보다 좋았는데, "공출사무에서 절대 경찰원조가 없어서는 도저히 중책을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정도로, 공권력을 앞세워 폭력적 공출이 강행되었다.58) 자가소비량을 제외한 전량을 공출시킨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가소비량까지 공출당하는 사태도 적지 않았다. 또 즉시배급을 약속하고 전량을 공출시키는 경우도 있었다.

무리한 공출 강행에 따른 농민들의 대응 양상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공출 기피이다. 탈곡 제조하여 미리 먹어버리거나, 집안 혹은 산중마을 밖으로 은닉하여 공출을 기피하는 경우이다. 이런 대응은 당시 매우 보편적인 현상이었다. 행정기관과 경찰이 연합하여 부족한 할당량을 채우는 과정에서, 때로는 이미 책임량을 완수했는데도 다시 가택수색을 당하고 추가로 공출당하는 경우도 빈발했다. 이런 경우는 反官 감정을 크게 자극했다. 공출을 완료했든 못했든 관의 압력을 받고 시달리는 것이 마찬가지가 되자, 농민들은 끝까지 기피하다가 "얼마간 공출을 하여, 책임을 면하는 것이 득책"이라는 처세술까지 터득하게 되었다.59)

⁵⁷⁾ 法務局 刑事課, 《現下食糧事情ヲ繞ル治安對策》, 308・309・432・450쪽.

⁵⁸⁾ 法務局 刑事課,《現下食糧事情ヲ繞ル治安對策》, 186・190・221쪽.

둘째, 怠業 혹은 경작지 감소이다. "만약 풍년이어도 전부 공출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소지하는 미곡은 결국 똑같다"고 하듯이, 애써 노력해도 자신에게는 잘해야 자가소비량만 떨어지는 실정에서 생산의욕은 감퇴될 수밖에 없었다. 또 "자신의 필요 이외의 농지를 경작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신이필요한 만큼만 농업하면 좋(다)"며 소작 경지를 줄이는 경향도 많았다.60)

셋째, 離農이다. 1942년 경북 농가 호수 34만 호 중, 17만 7,000호는 5반보 미만의 영세농이고, 그 중 6,500호는 노동 겸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이들은 식량통제 아래 배급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서 식량부족으로 때로는 소작을 그만두고 이농하는 계층이기도 했다.⁶¹⁾ 이런 상황에서 "관내 알선되고 있는 노무자의 공출"에 "소작인 등이 당국에 탄원하는 자가 할당수의 3~4배"에 달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⁶²⁾

넷째, 공출에 대한 정면 저항이다. 경찰을 비롯한 행정기관의 무리한 공출 실행에 대해 당국자도 "이제까지 상당히 강제적으로 착취한 실상에 있음"을 인정할 정도였다.⁶³⁾ 이런 공출에 대해 농민들은 직접적인 행동에 나서기도 했다. 경남 울산군에서는 생산자·소비자를 가릴 것 없이 소지한 양식까지 우선 공출시킨다는 방침 아래 매상을 강행하자, 주민 300명(남자100, 여자 200)은 면사무소에 가서 양식의 배급을 교섭했고, 면장과 경찰관은 "새로운 事案의 발생이 예상"되자 서둘러 배급을 알선하여 해산시켰다.⁶⁴⁾ 함북 명천군 하고면 반산동 농민 약 60명은 구장·자위단장을 중심으로 식량문제를 토의한 뒤, 전원이 면사무소에 가서 식량을 요구하였다. 관할 명천서에서는 사태를 중시하고, 현장에서 高粱 3포대를 특배하여 사태를 진정시켰다고 한다.⁶⁵⁾

당시 식민지 권력기관은 식량공출로 인한 치안불안을 크게 우려했고, 도ㆍ

⁵⁹⁾ 法務局 刑事課、《現下食糧事情ヲ繧ル治安對策》、357等、

⁶⁰⁾ 法務局 刑事課、《現下食糧事情ヲ繞ル治安對策》、135・222쪽、

⁶¹⁾ 法務局 刑事課、《現下食糧事情ヲ繞ル治安對策》、360쪽、

⁶²⁾ 法務局 刑事課、《現下食糧事情ヲ繞ル治安對策》、231쪽、

⁶³⁾ 法務局 刑事課,《現下食糧事情ヲ繞ル治安對策》, 345쪽.

^{64) 〈}緊急食糧對策實施/反響〉(《經濟治安日報》50, 1942), 301 쪽.

⁶⁵⁾ 法務局 刑事課、《現下食糧事情ヲ繞ル治安對策》、161쪽、

군면·경찰·헌병까지 사찰과 감독, 순시를 할 뿐 아니라, 사복원을 밀파하거나 혹은 호구조사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민심의 동향을 파악하는데 분주했다. 일선 경찰서와 주재소를 통해 도 경찰부와 경무국, 지방법원 등 상급기관에는 우려할만한 치안상황에 대한 보고가 계속되었다. 위와 같이 농민의정면 저항 움직임을 조기에 해결하려고 시도하기도 했지만, 다른 경우는 저항자에게 신체적 가혹행위까지 가하기도 했다. 또 〈식량관리령〉의 공포로 공출거부자에 대한 처벌이 합법화되었다.

공출 미곡의 공정가격은 평균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하였고, 일반 필수품의 구입가격 등과 비교해도 저렴했다. 공출미의 실질매상가격이 현미 1석당 1943~1944년 각각 56원, 61.9원인데, 평균생산비는 60.6원, 69.5원이었다.66) 또 물가지수와 현미 평균가격의 지수를 비교하면, 1941년 6월 도매물가지수 171.04에 대해 현미 가격지수는 135.95이다.67) 농민들은 자가소비량까지 포함된 미곡을 생산비에도 못미치는 가격으로 공출당하였다. 또 탈곡하지 않은 벼를 싼가격으로 공출하고, 이후 배급가격은 공출가격보다 상당히 비싸 농민의 불평을 크게 샀다. 예를 들어, 탈곡하지 않은 粗麥 1가마니를 직접 탈곡하면 정맥 2두 4승을 얻는데, 이를 공출하고 받은 대가로 배급 정맥을 구입하면 1두 4승에 불과했다.68) 또한 일제는 공출 대가가 바로 시중에 풀려인플레이션 야기를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전액 지급하지 않고 강제로 원천저축을 강행했다. 1941년의 경우 미곡 공출대금의 13.5%가 강제 저축되었고 1942, 1943년에는 그 비율이 각각 14%, 26.6%로 증가하였다.69) 이로써 전시체제하 미곡공출제의 수탈성은 분명하게 드러났다.

일제는 제국 전체의 식량정책에서 볼 때, "조선미는 생산과 수요의 탄력성이 크다"고 했다.70) 조선미의 탄력성은 증산과 소비 감소로 담보되었다. 1943미곡년도에서는 연령별·노동종류별 미곡의 차등배급제를 실시하여 소

⁶⁶⁾ 전강수, 《식민지 조선의 미곡정책에 관한 연구》(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3), 200쪽.

⁶⁷⁾ 岩田龍雄・金子永徽, 앞의 글(하), 12쪽,

⁶⁸⁾ 法務局 刑事課、《現下食糧事情ヲ繞ル治安對策》、11等.

⁶⁹⁾ 조선금융조합연합회、《國民貯蓄造成運動に關する資料》5(1945), 100쪽.

^{70) 《}朝鮮經濟年報》(1941・1942년판), 247쪽.

비통제를 엄격히 강화하기도 했다. 또 미곡의 소비를 대체할 수 있는 잡곡의 중요성이 커졌다. 1940년 7월 〈잡곡등배급통제규칙〉의 공포로 맥류 등도 통제대상이 되었다. 만주의 잡곡은 조선미 이출량을 강화하면서 그 대체 양곡으로 수입되었으나 수송상의 문제 등으로 여의치 않았다.

⟨표 5⟩

맥류 공출상황

(단위 : 천석)

내역	생 산 량	할당량	공출량	농가보유량	생산량에 대한 비율	
연도	0 T 9			공출실적	농가보유	
1940	9,236(100)	1,650	1,415(100)	7,821	15.3%	84.7%
1941	8,565(92.7)	2,674	1,699(120)	6,866	19.8	80.2
1942	7,305(79.1)	2,853	1,529(108)	5,976	18.2	81.8
1943	6,323(68.5)	1,638	1,593(113)	4,730	25.2	74.8
1944	8,142(88.2)	3,221	3,076(217)	5,066	37.8	62.2

^{* 《}조선경제통계요람》, 37쪽.

《표 5〉를 보면, 맥류 생산량이 1940년 923만 6,000석(100)에서 1944년에는 814만 2,000석(88.2)으로 100만 석 이상 감소하였는데 반하여, 공출할당량은 165만 석에서 322만 1,000석으로, 실제 공출량 역시 141만 5,000석에서 307만 6,000석으로 2배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생산량에 대한 공출량의 비율은 15.3%에서 37.8%로 증가하는데 반하여 농가 보유량은 84.7%에서 62.2%로 감소되는 현상을 나타냈다. 그리고 미곡의 1인당 소비량은 《표 4〉와 같이 1941년 0.725석에서 1945년 0.373석으로 50%가 감소했고, 미곡과 잡곡을 합친 1인당 소비량은 1941년 1,439석에서 1944년 1,073석으로 줄었다.71)

식량부족으로 공장과 작업장에서 노동자의 능률 저하의 문제가 크게 대두되었고, 도시의 배급 사정도 갈수록 악화되었다. 농가의 경우는 식량을 생산한다는 이유로 원칙적으로 배급이 금지되어, 식량사정이 더욱 악화되었다. 1942미곡년도부터는 자유거래가 완전히 금지된 점도 식량악화를 한

⁷¹⁾ 조선은행조사부, 《조선경제연보》Ⅲ, 28쪽.

총 심화시켰다. 경북 상주군 사벌면은 호수 1,926호의 대부분이 농가인데, 비농가의 식량과 기타 용도로 배급을 실시하자, 배급을 받으려고 집합한 자가 약 500명이었다. 대부분 농가인데 전체 호수의 1/4이 배급을 요청하는 현실은 전시농업정책의 파탄을 증명하는 것이다. 500명 중 331명에게 배급되었다.72)

종래부터 춘궁기를 넘길 대책으로 초근목피가 구황식물로 취급되어 왔다. 이 시기 총독부는 농민들에게 이것을 주식으로 할 것을 조직적으로 권장하는 등 전시식량정책의 하나로서 초근목피의 광범한 활용을 지도하였다.73) 해초·山野草·樹實 등을 대용식으로 만들기 위해, 道의 통제 아래 아동·부녀자 등이 조직적으로 동원되어 채취하였다.74) 1942년 명천지방은 농가총 호수 14,430호 중 초근목피를 '주식'으로 하는 경우가 1,646호, 즉 1할 이상에 달하였다.75) 가까이에서 초근목피를 구할 수 있다는 점도 공출을 강화시켰던 요인이었다. 이렇게 초근목피를 식용하면서 독이 있는 풀을 먹고 그것을 해독하기 위해, 소를 잡아먹어야 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또 영농비료로 배포된 대두박을 죽에 섞어 식용하는 경향조차 늘어났다.

3) 노동력 동원정책과 노동력 수탈

(1) 노동력의 수요 증대와 노동력 조사

중일전쟁 발발 이래 조선은 소위 대륙병참기지로서 군수 생산력확충 중심의 산업이 발전하여 노동자의 수요도 급증하고 있었다. 여기에 1939년부터 실시되는 일본의 노무동원계획으로 조선인 노동자의 요구는 해마다 증가하였다.

총독부는 국내외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1940년부터 노무동원계획을 수립했다. 1940년 9월 말 현재 조선내 노무동원계획이 있는 산업을 보면, 군수 1

⁷²⁾ 法務局 刑事課、《現下食糧事情ヲ繞ル治安對策》、359쪽、

⁷³⁾ 井垣圭復,《救荒指南》(本草榮養研究所, 1943).

⁷⁴⁾ 近藤釖一 편、《太平洋戰下終末期朝鮮の治政》(1961), 92零.

⁷⁵⁾ 法務局 刑事課、《現下食糧事情ヲ繞ル治安對策》、479等.

만 명, 생산력확충 35만 명, 수출 12만 명, 운수통신업 35만 명, 토목건축업 28만 명, 생활필수품 및 생산력확충 부대산업 16만 명으로 총 127만 명(납자 115만 명, 여자 12만 명)이었다. 그리고 이들 산업부문에 대한 1940년과 1941년 노동자 신규수급계획은 〈표 6〉과 같이 각각 42만 5,000명, 42만 명이었다. 국내 군수 생산력확충 방면 등에 약 30만 명, 일본 등지로 13만 정도가 필요했다. 또 공급 방면에서 농촌에서 동원할 수 있는 비율이 전체 중, 약 59% 66%를 차지하고 있다.76) 농촌에서 동원되는 이들은 기술이 없고 숙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단순하지만 고된 육체 작업에 배치되었다.

〈표 6〉 1940·1941년도 노동자 신규수급계획

내	역	연 도	1940	1941	
		군수 생산확충, 그 부대산업	148,000명	167,000명	
	0	위의 감소보충요원	150,000	123,000	
수	요	일본・사할린 등지	97,000	100,000	
		만주개척민	30,000	30,000	
		소 계	425,000	420,000	
		신규학교졸업자	57,000(13)	81,000(19)	
		농촌에서 공출	250,000(59)	277,000(66)	
<i></i>	공 그	도시에서 공출, 물자동원관계	110,000/90)	54,000(13)	
0		등의 이직자	118,000(28)		
		일본으로부터 이주자		8,000(2)	
		소 계	425,000(100%)	420,000(100%)	

^{* 〈}제77회 제국의회설명자료〉, 《大野綠一郞文書》 no. 1226.

한 자료에 따르면 자연 증가하는 인구수는 연평균 36만 명이며, 그 중 생산 인구의 자연증가는 10만여 명이라고 한다.77) 이에 따르면 위와 같은 국내외

⁷⁶⁾ 권병탁은 해외로 강제 동원되었다가 귀국한 사람 중에서 414명을 무작위로 표본 조사한 결과, 동원 당시 85.5%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권병탁, 《한국경제사》, 박영사, 1984, 457쪽).

⁷⁷⁾ 조선은행조사부、《大戰下の半島經濟》(1944)、26쪽、

신규노동력 40만 명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존 인구구성을 재편해야 했다.

일제는 조선인 노동력의 수급원으로 다음을 검토했다.78) 첫째 직업별 인구의 분배로 무업자, 급하지 않은 부분의 직업종사자, 농업종사자 등에서각 직업별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일정 비율에 따라 공출가능인구를 산정했다. 〈표 6〉의 '도시에서 … 이직자'가 공급인원의 28%・13%를 차지하는점은 이 직업별 인구의 분배방식에 근거한 것이다. 1944년부터 본격적으로전개된 기업정비도 노동력 동원의 수단이었다.

둘째, 농촌재편성의 차원에서, 각 지방별로 농가 1호당 이상경지면적을 상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전국 이상농가 수를 산출하여, 현재 농가 호수에 서 이상농가 수를 뺀 나머지를 과잉호수로 측정하여 다른 산업으로 돌리는 방법이다.

셋째, 총독부는 1938년 이래 매년도 상당한 예산으로 노무자원조사를 실시하고 있었는데, 그 방법은 전국 각 동리에 대개 노무자원조사원 1명을 두고, 일정한 경지면적 미만의 경작에 종사하는 소작농과 농업노동자를 실지조사하여, 일정한 표준에 따라 출가가능자수과 출가희망자를 파악하고 있었다.

일제는 도시와 농촌인구를 대상으로 동원가능한 인원을 조사하는 한편, 노동력의 양과 질·소재를 정확히 파악하여 노동력 수탈의 기초자료로 이용하기 위해, 〈국가총동원법〉제21조에 근거하여 직업능력을 조사하고 등록을 강제시켰다. 1939년 1월 공포된 〈국민직업능력신고령〉은 16~50세 미만의 일정한 기능자를 등록대상으로 하였는데, 1941년 6월 개정으로 모든 직업에 종사하는 자로 적용대상이 확대되었다. 또한 1941년 10월 청장년국민등록제의 실시로 기능의 유무와 상관없이 16~40세 미만의 남자는 등록이 의무화되었다. 그리고 1944년 2월 〈국민직업능력신고령〉의 개정으로 기능자등록제와 청장년국민제가 통합되어 국민등록제가 되었고, 등록범위는 12~50세 남자로확대되었다.79) 등록된 기술자와 국민등록자의 현황을 보면, 기술자(기능자)

⁷⁸⁾ 조선총독부 사정국 노무과, 〈朝鮮の勞務に就て〉(《朝鮮勞務》3-2·3, 1943. 8), 12쪽

⁷⁹⁾ 안병직, 〈'국민직업능력신고령'자료의 분석〉(안병직·中村哲 공 편저, 《근대조

는 1939년 18만 7,559명, 1940년 24만 1,259명, 1941년 31만 4,053명, 1942년 36만 9,503명, 1943년 39만 4,093명, 1944년 5월에는 40만 5,067명으로 5년 동안 2.2배가 증가하였다. 또 1943년 9월 현재 등록된 남자 청장년은 일본인까지 포함하여 319만 4,969명이며, 1944년 등록예상수는 687만 5,545명이었다.80) 1944년에는 기능자와 청장년 등록제가 통합되고 등록대상도 확대되어기술자 40만 명과 함께 청장년 약 680만 명이 등록될 예정이었다.

국민직업능력신고제가 노동력에 대한 개별적 조사라면 1941년 4월 〈노동기술통계조사령〉은 노동력에 대한 종합적이고 통계적인 조사로, 사업주를 단위로 전국 노동자의 인원과 이동상황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노동기술통계조사는 1941년 8월부터 1944년 6월까지 4회에 걸쳐 실시되었고, 그결과는 노동력 동원과 임금통제의 근거자료로 활용되었다.81) 또 1942년 3월 1~10일 사이에 만 18~19세의 청년을 대상으로 체력검사가 전국 일제히 개시되었다.82) 일제는 이렇게 노동력 조사를 통해 노무동원의 기초자료를 준비했다.

당시 농촌이 '노동력 저수지'인 만큼, 일제는 농촌 과잉노동력의 소재와 인원을 조사했는데 그중 1940년 3월부터 실시한 '노무자원조사'를 보면 다음과 같다. 1936년도의 각 도 경지면적을 이상면적으로 나누어 이상호수를 산출하고, 이것을 1939년도 현재 호수와 비교하여 과잉호수를 파악한 것이다. 이결과에 따르면 1939년 농가 호수 305만 호의 1/3에 해당하는 102만 호가 과잉호수였다. 남자 24만 2,316명, 여자 2만 767명, 합계 26만 3,083명의 출가(전업)희망자수도 조사했다. 이 조사에 대해 당시 경남북도의 도지사는 '사실이상의 숫자'라고 지적했듯이 정확한 숫치는 아니었지만,83) 일제는 이런 조사 내용을 노무동원의 기본자료로 삼았다.

선 공업화의 연구》, 일조각, 1993).

김성례·강정숙·서현주, 〈일제말기 노동력 수탈정책-법령을 중심으로〉(《일 제식민지정책연구논문집》, 광복50주년기념사업회, 1995), 8~11쪽.

⁸⁰⁾ 近藤釖一 勇、《太平洋戰下の朝鮮》4.175~177等.

⁸¹⁾ 곽건홍, 《일제하 조선의 전시 노동정책 연구》(고려대 박사학위논문, 1998), 58쪽.

⁸²⁾ 국사편찬위원회, 《日帝侵略下韓國三十六年史》 13(1978), 64쪽.

⁸³⁾ 海野福壽、〈朝鮮の勞務動員〉(《近代日本と植民地》 5. 岩波書店, 1993), 114쪽.

(2) 노동력 동원의 방식과 규모

가. 모집 · 관알선 · 징용

일본정부는 군수산업의 노동력 수요 급증과 병력동원에 따른 노동력부족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1939년부터 노무동원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 중 의 하나가 조선인 노동자의 '이입'과 생산현장에 대한 배치였다. 총독부는 국 내외 노동력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노동력의 동원방식을 모집·관알선·징 용 등으로 강화하였다.

첫째, '모집'은 1910년 이래 일본의 탄광, 댐공사 등에 필요한 조선인 노동자를 동원하는 방식이었다. 1939년 7월 일본정부는 조선인 8만 5,000명의 '공급목표'를 포함한 1939년도 노무동원계획을 결정하였다. 이로써 전시체제 '모집' 방식의 노무동원이 개시되었다. 모집수속은 우선 후생성으로부터 고용인가를 받은 사업주가 조선총독부의 모집허가를 받아, 지정된 지역에서 할당수를 모집하여 집단 도항시키는 것이다. 노무고용자·고용조건·모집지역·모집기간·수송방법 등 모두가 후생성, 조선총독부와 그 하부기관의 계획과 통제 아래 이루어졌다.

1939년 대한해의 구제사업으로 총독부는 이재민 중 5만 1,176명을 조선내 토목건축공사, 광산 방면의 노동자로 취업을 알선하고 또 일본 2만 2,608명, 만주개척민 849호를 알선, 이주시켰다.⁸⁴⁾ 1939년 일본으로 모집방식의 동원이 이루어졌던 배경에는 이재농민을 포함한 영세농이 존재하였다.

둘째, '관알선'이다. 총독부는 국내외 노동력 수요 급증에 대한 동원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권력의 조직적인 개입이 필요하자, 1934년부터 수행해 오던 관알선을 재정비했다. 1940년 12월〈조선직업소개소령〉에 따라 부·읍·면 행정기관은 직업소개사업에 종사할 수 있게 되었고,85) 또 같은 해 10월 총력운동의 실시로 지방연맹의 조직망이 구축되어, 필요한 노동력을 동원할수 있는 제도장치가 보완되었다. 1941년 6월 조선노무협회가 총독부 산하에

^{84) 《}朝鮮經濟年報》(1941·1942년판), 62쪽. 조선총독부 사정국 사회과, 《昭和十四年旱害誌》, 181~182쪽.

⁸⁵⁾ 허수열, 〈조선인 노동력의 강제동원의 실태-조선내에서의 강제동원정책의 전개 를 중심으로-〉(차기벽 엮음, 《일제의 한국 식민통치》, 정음사, 1985), 320쪽.

설치되어 동원사무가 일원화되고 강화되었다. 노무동원기구가 보강되어 가자, 총독부는 1941년 3월 〈조선인노무자 내지이입알선요강〉을 공포하고 1942년 2월 '관알선' 방식에 따라 일본으로 노무동원을 실시하였다.

일본내 알선수속은 일본에서 고용인가를 받은 사업주가 제출한 알선신청에 대해 총독부는 사정 승인한 인원을 도별로 할당하고, 할당받은 도는 군과직업소개소를 통해 면에 인원을 할당하여 조달하는 것이다.86) 조선내 알선수속은 사업주가 노동자사용계획서를 11월 말일까지 사업지를 관할하는 도에 제출하면, 도는 이에 의거하여 '所要勞動力數調書'를 작성하고, 이 조서와 '노무자원조사'의 결과에 의거하여 '도내노무조정계획'을 수립 후, 이를 12월 20일까지 총독부에 보고하도록 되었다. 총독부에서는 각 도의 노무조정계획 서를 수합하여 '본부노무조정계획'을 수립하여 다음해 1월 20일까지 각 도에시달한다. 도는 부・군을 통해 읍・면에 할당하고, 읍・면은 '出稼(轉業)희망자' 및 '출가(전업)가능자' 명부를 작성하여 두었다가, 국민총력읍면연맹 및부락연맹의 협력을 받아 노동자를 공출하는데, 이 때 경찰과 긴밀히 연락하여 위확히 공출하도록 되었다.87)

이같이 식민지 행정기구를 축으로 노동력 조달기구의 계통화·일원화는 할당인원에 대한 실행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조선인 노동자의 일본 이입 계획수는 1939년 8만 5,000명, 1940년 8만 8,000명, 1941년 8만 1,000명에서 관알선이 시작되는 1942에는 12만 명으로 크게 늘었으며, 실제 이입수도 1941년 5만 3,482명에서 1942년 9만 6,010명으로 계획수에 대한 이입실수의 비율도 66%에서 80%로 증가하였다.88)

셋째, 〈징용령〉은 1939년 7월 공포되어 1944년까지 다섯 차례 개정되었다.

^{86) 〈}勞務動員實施計劃ニ依ル朝鮮人勞務者ノ內地移入斡旋要綱〉(《復命書綴》, 정부 기록보존소 소장문서 no. 88-12).

⁸⁷⁾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勞動者斡旋要綱並ニ同細則》(1941)、《復命書綴》소수. 각 도에서도 관알선의 내부지침이 마련되었다. 경상남도의 경우, 공출할 수 있는 노동자를 경찰과 함께 부락연맹마다 그 명부를 작성한 뒤, 읍・면은 할 당이 있을 때마다 명부에 따라 노무자를 선출하여 조달하고 있었다(경상남도 노무과、《勞動關係法令集》, 1944;樋口雄一、《戰時下朝鮮の農民生活誌》, 247~249쪽).

⁸⁸⁾ 海野福壽, 〈朝鮮の勞務動員〉, 106쪽.

1943년 개정 이전에는 특별히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인원 모집의 보충적 방법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발동하도록 되었는데, 1943년 개정으로, "국가의 요청에 기초하여 제국신민으로 하여금 긴요한 총동원업무에 종사시킬필요가 있는 경우"는 자유모집으로 소요인원의 확보 여부와 관계없이 〈징용령〉을 발동할 수 있게 되었다. 89) 징용은 국가권력으로 노무를 일방적으로 명령하고, 피용자는 그 의사와 관계없이 노무에 복무해야 하며, 징용을 거부할 때는 처벌을 감수해야 했다. 징용은 "일정수의 인원을 반드시 채우지 않으면 안되며, 징용에 의존"한다고 하듯이 90) 다른 동원방식보다 가장 강력한동원력을 발휘하여 동원계획을 완전히 달성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다나카(田中) 정무총감 스스로 밝혔듯이 관알선도 본인의 의사를 무시한 '강제공출'인 위기 점에서는 징용과 같지만, 법적 제재가 뒷받침되지 않은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징용이 실시되면서 일부를 제외하고 다른 방식보다 징용으로만 노무동원을 도모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게 되었다. 92)

조선에서는 정용은 1941년 군요원에 한해 실시되었다. 근로보국대와 같은 광범한 동원수단이 있고, 조선민중의 반발이란 정치적 이유도 고려하여 전면적인 실시는 1944년 2월 이후부터였다. 우선 공장·광산의 현원징용이 있었고, 8월부터 일반노무자의 정용이 시작되었다.

나. 근로보국대

모집·알선·정용이 주로 정규 노동력을 조달하는데 사용되었다면, 근로보 국대는 정규 노동력을 보완하기 위한 수단이며 주로 국내 동원을 목적으로 한다. 근로보국대는 1938년 6월 정무총감이 〈학생생도의 근로봉사작업실시에 관한 건〉이란 통첩을 발표하면서 시작되었다. 학생들이 근로보국대에 편입되 어 생산활동에 동원되면서, 각 도에서도 일반인을 대상으로 근로보국대를 조 직하였다. 이 때는 국민정신총동원운동의 전개와 맞물려 정신동원 즉 황민화 운동의 성격이 강했고, 노동력 활용은 다소 이차적인 성격을 띠었다. 그러나

⁸⁹⁾ 山内敏彦 외. 《朝鮮經濟統制法全書》, 463쪽.

⁹⁰⁾ 大藏省 管理局、《日本人の海外活動に關する歷史的調査》、72\.

⁹¹⁾ 국사편찬위원회,《日帝侵略下韓國三十六年史》13,644쪽.

⁹²⁾ 大藏省 管理局、《日本人の海外活動に關する歷史的調査》、68~69・72쪽.

1939년 후반부터 토목·건축노동력이 부족한 형세를 보이면서 근로보국대는 노동력 동원방식으로 대두되었다. 1940년 근로보국대의 출동인원은 경기도 3만 2,446명, 충청북도 3,561명, 전라남도 6만 4,078명, 경상북도 1만 6,583명, 황해도 6만 7,797명, 평안남도 1만 7,380명, 평안북도 25만 6,480명, 강원도 11만 6,362명, 함경남도 1,054명, 함경북도 7만 6,740명, 합계 65만 2,481명이었고, 이외 경남에서도 일부 근로보국대의 활동이 있었다.93) 1940년의 출동실적과 그해 말 총력운동의 전개는 근로보국대의 결성에 하나의 전기가 되었다.

원칙적으로 모든 개인이 편입된 총력운동은 전시동원정책의 실천기구였다. 총력연맹은 1941년 9월 21일~11월 20일까지 國民皆勞運動을 전개했는데, 이를 계기로 총력운동의 실천조직으로서 근로보국대가 전국적으로 결성되었다. 개로운동은 현재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 또 무업자 등을 포함하여 노동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노동을 통한 '報國'을 주입시키면서, 노무동원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기간에 모든 사람은 소속된 애국반 단위의 근로작업에 참여해야 하고, 연령 14~40세의 남자, 14~25세의 미혼 여자는 근로보국대를 조직하도록 되었다. 총력연맹은 〈근로보국대 조직요강〉을 하부연맹을 통해 하달했다.

'요강'에 따르면, 애국반에서는 위의 해당 연령의 반원을 선정하여, 정동리부락연맹단위로 근로보국대를 조직하되, 남자부와 여자부를 두었다. 정동리부락연맹단위 근로보국대가 모여 부·읍·면 단위 근로보국대를 조직하였다. 임무는 ① 물자공출, 물자증산, 군사상 혹은 국가적으로 필요한 토목건축 및운반작업 등 국가적 봉사작업, ② 도로·교량의 건설 및 수리, 하천의 수리, 황무지 개척 등 공공적 봉사작업, ③ 노무인적자원의 보급 등이었다.94) 근로보국대는 규율 있는 단체활동으로 ①·②의 임무를 수행하여 예비 훈련을한 뒤 '노무인적자원의 보급'이라 하여 관알선·징용으로 동원될 수 있는 정지작업의 역할을 했다.

1941년 11월 〈청장년국민등록제〉의 시행으로 16~40세의 남자가 등록되어

⁹³⁾ 宮孝一、〈朝鮮の皆勞運動〉(《朝鮮勞務》、1941、1)、15~16쪽、

^{94) 〈}제77회 제국의회설명자료〉(《大野綠一郞文書》, no. 1226).

근로보국대로 조직할 수 있는 인원이 파악되었다. 그리고 일제는 국민개로운 동으로 전국적으로 봉사적인 개념의 노동운동을 일으켜 근로보국대 결성의 분위기를 조성한 뒤, 11월 21일 〈국민근로협력령〉을 공포하였다. 노동가능 인원이 조사 파악된 상황에서, 이 협력령으로 근로보국대의 조직과 활동이 법적인 뒷받침을 받고 전국적으로 제도화될 수 있게 되었다. 국민개로운동과 〈국민근로협력령〉의 공포로 노무동원계획은 이제 '국민동원계획'으로 전환되었다. 부족한 노동력을 모집하여 배치하는 정도가 아니라, 누구나 '자기전체 능력'을 사업장과 작업장을 통해 '국가에 바치는' '근로의 국가본위성' 즉 소위 '황국근로관'에 입각한 국민동원이 시작된 것이다.

이상과 같이 국민동원계획 아래 청장년 남자를 동원할 준비공작이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에서, 1941년 12월 〈노무조정령〉이 시행되고, 1942년 2월 관알선의 노무동원이 시작되었다. 총독부는 할당한 노동력을 말단 부락연맹을 통해 조달받아 필요한 곳에 강권으로 편제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국민근로협력령〉은 1941년 12월부터 일본에서는 실행되었지만, 조선에서는 1943년까지 미루어졌다. 전국적으로 개인의 일상에까지 침투한 총력운동의 지휘 아래 근로보국대를 동원하여 노동력을 충족할 수 있었던 것도 한 원인이었다. 그 사이 전라북도는 1942년 4월〈근로보국협력령〉의 발동에 대비하여, "금후 여하한 난관에 부딪쳐도 할당 전량의 공출에 유감없기를 기(한다)"는 방침에 따라 기존 근로보국대의 강화와 별도의 근로보국특별대를 편성하는 조치를 취했다.95)

전라북도는 1941년 4월 〈농촌노동력조정요강〉에 따라 조직된 공동작업반이 활동하고 있는 가운데, 1941년 7월 통첩으로 국민총력근로보국대를 조직했다. 이에 근로보국대는 공동작업반 단위로 결성되어 한 부락연맹에 몇개의 근로보국대가 있고, 60세 연령자까지 편입되어 그 활동이 원활하지 못했다. 이런 문제를 시정하고 근로보국대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1942년 4월 〈근로보국대강화철저방침〉이 나왔다. 그 내용을 보면, 첫째 근로보국대는 항구적 조직이 되어야 하므로 국민개로운동 강조기간 등과 같은 특별한

⁹⁵⁾ 全羅北道,《勤勞報國隊强化方針》(1942,《復命書綴》에 소수).

기간만이 아니라, 연간 지속적으로 대원의 훈련과 근로작업을 실시한다. 둘째 농촌 부락연맹에서는 공동작업반과 분리하여 부락연맹 근로보국대를 조직하되, 연령은 남자 40세 미만, 여자 25세 미만을 준수하도록 했다. 정동리부락연맹 근로보국대장은 근로보국대원의 명부를 작성하고, 그 일부는 읍면연맹근로보국대장이 보관하도록 했다. 셋째 도 혹은 부·군에서 근로보국대를 동원시킬 필요가 있을 때는 부군국민총력연맹에 근로보국대의 출동을 지시하고, 부군연맹은 읍면근로보국대장에게 출동을 명령하게 되었다. 그리고읍・면은 명부에 기초하여 정동리부락연맹 근로보국대를 출동시킨다는 것이다. 출동기간은 30일 이내였다.

새로 결성되는 근로보국특별대는 첫째 국가의 중요업무에 동원시킬 수 있는 체제를 정비하기 위해 근로보국대원 중에 선발하여 조직하는 것이다. 둘째 특별대는 매년 총독부와 전라북도의 노무동원계획에 따라 대원·인원을 각 부·군에 지시하여 조직하도록 했다. 셋째 특별대는 거주지를 떠나 다른지역에서 노무에 종사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며, "농촌에서 가급적 소작지 5반 미만 혹은 소작지를 갖지 않는 자" 중에서 선정하도록 되었다. 즉 근로보국특별대는 관알선 나아가 징용으로 동원될 수 있도록 준비되는 조직이었다. 따라서 특별대원은 함부로 향촌을 떠나서는 안되고, 특별대원 중에 동원계획에 따라 외지로 떠난 인원은 바로 보충되도록 하여, 특별대는 별도로 관리되고 있었다. 넷째 근로보국특별대는 몇 개의 정동리부락연맹 근로보국대에서 선발된 대원으로, 부·읍·면 단위로 조직되며, 특별대장은 부읍면연맹근로보국대장이었다.

전라북도는 근로보국대를 강화하고 특별대를 조직, 관리하면서 특별대원 중에서 관알선 등의 수요에 대비하고 있었다. 경상남도 역시 1941년 8월 근로보국대를 조직하고, 이와 별도로 특별보국대를 두고 도내 중요사업의 노무수급에 조달하고 있었다.⁹⁶⁾ 경상남도는 부락연맹마다 명부를 갖추고 상급기관의 알선 수요에 대응하고 있었음을 이미 지적했다. 경남도 전북과 마찬가지로 근로보국대와 특별대로써 관알선을 준비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⁹⁶⁾ 경상남도 사회과, 〈勞務美談〉(《조선노무》, 1942. 2), 95쪽.

1943년 들어 과달카날전투와 솔로몬군도의 패전으로 수세에 몰린 일제는 '결전단계'의 군수 생산확충의 급속한 증강을 위해 10월 〈생산증강노무대책강화요강〉을 발표했다. 여기서 ① 공장·사업장의 손쉬운 작업은 주로 근로보국대의 노무로 충족하고, ② 동원인원은 1년간, 국내 전체 호수의 2할을목표로 할 것 등이 지시되었다. 근로보국대는 그 동원규모과 기간에서 이전보다 한층 확대되었다. 또 같은 해 11월 위의 〈생산증강노무대책강화요강〉에 대응하여 〈국민근로협력령〉을 전면적으로 발동하기 위해〈국민근로협력령실시요강〉이 제정·공포되었다.97)

'요강'에 따르면, 도지사는 부유·군수에게 부·읍·면마다 국민총력부읍 면ㆍ정동리부락연맹, 국민총력 각종연맹, 청소년단체, 부인단체, 동업자조합 기타 조직에서 협력령에 따라 협력할 수 있는 인원을 조사하여 파악한 인 원을 총독에게 보고하도록 되었다. 또 도지사는 부유·군수를 거쳐 보국대 의 협력을 받으려는 사업주의 신청서와 도내 수급상황 등을 총독에게 보고 하여 허락을 받게 되었다. 협력령에 의해 조직되는 보국대는 1941년과 달리 국민총력부읍면연맹·정동리부락연맹 이외 협력가능인원이 조사되었던 다 른 단체에도 설치할 수 있게 되었다. 보국대의 조직을 전면적으로 활용하려 는 일제는 1943년 말 그 조직기반과 동원인원ㆍ기간을 대폭 확대시켰다. 또 한 이전에 대장과 부대장만 완장을 찼던 것과 달리. 대워들은 국민근로보국 대표를 교부받고 출동시는 완장 등을 차도록 하여. 대원들에게 소속감과 긴 장감을 갖게 하였다. 임무도 국가적 봉사, 공공적 봉사작업이라고 하지 않 고, "군수산업, 생산력확충계획 및 동 부대산업·운수통신업·토목건축업· 농림수산업"이라고 하여, 노무동원계획의 대상이 되었던 모든 부문을 명확 하게 제시하였다. 당시 급박한 정세 아래 증산의 절박함을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근로보국대를 통한 노동력 동원체제가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1944 년 6월 각 부락연맹에 勤勞動員會가 설치되어 부락연맹이사장과 애국반장이 해당 구역내 군과 면의 징용사무를 지원하는 방침이 채택되었다. 정부락연맹

^{97) 〈}노무관계법령통첩〉(《조선노무》 3-6, 1943. 12), 55~59쪽.

에 설치된 근로위원회는 정부락연맹이사장이 회장을 맡고, 애국반장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6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하였다. 근로사상보급과 근로동원에대해 부윤과 읍면장에 협력하는 기구였다. 위원들은 부·읍·면에서 전달된 정용기피자와 이탈자의 명단에 따라 이들을 색출하거나 기피자가 소속된 애국반과 부락연맹의 연대책임으로 다른 대체 인력을 정용시키는 역할을 맡고 있었다. 이러한 가혹한 연대책임으로 기피자의 '자수'를 끌어냈다.%)

이상에서 보았듯이 1941년 이후 근로보국대가 단계별로 전면적으로 편성동원되었고, 보국대원의 일부가 전북과 같이 특별대를 통해 관알선 등에 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징용령〉이 조선에서는 1944년 8월부터 실시되었던 것이다. 또 1945년 3월에는 이제까지 노동동원과 관련된 법령을 〈국민근로동원령〉으로 통합하여 노동통제를 군대식으로 바꾸었다.

다. 동원의 규모

1939~1945년까지 전시체제기 조선인의 노무동원의 규모는 일제의 패망 직후 자료 파기 등으로 현재 정확한 인원을 알 수 없다. 〈표 7〉에서 조선총독부와 각 도의 권력기관에 강제적으로 동원한 인원을 보면, 1945년 '도내동원'을 빼고, 480만 1,753명이다. 1944년부터 근로보국대의 전면적인 동원을 계획했던 만큼 1945년 8월까지 '도내 동원' 인원은 적어도 1944년의 50% 정도는 될 것으로 보아 약 120만 명으로 간주할 수 있다.

또 일본으로 강제동원된 인원은 〈표 8〉과 같이 자료마다 차이가 크다. 우선 1944~1945년에 일본으로 정용된 인원은 각각 20만 1,189명, 9,786명이다. 99) 이 정용자료와 일관성을 기하기 위해, 〈표 8〉의 통계자료 ⑤에 따라일본으로 강제 동원된 인원을 1945년 3월 현재 72만 4,727명으로 간주한다. 1944년 28만 6,472명, 1945년 1만 622명에는 정용 인원이 포함되었다고 본다. 왜냐면 앞에서 지적했듯이 정용이 실시되면서 노무동원방식으로 정용을 선호하던 경향을 감안하면, 1944~1945년에 일본으로 동원된 인원수(⑤)에는 정

⁹⁸⁾ 김영희, 앞의 책, 231~232쪽.

⁹⁹⁾ 大藏省 管理局,《日本人の海外活動に關する歷史的調査》, 69쪽. 1945년의 징용 자수는 의문스러운 점이 있다.

110 I. 전시체제와 민족말살정책

용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표 7〉 조선내 강제동원 노동자수

	관 알 선	도내동원	징 용	합 계
1939	45,289명	113,096		158,385
1940	61,527	170,644		232,171
1941	46,887	313,731		360,618
1942	49,039	333,976	90	383,105
1943	58,924	685,733	648	745,305
1944	76.617	2,454,724	19,655	2,550,996
1944	76,617	(886,612)	(153,850)	(2,704,846)
1945	44,263	_	23,286	67,549
1343	44,203		(106,295)	(90,835)
합계	392 546	4,071,904	43,679	4,498,129
19 /II	382,546	4,071,904	(303,624)	(4,801,753)

^{*} 大藏省管理局、《日本人の海外活動に關する歷史的調査》、68~69・71~72쪽.

〈표 8〉 일본으로 동원된 노무자에 관한 통계자료

자료 연도	1939	1940	1941	1942	1943	1944	1945.3	계
①제86회 〈제국의	53,120	59,398	67.098	119,851	128,350	228,320	_	_
회설명자료〉	00,120	00,000	01,000	110,001	120,000	220,020		
②후생국노동국통	38,700	54,944	E2 402	112,007	199 997	280,304	6,000	667,684
계	30,700	34,944	33,492	112,007	144,431	200,304	0,000	007,004
③《고등외사월보》		01 110	196,009	949 E91	200 GE 4			
제51호(1944)	_	01,119	126,092	248,321	300,654	_	_	_
④《조선경제통계요	38,800	54.954	E2 0E2	119 990	149,730	270.747	220 000	1,128,392
람》	30,000	34,934	33,932	112,320	149,750	319,141	349,009	1,120,392
⑤《日本人の海外活								
動に關する歷史	E2 120	E0 200	C7 000	110.701	199 900	906 479	10.000	704707
的調査》(대장성	53,120	59,398	67,098	119,721	128,296	286,472	10,622	724,727
관리국)								

^{*}조동걸,〈일제말기의 전시수탈〉,《천관우선생환력기념한국사학논총》(정음문화사, 1985;《한국민족주의의 발전과 독립운동사연구》, 지식산업사, 1993), 144쪽.

비고 : 도내동원의 1944년에 두 가지 수치가 있는데, 88만 6,612명은 전체 인원의 일 부 수치로 보임, 징용의 ()는 현용징용.

1944년 현재 조선내 동원인원 480만 명, 일본쪽 72만 5,000명, 군요원 14만 5,000명을100) 합치면, 약 567만 명이다. 여기에 1945년 조선의 '도내동원'의 잠정 숫치 120만 명을 더하면 약 687만 명이다. 위의 일본측 자료에서 기초해보면, 1939~1945년 동안 조선과 일본 등지에 동원된 조선인 노무동원은 약 687만 명이다. 여기에는 징병·군위안부·여자근로정신대·학도근로대 등은 제외되었다. 이 중에서 조선내의 규모는 1945년 '도내동원'의 잠정 숫치를 포함하여 약 600만 명이다.101) 그리고 일본으로 강제동원된 규모는 대장성관리국의 자료에 의하면, 군요원수 6만 9,997명과 ⑤의 72만 4,727 명을 합하여 79만 4,724명 약 80만 명이다. 또 '징용과 알선을 포함한' 일본 후생성자료에 의한 《조선경제통계요람》에 따르면, 1945년 3월까지 112만 8,032명과 군요원수 6만 9,997명을 더하여 119만 8,029명 약 120만 명이다. 즉 일본으로 동원된 규모는 관변자료에 의해서 적어도 80만에서 120만 명인데, 실제는 이보다많을 것이며 대체로 150만 명에 접근해 있다.102)

1944년 당시 남자 인구 1,263만 4,865명 중 15~49세의 남자의 비중은 43.5%이므로 약 549만 6,166명이었다. 103) 조선과 일본 등지로 동원된 약 687만 명은 중복해서 동원된 사람과 일부의 여성을 포함하면서, 농촌인구를 중심으로 전국의 청장년 남자를 대상으로 동원된 인원수이다. 또 이 시기 경북지방의 피정용자의 연령구성을 보면, 16~40세가 전체 93.5%로, 104) 기간적

¹⁰⁰⁾ 大藏省 管理局,《日本人の海外活動に關する歷史的調査》, 71쪽. 조선 3만 3,891 명, 일본 6만 9,997, 만주 등지 4만 306명.

¹⁰¹⁾ 박경식은 1945년 도내동원수를 빼고, 1939~1945년까지 조선내 강제동원된 노동자수를 480만 명으로 보고 있다(박경식, 《일본제국주의의 조선지배》, 청아출판사, 1986, 360쪽).

강성은 역시 480만 명으로 보고 있다(康成銀,〈戰時下日本帝國主義の朝鮮農村 勞動力收奪政策〉,《역사평론》355, 1979, 26쪽).

¹⁰²⁾ 조선내외 강제동원수에 대한 연구자간의 차이는 김민영, 《일제의 조선인 노동력 수탈 연구》(한울아카데미, 1995), 77~78쪽. 일본으로 강제동원 인원과 관련하여 박경식 150만 명, 강성은 152만 명, 조선인강제연행진상조사단 150만 명(《조선인강제연행강제노동기록》, 일본현대사출판회, 1974)이라고 보고되어 있다.

¹⁰³⁾ 이만열·김영희, 〈1930·1940년대 조선 여성의 존재 양태〉(《국사관논총》 89, 2000), 286·289쪽.

¹⁰⁴⁾ 海野福壽、〈朝鮮の勞務動員〉(《近代日本と植民地》 5, 岩波書店, 1993), 125零.

청장년 남자들이 동원의 대상이었음을 알 수 있다.

(3) 농촌노동력의 동원 실태

가. 이농 배경과 현상

조선인 노동력의 동원은 도시·농촌을 막론하고 이루어졌으나, 일제는 '농촌의 확실한 부담에 의한 동원'을 표방하여,105) 농촌 노동력이 주된 동원의 대상이었다. 1938년 현재, 1정보 미만의 농가는 181만 5,000호로 전체 농가 286만 9,000호의 63%를, 5반 미만은 110만 2,000호로 전체 38%를 각각 차지하고 있었다. 소작농은 151만 1,000호(전체 농가의 53%)인데, 이 중에서 1정보 미만은 104만 3,000호로 69%, 5반보 미만은 65만 3,000호로 43%를 차지하고 있었다.106)

소작농들은 자가경영 경작지의 수입만으로 살 수 없어,107) 농번기에도 임금수입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다. 즉 농번기에 일일노동자・雇只로 자기 노동력을 부유한 농가에 제공하고 그 수입으로 생계를 보조하고 있었다. 이런 농가는 항상 자기 농사의 적기를 놓치기 때문에 식민지권력이 볼때 경영의 영세성과 함께 작황부진으로 농산물 증대정책을 제약하는 존재였다.108) 또 영세농과 농업노동자는 전시체제 아래 생산조건의 악화로 종래 넓은 경작지를 가졌던 농가가 경영규모를 줄일 때, 임노동 수입이 감소하여 더욱 생존이 위태로운 처지였다. 따라서 이들은 스스로 다른 생활조건과 일자리를 찾아 또는 정책적으로 공광업 부문의 노동자로 농촌을 떠나게 되었다.

앞에서 살펴본 1940년 노무자원조사의 결과, 농촌 과잉인구 102만 호는 1정보 미만의 영세농과 소작농을 중심으로 파악된 것이다. 그 중에서도 5 반 미만의 영세농, 경작지가 없는 농업노동자는 공출의 우선 대상이었다.

¹⁰⁵⁾ 近藤釖一 편、《太平洋戰下の朝鮮》 5, 180 等.

¹⁰⁶⁾ 조선총독부 농림국.《朝鮮農地關係彙報》1(1939), 90~91쪽.

¹⁰⁷⁾ 소작농 중에는 생활곤란으로 임노동에 종사하는 경우는 1930년 현재 37%를 차지했다(조선총독부 농림국,《朝鮮ニ於ケル小作ニ關スル參考事項摘要》, 1934, 70쪽).

¹⁰⁸⁾ 岩田龍雄、〈農業勞働力に關する若干の考察〉(《조선노무》4-2, 1944. 3), 30쪽.

이 점은 "농촌에서 가급적 소작지 5반 미만 혹은 소작지를 갖지 않는 자"라는 자격조건을 명시하고 선발했던 전북의 근로보국특별대에서 알 수 있다. 또 중일전쟁 이전 평남 용강군 城峴里에는 머슴 21명이 있었는데 1942년 경 모두 광공업지대로 나가고, 남부지방의 유민 3명이 머슴으로 들어왔다고 한다.109)

다음은 식량 공출 등이 원인이 되어 농촌을 떠난 실태를 조사한 것이다. 〈표 9-1〉은 광주지방법원 검사정이 법부국장, 고등법원검사정, 대구복심법원검사장에게,〈표 9-2〉는 해주지방법원검사정이 고등법원검사장에게, 각각 관내 식량대책에 따른 이농 실태를 보고한 것이다. 110) 이농자의 1호당 면적은 전남은 약 1반보, 황해도는 9.8반보였다. 전남은 이농자의 경지규모가 극히적어 농업노동자에 가까운 극빈농이었다. 황해도는 전남보다 경영조건이 나아 1호당 0.98정보였고, 자작지를 1.2정보 보유한 계층도 있지만, 0.4반을 소유한 농업노동자에 가까운 사람들이 있었다. 이러한 이농 계층이 노무동원계획에 따른 통제의 대상이었다.

〈표 9-1〉 전라남도의 이농상황 (1942년 7월 중)

인원 등	호수	カネム	이농자의 경지 면적		
전출지	오 ㅜ	가 족 수	자 작	소 작	계(1호당)
공장 방면	12호	31명		3반	3반(0.25반)
광산 방면	8	32		27	27(3.40)
기타 노동	79	318		57	57(0.72)
도내 다른 지역	43	130		21	21(0.49)
도 외	19	39		46	46(2.40)
만주 등지	2	13		8	8(4.00)
일 본					
계	163	603		162	162(0.99)

¹¹⁰⁾ 法務局 刑事課、《現下食糧事情ヲ繞ル治安對策》、241・433쪽、

〈丑 9-2〉

황해도의 이농상황

(1942년 9월 1일~중순)

인원 등	호수	가 족 수	이농자의 경지 면적			
전출지	시		자 작	소 작	계(1호당)	
공장 방면						
광산 방면	10	39		116반	116(11.6반)	
기타 노동	5	14	2반	25	27(5.4)	
도내 다른 지역	1	4	12		12(12.0)	
도 외	4	14		16	16(4.0)	
만주 등지						
일 본						
기 타	1	2		15	15(15.0)	
계	19	603	14	172	186(9.8)	

나. 농촌노동력의 조직화와 수탈

전시체제 아래 조선 농촌은 "공업을 위한 노동력공급의 지반"이었다. 농업인구는 1930년과 1940년 사이에 1,585만 3,000명→1,672만 4,000명으로 약5% 증가한데 비해, 농업노동력은 766만 5,000명→668만 5,000명으로 약8.7%가 감소하고 있었다.¹¹¹⁾ 농촌에서 대량의 노동력이 유출되자, 일제는기존 노동력을 재편한 공동노동의 활용, 신규노동력 특히 여성노동력의 동원 등으로 대체하고자 했다. 종래 農社・農廳・農契 등의 명칭을 가진 두레와 같은 공동노동은 일제하 농촌의 사회분화, 비농업자와 겸업자의 증가, 노동교환의 기회 증대, 농업기술의 변화 등으로 줄어들고 있었다. 그러나1930년대 초 농촌진흥운동을 전후하여 공동노동이 정책적으로 실시되었다.일제는 재배방법 습득 등의 농사개량, 노동력의 효과적 이용뿐만 아니라 농민들에 대한 집단규율과 통제성을 확보하기 위한 훈련으로 공동노동・공동작업을 실시해왔다.

¹¹¹⁾ 印貞植、《朝鮮農村再編成の研究》(9) 문사, 1943), 158쪽,

小林英夫、《大東亞共榮圈の形成と崩壞》(御茶の水書房、1975)、490쪽.

반면에 노동자수(5인 이상 공장)는 1936년 18만 8,250명에서 1940년 29만 4,971명, 1943년 36만 2,953명으로 각각 56%, 92% 증가하고 있었다(《조선경제통계요람》, 70쪽).

공동노동은 전시체제 아래 노동력 대책으로 본격적으로 확대·강화되었다. 전통적인 공동노동은 과잉인구를 전제로 개별노동의 훈련과 촌락 단위 공동 적 연대성의 배양 차원에서 진행되었다면, 이제는 노동력 부족에 대처하는 수단으로 전면적으로 대두되었다.^[112]

1941년 4월 1일부터 전국 촌락에서 일제히 실시된 부락생산확충계획과 때를 같이 하여 총독부는 4월 2일〈농촌노동력조정요강〉을 발표하였다.¹¹³⁾ 그 내용은 첫째, 근로보국정신을 앙양 강화하는 것이다. 개인적인 수입증대와 노동 이해를 배격하고, 근로를 통한 '報國', 즉 노동의 국가성을 강조하였다. 일제는 이런 보국정신에 따라 노동시간의 연장, 노동능률의 향상, 무위도식자의 배제를 이끌어 내어, 노동강화 즉 노동력을 수탈하려고 했다.

둘째, 전 가족의 철저한 근로를 강조했다. 노동능력을 가진 모든 가족의 노동 참여로 年雇・季節雇를 가급적 배제시키도록 했다. 즉 연고・계절고와 같은 농업노동자를 농촌에서 배출시켜 공광업노동자로 흡수하려는 의도였다. 이들이 차지했던 작업량은 자가노동력의 강화와 다음의 공동작업반의 편성 으로 대체하려고 했다.

셋째, 공동작업의 확충이다. 촌락 안의 노동력을 공동작업반으로 편성하여 작업을 하면, 이전과 같이 일시에 노동력을 확보하려는 경쟁을 없애며 적기 작업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임노동자의 배제와 가족노동의 완전 소화, 공동작업반의 이용으로 증산을 달성하기 위해서 경지와 경작권의 재분배도 강조되었다.

넷째, 농촌노동력의 감소에 대처하기 위해, 여성노동력의 동원과 강화를 강조하였다. 농촌여성의 노동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동원의 장해요소를 해결하는 몇 가지 방안이 제시되었다. 가사공동시설로 농번기 탁아소의 운영, 농번기 공동취사 혹은 도시락 지참 그리고 여성의 노동력을 절감하기 위한 색의장려 등이 장려되었다. 공동작업반이 단순히 노동력의 활용만 아니라 계획성과 규율훈련을 목적으로 한만큼, 부인작업반도 이런 의도가 있었다. 또 부

¹¹²⁾ 姜鋋澤, 〈朝鮮に於ける共同勞働の組織とその史的變遷〉(《農業經濟研究》17-4, 1941), 43・45・48等.

^{113) 〈}農村勞動力調整要綱成る〉(《조선》, 1941. 4), 109~110쪽.

락연맹부인부 단위로 부인공동작포를 두어 농사기술의 습득과 본격적인 공 동작업의 예비적 훈련을 도모했다.

다섯째, 이 요강에 기초하여 농촌노동력조정에 관한 조사와 계획은 필요한 촌락을 지정하여 2월과 8월 실시하도록 했다. 이 조사와 계획에 따라 봄·가을 농번기 공동작업반이 결성되었던 것이다.

〈농촌노동력조정요강〉에 따라 공동작업반이 1941년 봄 농번기부터 결성되 었다. 개인적인 노동력 이동은 통제되고, 편성된 공동작업반에 따르도록 되 어114) 공동작업반에 참여하지 않으면 농작업의 적기를 놓칠 우려가 있었다. 공동작업반이 촌락내 농작업을 통제하게 되자. 개별 농가는 이에 참여하지 않을 수 없는 사정도 있었을 것이다. 일제는 1941년 4월 말까지 전 농촌의 부락연맹 아래 애국반을 단위로 40만 개의 공동작업반을 구성하여 약 400만 명을 동원하도록 지시하였다.115) 실제 공동작업반이 편성된 상황을 〈표 10〉 에서 보면, 남자작업반이 편성된 촌락 3만 5.164개를 비롯하여, 여자작업반은 2만 9.867개 촌락, 남녀작업반은 1만 1.304개 촌락, 학생·아동작업반은 4.077 개 촌락으로, 총 8만 412개 촌락에 여러 종류의 공동작업반이 조직되었다. 촌락당 작업반 수는 3개이므로 전국적으로 24만 1.000개의 공동작업반이 결 성되고, 1개 반 작업인원이 21명이므로 506만 명이 동원된 셈이다. 학생ㆍ아 동작업반을 제외하면, 남자는 10만 5.492개 반·221만 명, 여자는 8만 9.601개 반·161만 명. 남녀공동반의 남녀 인원은 3만 3.912개 반·78만 명이었다. 따 라서 남자반ㆍ여자반ㆍ남녀반에 각각 참여한 인원을 합하면 약 460만 명이다. 남녀반이 남자반과 여자반이 작업한 뒤, 이후 다시 부분적으로 편성되어 중복 될 가능성을 제외해도 약 382만 명으로 거의 400만 명의 동원계획을 달성했 다고 본다.116)

^{115) 《}매일신보》, 1941년 4월 16일.

¹¹⁶⁾ 당시 신문자료에는 8만 412개 반, 160만 8,240명이 동원되었다(《매일신보》, 1942년 4월 7일, 〈농번기의 노무조사〉)고 하는데, 이는 작업반이 편성된 촌락수 8만 412개를 작업반 수로 보고, 1개 반 20명을 기준으로 계산된 것이다. 뒤에 백록부락의 경우에서 보듯이 공동작업반이 결성된 촌락과 공동작업반의 숫자는 다르다.

〈丑 10〉

1941년 봄 농촌노무조정 상황

구 분	작업반편성	촌락(학교)	1개 반	평균	총면적에 대한
	촌락(학교)수	당 작업반수	작업인원수	작업기간	작업비율
남자작업반	35,164개	3개	21명	11일	30%
여자작업반	29,867	3	18	10	15
남녀작업반	11,304	3	23	10	13
학생 • 아동작업반	4,077	5	49	5	3
계	80,412	3	21	10	61

^{*}石井辰美、〈昭和十七年春期農繁期勞務調整に關して〉、43\.

1941년 봄, 공동작업반으로 전국 논의 61% 모내기를 마쳤으며, 1943년도 계획에서는 80%를 예정하였다.117) 강원도의 경우 1940년 봄 4만 9,835명을 동원하여 전체 면적 8만 6,000정보 중 1만 272정보의 모내기를 했는데, 1941년에는 여성노동력으로 거의 전체 면적의 모내기를 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도내 여성인구 60만 명 중 30만 명으로 추정되는 작업 가능자를 동원하여, 1인당 1일 0.4반씩 모내기를 하도록 하여 1일 1만 2,000정보를 연 7일간노동시켜 8만 4,000정보의 작업을 마칠 수 있다는 것이다.118) 강원도는 여성노동력을 부락생산확충의 최대 추진력으로 활용하고자 했는데, 이는 다른 도에서도 거의 비슷한 양상이었다.

공동경작반의 작업과정을 보면, 경기도에서는 각 부락연맹의 이사장과 기타 간부들이 공동작업계획에 따라 작업의 분담과 그 실행방법, 축우의 공동사역법 등을 협의하였다. 또 퇴비장 개조는 공동경작을 훈련하는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부락연맹 내 작업반은 아침 종소리를 신호로 일정한 장소에 집합하여 부락연맹이사장의 통제 아래 '국민의례'를 한 뒤, 각 반장이 班旗를 앞세우고 작업장으로 출동하였다. 반장은 작업이 종료하면 작업상황을 평가하고, 반원의 출근, 작업상황을 장부에 기재해 두었다가 임금 청산에 이용하였다. 또 노동력이 남는 촌락은 이동반을 편성하여 노동력이 부족한 촌락으

¹¹⁷⁾ 康成銀, 앞의 글, 29쪽.

^{118) 《}매일신보》, 1941년 6월 27일,〈生擴엔 全家근로〉·7월 20일,〈부녀자 30만 명, 적기이앙에 출동〉.

로 출동시켰다.119)

경기도 이천군 고백리 백록부락연맹은 1941년 6월 5일 "농번기의 적기 작 업을 철저히 하여. 증수의 실적을 올려. 부락생산확충계획이 유종의 미를 거 두도록 우리 농림민의 직역봉공의 정성을 다할 것"을 목적으로, 〈부락연맹공 동작업반규약〉아래 공동작업반을 편성하였다. 작업반은 작업능력을 가진 남 녀 전부로 조직하되. 반으로 나누어 남자반(1반) · 여자반(2반)이 구성되었다. 작업반은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耕牛의 공동사역, 농번기 공동작업, 탁 아소 개설을 실시하도록 되었다. 또한 부락연맹이사장은 1·2반 모두를 지휘 통제하고, 각 작업반장은 자기 반을 지휘ㆍ규율하면서 작업과 그 관련 사무 를 통제·지도하도록 되었다. 부락연맹이사장은 필요에 따라 각 반장을 소집 하여 작업에 관한 제반사항을 타합할 수 있었다. 그리고 작업반규약을 위반 할 때는 '반에서 제명'한다고 규정하였다. 즉 농번기 모든 사람이 참여하는 작업반에서 제명되면, 작업 시기를 놓치거나 작업이 원활하지 못하여 작황부 진을 초래할 수 있었다. 따라서 작업반은 백록부락연맹에서 보듯이 이사장의 책임 아래 농민과 작업을 통제하는 강력한 수단이었다. 백록부락연맹은 반원 이 서명ㆍ날인한 공동작업반원 명부를 작성하였는데, 제1반 남자반은 15명 (10대 1명, 20대 5명, 30대 3명, 40대 3명, 50대 2명, 불명 1명)으로 10대에서 50대 까지 동원되고 있었다. 제2반인 여자반은 14명이었다.120)

한편 편성규모와 동원인원의 수치상의 성과와 달리, 공동작업반은 노동의자유성·개별성을 상당히 제약하고 있어, 실제 작업과정에서 문제가 들어났다. 공동노동·공동작업의 대상은 모내기·김매기·보리베기 등 주요 작업만이 아니라 병충해 제거·묘판 설치 및 부업 등으로 확대되었다. 상품화폐경제가 심화되는 가운데, 촌락내 공동적 결합은 약화되고 복잡한 이해관계로대립·불일치가 발생하고 있었다. 이 때 편성된 공동작업반에는 유력자의 불참과 비협조, 공동작업반의 참여로 오히려 책임감이 저하되는 현상도 나타나기도 했다. 종래는 공동노동·공동식사·농악이 삼위일체가 되어 노동이 유희화되었던 데 반해, 농악기는 공출 등으로 없어지고 노동력의 절감 등을 이

¹¹⁹⁾ 石井辰美、〈昭和十七年春期農繁期勞務調整に關して〉、57等、

^{120) 《}夫鉢邑 高白里 尹氏家 소장 근대문서》, no. 31.

유로 도시락을 지참하여 공동취사·공동식사를 통해 형성되던 공동체적 연대감이 크게 상실되고 있었다.[21] 이렇게 전시체제 아래 정책적으로 실시되던 공동작업에 많은 문제점이 있었으나, 때로는 '20명 내외'로 편성한 공동작업의 능률성에, 합리성과 효율성을 앞세운 정책에 농민들은 그 '과학적 착취'에 혀를 내두르고, "경제적인데 안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라는 반응을 보이면서 식민지체제에 편입되는 양상도 보이고 있었다. 또 여성노동력의 강화로때로는 한 달 반 걸리던 작업이 20일만에 끝낼 수 있어, "부인노동력이 나와서 농촌수확량이 불어났다"고 평가할 정도였다.[22]

한편 농촌노동력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940년에 668만 5,000여 명에서 1944년에는 436만 4,000여 명으로 4년간 약 35%나 줄었고,123) 1941년 미곡 경작면적 164만 5,000정보, 생산량 2,488만 5,000석을 경계로 1942~1944년 계속 작황부진과 경지면적이 감소하였다. 이에 일제는 1943년 2월 농촌노동력의 확보 방안으로 '농업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농가소재 노동력, 농업소요 노동력, 가사소요노동량, 노동력의 과부족, 과부족인원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다.124) 이 조사는 노동력의 동원 가능성을 철저하게 파악하여 공동작업 등의 비중을 확대시키는데 사용될 가능성이 컸다. 그리고 농업실천원과 농업요원을 배치하여 부족한 노동력과 침체된 농업 분위기를 만회하려고 했다.

1943년 6월 설치된 농업증산실천원은 농민도장 및 농업보습학교를 수료한 자, 육군병 특별지원자훈련소의 훈련을 마친 자 등 일제의 정책에 순응할 수 있는 30세 미만 청장년을 촌락 당 1명씩 총 7만 명을 지정하였다. 이들의 임무는 "황국농민도를 실천하고, 농업증산의 안내인이 되어 자가 경영의 개선에 노력하고, 솔선수범하여 증산에 헌신"하는 것이다.125) 실천원은 농업증산

¹²¹⁾ 위의 부발면에서는 1938년 5월 현재 '품앗이' 등의 공동노동에 전부 도시락을 지참하도록 하고, 위약자는 위약금까지 정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夫鉢邑高白里 尹氏家 소장 근대문서》no. 36,〈晝食溫飯廢止의 件〉).

¹²²⁾ 김영희, 〈일제말기 향촌 儒生의 '日記'에 반영된 현실인식과 사회상〉(《한국근 현대사연구》14, 2000), 115쪽.

¹²³⁾ 小林英夫, 앞의 책, 490쪽.

¹²⁴⁾ 국사편찬위원회, 《日帝侵略下韓國三十六年史》13, 585쪽.

^{125) 《}매일신보》, 1943년 6월 17일, 〈7만 명의 실천원, 전선 농촌에 배치〉.

과 공출, 농가의 지도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도록 되어, 1944년에는 7만 5,000 명으로 증가하였다. 126) 이와는 별도로 황해도는 '행정의 말단'으로서 촌락의 조직을 강화하여 증산에 동원하고자 촌락내 17~30세 청장년으로, 부락연맹을 중심으로 농업추진대를 결성하였다. 부락연맹에 소대를 두며 각 애국반에는 분대, 읍면에 중대, 군에 대대, 도에 본부를 두게 되었다. 127) 통제력이 부족한 농민을 군대적 조직으로 훈련하여 '상사의 명령지시'를 준수하도록 하여 농업증산을 달성하려는 것이다. 128) 황해도의 농업추진대가 일정하게 성과를 거두자, 총독부는 이런 조직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자 연구하였는데, 129)이는 1944년 4월 농업생산책임제 아래 농업증산대의 실시로 나타났다.

1944년 8월 정용제가 실시되면서 농촌 노동력의 부족은 더욱 심화되었다. 이에 일제는 최소 한도의 농업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농업요원제도를 실시하였다. 130) 9월에 발표된〈농업요원설치요강〉을 보면, 요원 지정의 범위는 순농가의 농업경영자, 평균 수확보다 3할 이상을 증수한 농가와 그 가족, 농업증산실천원, 행정기관과 농장 등의 기술지도원이었다. 농업요원은 부윤·군수의 신청에 따라 도지사가 총독부와 협의하여 인원을 정하여 지정하며, 요원대장을 마련하고 이들을 관리하도록 되었다. 전국에 설치된 농업요원은 약 165만 명 정도인 것으로 보인다. 일제는 농촌의 핵심인력인 농업요원과함께 농업실천원을 기본적으로 징용에서 제외시키면서 131) 전시농업정책을 부지하려고 했다. 1944년 7월 농업생산책임제가 실시되면서, 촌락 혹은 애국반을 단위로 종래의 공동작업반과 달리 군대조직으로 농업증산대가 결성되었다.

총독부는 미곡과 맥류 등과 같은 농산물의 감소가 계속되자, 중요 농산물의 급속한 증산을 확보하기 위해, 1945년 2월 증산에 관한 심의수립기관인

¹²⁶⁾ 大藏省 管理局、《日本人の海外活動に關する歷史的調査》、65쪽.

¹⁹⁴⁴년에는 이들 실천원 7만 8,000여 명을 추가배치하기로 결정하여 총14만 8,000여 명으로 1촌락에 2명씩을 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매일신보》, 1944년 7월 10일, 〈농업증산실천에, 신예 7만 동원〉).

^{127) 《}매일신보》, 1944년 1월 22일, 〈도군읍면부락단위로, 농업추진대를 결성〉,

¹²⁸⁾ 西山芳一、〈本道の農業推進隊に就て〉(《圣선행정》23-11, 1944, 11), 24~36쪽,

^{129) 《}매일신보》, 1944년 4월 27일, 〈농민들 전가족이, 증산추진대로 진군〉.

¹³⁰⁾ 大蔵省 管理局、《日本人の海外活動に關する歷史的調査》、64~65等、

^{131) 《}每日新報》, 1944년 7월 6일, 〈증산전의 농업요원, 징용서 제외를 결정〉.

전시농업증산본부를 총독부와 각 도에 설치하기로 하였다. 이어 전시비상조치로서 〈농촌근로동원대책요강〉을 결정하여, 공동작업반과 농촌여성의 작업을 강화하고, 농기구 등의 공동이용과 노동력·축력의 집단이동, 군대식 농업생산조직인 농업증산대의 출동을 강조했다. 주목할 점은 광공업 부분 노동자의 동원, 도시인의 동원 등으로 광공업 부분의 노동력을 농산물 증산에 투입하려고 한 점이다.[32] 1944년 약 192만 명의 근로보국대가 농업생산부문보다 '급속한 증강'이 요청되는 군수 생산력확충에 동원되어, 농업과 군수방면사이에 노동력의 '조절을 고려할 겨를'이 없었던 것과 대조되었다.[33] 이런사실들은 식량을 비롯한 농산물의 확보가 절박한 상황이었다는 점과, 그만큼 농촌과 도시의 인구 전체가 전시체제 아래 생산력확충을 위해 혹사당하고 있음을 반증한다. 1944년 초 남부지방 촌락조사에 따르면 남성 생산연령층 (16~45세)은 전체 남성 인구의 31.4%, 여성 생산연령층은 35.7%를 보여 남성노동력이 크게 감소하고 있었다.[34] 농촌 노동력의 악화와 연동되어 경작면적과 생산력은 계속 줄고 있었으나, 그나마 생산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농촌에 남아 있던 남성의 부담 강화. 연소자와 여성의 노동강화의 결과였다.

〈金英喜〉

¹³²⁾ 국사편찬위원회, 《日帝侵略下韓國三十六年史》13, 812쪽.

¹³³⁾ 大藏省 管理局,《日本人の海外活動に關する歷史的調査》, 72쪽.

¹³⁴⁾ 康成銀, 앞의 글, 37~44쪽.